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조사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홍병진·박수진·서동연

2023. 1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연구진

연구책임자

홍 병 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수 진 공인회계사

서 동 연 공인회계사

목 차

I. 서론	9
1. 연구배경	9
2. 연구방법	11
II. 우리나라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13
1. 부가가치세	13
가. 개요	13
나. 금융·보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14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51
라. 연결부가가치세	53
2. 기타 간접세(교육세)	53
가. 납세의무자	54
나. 과세표준 및 세율	55
III. 유럽연합(EU)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58
1. EU 부가가치세 준칙	58
2. 면세 처리의 누적효과 완화 방안	60
가. EU 부가가치세 준칙	60
나. 금융 부문 관련 부가가치세 틀 개정을 위한 시도	62
3. EU 회원국별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현황	65
가. 부가가치세	65
나. 부가가치세 외 간접세	72

IV. 주요국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76
1. 호주	76
가. GST	76
나. 기타 간접세	90
2. 싱가포르	91
가. GST	91
나. 기타 간접세	103
3. 프랑스	104
가. 부가가치세	104
나. 기타 간접세	117
4. 독일	122
가. 부가가치세	122
나. 기타 간접세(보험세)	130
5. 기타	134
가. 뉴질랜드	134
나. 이스라엘	136
다. 남아프리카	137
라. 아르헨티나	138
V. 국제비교 및 결론	139
1. 국제비교	139
가. 부가가치세	139
나. 기타 간접세	152
2. 결론	155
가. 면세 금융·보험 용역	155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157
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162
참고문헌	169

표 목차

〈표 II-1〉 1977. 1. 1. 시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 면세규정	16
〈표 II-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금융·보험 용역의 개정연혁(2013~2023년)	21
〈표 II-3〉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 용역 ...	38
〈표 II-4〉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	44
〈표 III-1〉 주요 은행 부문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2008~2010년)	64
〈표 III-2〉 EU 회원국의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현황	71
〈표 IV-1〉 호주 은행업 관련 GST 면세 금융 용역의 범위	79
〈표 IV-2〉 GST 면세 금융 공급이 아닌 공급	80
〈표 IV-3〉 경감매입세액공제 관련 특정 취득	86
〈표 IV-4〉 싱가포르 GST 면세대상 금융서비스(금융기관)	95
〈표 IV-5〉 보험서비스 관련 싱가포르 GST 규정	97
〈표 IV-6〉 프랑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규정	110
〈표 IV-7〉 독일의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규정	125
〈표 V-1〉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비교	140
〈표 V-2〉 조사국별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143
〈표 V-3〉 조사국별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147
〈표 V-4〉 조사국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처리	150

〈표 V-5〉 조사국별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현황	152
〈표 V-6〉 조사국별 금융·보험 용역 관련 기타간접세	154
〈표 V-7〉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효과	159
〈표 V-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 비교	164

그림 목차

[그림 II-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매입세액공제 특례 53

[그림 V-1] 생산 중간 단계에 은행이 놓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158

I. 서론

1. 연구배경

- 간접세는 사업자가 일단 세금을 납부하고 가격 등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겨줘 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을 사실상 이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조세로 부가가치세가 대표적인 것임

-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에 공통으로 부가가치세 시행의 기술적 어려움을 이유로 금융·보험 영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로 취급함¹⁾
 - 그러나 명시적 수수료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 영역은 대부분 국가에서 과세함
 - 반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1977년 시행부터 금융과 보험 영역을 면세하고 금융시장이 확대함에 따라 그 면세 범위도 확대함

- 생산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금융기관 등이 공급하는 금융과 보험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로 인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금융기관에는 중간 투입물의 소비에 대해 사실상 매입(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데, 금융기관은 관련 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투입물의 내부조달에 대한 유인(self-supply bias)이 발생함²⁾

1)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 구성요소를 각각 가산하여 계산하거나(가산방식) 또는 송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방식(tax credit method)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는 후자의 방식을 채택함

2) 금융기관의 매출(output)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해당 금융기관이 투입물(input)을

- 중간단계의 금융과 보험 용역 이후 그 다음 단계를 정상 과세하는 경우 누적 효과³⁾가 발생하여 실물경제 부문에 영향을 미침
 - 한편 재정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융과 보험 용역의 면세 처리는 환수효과⁴⁾와 누적효과를 초래하므로 정상 과세의 세수 차이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지 않음⁵⁾
-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금융 부문의 면세처리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안이 소개되고, 일부 국가는 조세정책에 반영하는 실제 사례가 등장함
-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은 과세전환제도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통해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의 축소를 도모함
 -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는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의 축소를 위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와 함께 영세율(뉴질랜드), 경감매입세액공제율(호주), 개산매입세액공제율(싱가포르) 등 방안을 도입함
- 한편 보험 용역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에서 금융 용역과 동일하게 처리하지만 일부 국가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유럽연합 회원국은 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하고 공통으로 간접세 형식의 보험세를 운용하여 재정 기여도를 높임

매입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음(Baydur and Yilmaz, 2021, p. 2168); 면세대상 금융·보험 서비스의 공급을 위해 금융기관이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하면서 지불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는데 이를 숨겨진 부가가치세(hidden VAT, embedded VAT) 또는 매입세액 불공제액(우리나라), 'Input taxed(호주)'라고 하며 본문은 혼용하여 사용함

- 3) 누적효과(cascading effect)는 면세 이전의 생산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와 그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면세 단계에서 공제하지 못함에 따라 면세 이후 다음 과세 단계에서 다시 중복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함
- 4) 환수효과(catching-up effect)는 중간 생산 단계에서 면세를 적용하고 그다음 단계에서 정상 과세하는 경우 그 중간 생산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한 면세 효과는 사라지고 국고로 부가가치세가 회수되는 것을 말함
- 5) 면세 금융부문에 대해 정상 과세하는 경우 세수 효과에 대해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이는데 Genser and Winker(1997)는 독일 데이터를 사용하여 정상 과세시 부가가치세수입의 8.3%에 해당하는 세수증가를 추정하고, Huizinga(2002)는 1998년 유럽연합의 총부가가치세수입의 4.7%에 해당하는 세수증가를 보였지만 2007년 유럽연합 데이터를 이용한 Lockwood(2011)의 연구는 유럽연합의 총 부가가치세수입의 0.06%에 해당하는 세손실을 추정함

- 호주나 싱가포르와 같은 국가는 보험 용역을 부가가치세 영역으로 포섭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축소하는 동시에 해당 부문의 재정 기여도를 높임
- 현행 우리나라 제도를 되돌아보고, 국제 사례를 조사하여 금융과 보험 용역 관련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개편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규모가 확대하고⁶⁾ 다양한 형태의 금융기관⁷⁾이 등장함에 따라 과거와 달리 금융과 보험 부문은 상당한 정도의 잠재적인 과세 기반을 형성하고, 동시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누적효과의 영향이 상당할 수 있음
 - 현행 우리나라 제도에서 놓치는 부분을 살펴보고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함

2. 연구방법

- 본 보고서는 문헌조사의 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도와 기타 간접세를 조사함
 - 유럽연합 회원국의 제도는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준칙을 토대로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국내 입법을 마련하는바, 조사국의 제도 소개에 앞서 준칙 규정을 살펴보고 회원국별 상황을 개략적으로 소개함
 - 유럽연합 회원국 중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해 과세전환제도를 채택한 프랑스와 독일과 상대적으로 최근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호주와 싱가포르의 제도를 조사함

6) 1997년 대비 2017년 말 기준으로 명목국내총생산(GDP)이 503.3조에서 1,730.3조로 3.26배 증가하는 동안 금융기관의 총자산 규모는 1,214.9조에서 5,939.2조로 4.9배 성장함. 2018년 말 금융기관의 총자산 중 은행 50.2%, 비은행예금취급기관 12.1%, 보험사 20.2%, 금융투자회사 14.9%, 여신전문금융기관 3.1%의 비중을 보임(강병호·김대식·박경서, 2023, p. 288)

7) 금융투자업과 여신금융업 중심으로 자산운용사(2016년 기준 165개→2023년 9월 기준 468개), 투자자문사(159개→389개), 신기술금융사(31개→110개)가 빠르게 증가함(별첨 4의 <표 1> 참조)

-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해 면세 처리하는 경우 일부 조사국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인건비 또는 이윤에 대해 간접세를 부과하거나 또는 보험 프리미엄에 대해 간접세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제도도 간략하게 살펴봄
 - 지면상 제한으로 금융 부문에 대한 이론적 과세방안에 대한 논의⁸⁾와 금융시장 제반환경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하지 않음
- 본 보고서는 제I장 서론과 제V장 결론을 포함하여 총 다섯 개의 장으로 구성함
- 제II장은 우리나라 금융·보험 관련 간접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제와 교육세제를 개관함
 -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제의 연혁별 개정 및 현행 면세 처리 규정,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규정을 소개함
 - 제III장은 금융과 보험 용역 관련 유럽연합 부가가치세 준칙 규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면세 처리의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유럽연합 내에서의 논의를 소개함
 - 회원국별 금융과 보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과세 현황을 살펴봄
 - 제IV장은 금융과 보험 용역 관련 조사국의 부가가치세제도 및 간접세제도를 조사함
 -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와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매입세액 처리 규정과 기타 간접세를 조사함
 - 조사국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에서 과세전환제도를 채택한 프랑스와 독일, 그리고 최근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한 싱가포르와 호주를 채택함
 - 선행연구에서 유럽연합 부가가치세제와 다른 모델로 소개하는 국가인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이스라엘, 아르헨티나의 제도를 간략하게 조사함
 - 제V장은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제도를 바탕으로 국제비교를 하고 개선방안을 포함한 결론을 내림

8) 이자에 대한 과세방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홍범교 외(2004), 박명호 외(2007), Ernst and Young (1996), PWC(2006), PWC(2011) 등을 참조할 것

II. 우리나라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1. 부가가치세

가. 개요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을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34호로 제정하고 1977년부터 시행한 후, 2013년 전면 개편을 거쳐 현재에 이릅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⁹⁾ 10%의 세율로 부과함¹⁰⁾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원칙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소비세로 단일비례세율임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액 납부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함
 -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별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다단계 거래세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 형태임

9)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조

10)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초기에는 13%의 기본세율과 함께 3%p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88년 세법 개정시 기본세율을 10%로 하향 조정하고 탄력세율제도는 폐지함(김무열·박수진·허윤영, 2020, p. 29)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사회·문화와 관련한 가치 창출, 국민 복리후생 증진 등 공익 및 정책 목적으로 면세 규정을 둠¹¹⁾
- 면세사업 등에 관련한 매입세액(면세사업 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함¹²⁾

나. 금융·보험 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

- 금융·보험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도입부터 현재까지 계속 면세를 적용함¹³⁾
- 이것은 금융과 보험 용역에 대한 대가는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관련 부가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배경이 있음¹⁴⁾
- 법 제정 당시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부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¹⁵⁾
 - 부가가치세 과세가 이자율을 급격히 상승시켜 물가 불안을 가져오고 금융기관의 자체 부담이 증가하여 수익이 크게 악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였음¹⁶⁾
 - 당시 금융기관 대출이 주로 기업에 제공되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통하여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함
 - 금융 용역 과세 일반론에 의한 대출차별 구분과세방식은 당시 부가가치세 도입 목적이었던 세제 및 세정의 간소화에 역행함

1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1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1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14) 금융과 보험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는 대부분 사업자이지만 세금계산서 기반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고,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국제 자본의 이동성을 면세 처리의 배경으로 들고 있음(Ernst and Young, 1996, p. 3; Tait, 1999, p. 12); 김완순(1987, pp. 334~335)는 금융 용역의 면세 처리의 이유로 부가가치세제의 간소화 또는 조세행정의 용이성을 듦

15) 박명호·홍범교·김승래(2008) p. 6.

16) 기존 영업세제하에서 이자에 대하여 1% 세율로 과세한 것과 비교하여 부가가치세율 10%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었음

-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지만, 면세를 적용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여 업종별로 구체적으로 열거함
-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함¹⁷⁾

1) 개정연혁

가) 2013년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 이전(1977~2012년)

- 1976년 「부가가치세법」¹⁸⁾ 제정 당시 면세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에 열거된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함(〈표 II-1〉 참고)
- 은행업(1호), 증권업(2호), 신탁업(3호), 증권투자신탁업(4호), 전당포업(5호), 환전업(6호), 단기금융업(7호), 상호신용금고업(8호), 신용보증기금업(9호),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9의2), 보험업(10호), 기타 금전대부업(11호)임¹⁹⁾
 -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9의2)은 1977. 6. 29.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면세대상에 추가됨
- 열거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 역시 면세 처리함

17) 2013년 전면 개정 전에는 「(구)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규정하였음

18)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1977. 7. 1.][대통령령 제8409호, 1976. 12. 31. 제정]」 제33조 제1항 1호~11호

〈표 II-1〉 1977. 1. 1. 시행 「부가가치세법」상 금융·보험 용역 면세규정

부가가치세법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8607호, 1977. 6. 29. 일부개정)
<p>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7. (생략)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증전화 9. 전매품 10. 금융·보험 용역 11. 부동산임대 12. 토지 1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14. ~ 18. (생략)</p>	<p>제33조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 용역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 2. 증권업 3. 신탁업 4. 증권투자신탁업 5. 전당포업 6. 환전업 7. 단기금융업 8. 상호신용금고업 9. 신용보증기금업 9의2.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¹⁾ 10. 보험업 11. 기타 금전대부업 ② 제1항 각호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종의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p>

주: 1) 1977. 6. 29.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면세대상에 추가되었으며, 1977. 1. 1.부터 시행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부가가치세법[시행 1977. 7. 1.][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제1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607호, 1977. 6. 29. 일부개정]」 제33조 제1항부터 제3항

- 법 제정 이후 2012년(전면 개정 전)까지 면세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와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음²⁰⁾
 - 1990년대까지는 금융·보험업 관련 법률 제정에 따른 사업이나 역무를 면세 범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짐
 - 1996년에는 신용카드업 및 할부금융업을 면세 범위에 추가함²¹⁾

20) 연도별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상세 범위는 별첨 1 참조할 것

- 1998년부터는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으로 통합함
 - 2000년대 초반부터는 채권추심업, 선물거래업 및 증권거래법에 따른 사업 등을 면세 범위에 추가하고, 특히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또는 운용 용역을 계속 면세 범위에 추가하여 그 범위가 확장하는 경향을 보임
 - 2000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을 전면개정²¹⁾하여 면세대상 업종에 대한 근거법을 명시함
 - 2000년 및 2001년에는 보험중개·대리 용역 및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보험계리 용역·보험조사 및 보고 용역이 면세대상 보험업에 명시적으로 포함됨
 - 2003년에는 금융·보험 용역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자문(일임)업 및 채권추심업을 과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타법 통합에 따른 면세규정 재정비가 있었음
 - 2009년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의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정 및 타법 통합에 따라 관련 사업 및 업무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법」 면세 규정을 재정비함
- 2003년 세법 개정²³⁾은 여태까지 개정과 달리 예금의 여·수신, 거래정산, 내·외국환 업무 등 금융·보험 용역의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및 업무를 과세로 전환하였으나, 이후 법 개정으로 다시 면세로 취급하였음²⁴⁾
- 본질적 기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 및 신용정보회사가 제공하는 채권추심 용역에 대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도록 개정함

2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시행 1996. 1. 1.] [대통령령 제14863호, 1995. 12. 30. 일부개정]」 제33조 제1항 제7의2

22) [시행 2001. 1. 1.] [대통령령 제17041호, 2000. 12. 29. 일부개정]

23) [시행 2004. 1. 1.] [대통령령 제18175호, 2003. 12. 30. 일부개정]

24) 금융기관의 업무 확장으로 인하여 그 범위가 모호해짐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목적임

- 그러나 투자일임업과 투자자문업은 간접투자운용업과의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2004년 및 2007년 개정 시 면세 범위에 다시 포함함
 - 투자자문업은 2015년 국제 과세형평성을 이유로 다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함
- 채권추심업은 2005년, 2006년, 2009년, 2010년 총 네 차례에 걸쳐 과세전환시기를 연장하였고, 2013년에 연장규정을 철폐함으로써 2013년 2월 15일 이후 공급하는 용역부터 과세함²⁵⁾
 - 한편 2003년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제정²⁶⁾되고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면세대상 사업을 재정비함
- 2009년 세법 개정²⁷⁾은 「자본시장법」의 제정²⁸⁾으로 인한 변경을 반영하여 면세 대상 및 역무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법령을 재정비함
 - 「자본시장법」에 따라 면세대상에 추가된 사업은 투자유한회사업, 투자합자회사업, 투자조합업, 투자익명조합업이며, 판매회사업을 면세대상에서 삭제함²⁹⁾
 -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하에서의 자산운용회사업, 수탁회사업, 자산보관회사업은 각각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으로 업종 명칭을 변경함

25) 과세전환시기를 지속적으로 연장한 것은 연체자에 대한 채권추심 용역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었음

26) 2003. 10. 4.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 폐지; 2003. 10. 4.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2004. 1. 5. 시행); 펀드 형태에 따라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른 증권투자신탁,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른 뮤추얼펀드, 「신탁업법」에 따른 불특정금전신탁 등 각각 상이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고 있던 제도를 통합하여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정됨. 과거에는 펀드의 투자대상이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으로 제한되었으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간접투자 대상을 부동산, 금, 원유 등 실물자산과 장외파생상품(신용파생상품 제외)까지로 투자 대상을 넓힘

27)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일부개정]

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시행 2009. 2. 4.] [법률 제8635호, 2007. 8. 3., 제정]

2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카목 내지 하목 신설, 바목 삭제; [시행 2010. 1. 1.] [대통령령 제21304호, 2009. 2. 4., 일부개정]

나) 2013년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 이후³⁰⁾

- 2013년 세법 개정³¹⁾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면세 범위를 ‘은행업’이 아닌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로 변경하고 면세대상 역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2013년 7월에는 부가가치세 법령 체계를 전면 개정하여³²⁾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로 개편함
- 2015년 개정³³⁾ 시 금융선진국과의 과세기준 및 유사업종 간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일부 금융·보험 용역을 과세로 전환하고,³⁴⁾ 타법 폐지 또는 개정에 따라 면세 규정을 재정비함³⁵⁾
 - 다음의 용역은 과세 전환함
 - 「은행법」에 따른 보호예수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음의 사업 중 부동산·실물자산 등³⁶⁾에 투자하는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신탁업 중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³⁷⁾
 -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일반사무관리 용역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 집행사원 외의 자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제공하는 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사모투자전문회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

30) 2013년 「부가가치세법」 전면 개정 이후부터 2023년까지의 금융·보험 용역 상세 면세 범위는 <표 II-2>를 참고할 것

31) [시행 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 2013. 2. 15., 일부개정]

32) [시행 2013. 7. 1.]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전부개정]; 납세자의 이해 편의 도모 및 조세법률주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 법령 체계를 전면 개편함

33) [시행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1호, 2015. 2. 3., 일부개정]

3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071호)」 제40조 제1항 제1호 사목 삭제, 동항 제2호 라목·사목 및 동항 제8호 개정

35) 국세청(2015), pp. 194~198

36) “부동산·실물자산 등”이란 부동산·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이고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 그 밖에 이와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함

37) 부동산 신탁업 중 관리·처분·분양관리 신탁업 등을 말함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 용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 용역
 - 기존에 면세대상으로 열거하였던 투자신탁업, 투자회사업, 사모투자전문회사업, 투자유한회사업, 투자합자회사업, 투자조합업, 투자익명조합업 등을 ‘집합투자업’으로 정리하고,³⁸⁾ 전당포업은 금전대부업의 범위 내로 통일함³⁹⁾
 - 「산업발전법」 전부개정으로 인하여 기업구조조정조합이 2015년에 해산됨에 따라 동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은 열거 항목에서 삭제됨(조문 정비)⁴⁰⁾
- 한편 2015년부터 면세대상 금전대부업에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함
- 2016년 이후로는 새로운 금융 업종이 생기고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있을 때마다 업종 내 유사 용역 간 과세형평성을 위하여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에 포함 시킴으로써 면세 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을 보임

38)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 집합투자업과 별도로 분리되는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 중심으로 나열한 것을 ‘집합투자업’으로 정리한 것임

39) 전당포업은 1999년 「전당포 영업법」이 폐지된 이후 「대부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음.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에 따르면 전당포(개인 담보대출)는 ‘K. 금융 및 보험업(64~66)’ 중 ‘그 외 기타 여신 금융업(분류코드 64919)’에 속함

40)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2009. 4. 1., 전부개정, 2009. 5. 8. 시행); 종전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및 기업구조조정조합 제도를 대신하여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중 그 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함. 현행법상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하며(「자본시장법」(법률 제18128호, 2021. 4. 20., 2021. 12. 20. 시행) <부칙> 제10조 제5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자목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임

〈표 II-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면세 금융·보험 영역의 개정연혁(2013~2023년)

	'13	'14	'15	'16	'18	'19	'20	'22	'2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역	가.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E	E	E	E	E	E	E	E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E	E	E	E	E	E	E	E	
	다. 내국환·외국환	E	E	E	E	E	E	E	E	
	라. 채무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E	E	E	E	E	E	E	E	
	마. 상호부금	E	E	E	E	E	E	E	E	
	바. 신탁업(기여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E	E	E	E	E	E	E	E	
	사. 보호예수(保護預受)	E	E	T	T	T	T	T	T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E	E	E	E	E	E	E	E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E	E	E	E	E	E	E	E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E	E	E	E	E	E	E	E	
	가. 투자신탁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나. 투자회사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다. 집합투자업 ¹⁾	E/T	E/T	E/T	E/T	E/T	E/T	E/T	E/T	E/T
	라. 신탁업	E	E	E/T	E/T	E/T	E/T	E/T	E/T	E/T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1)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금전, 증권(집합투자재산 포함), 금전 채권, 동산,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업무(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관리하는 업무를 포함) ¹⁾									
	2)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지상권, 전세권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관련 권리를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 받아 운용하는 업무(부동산 담보신탁)									
	3) 신탁업자가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지상권, 전세권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관련 권리를 수탁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업무(부동산 개발신탁)									

〈표 II-2〉의 계속

	'13	'14	'15	'16	'18	'19	'20	'22	'23
4) 위 1)~3) 이외의 신탁업	E	E	T	T	T	T	T	T	T
마.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 및 이와 관련된 다음의 업무	E	E	E	E	E	E	E	E	E
1)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	E	E	E	E	E	E	E	E
2) 한국금융투자협회 증권시장에 비상장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	-	-	E	E	E	E	E	E
3)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E	E	E	E	E	E	E	E	E
4) 한국거래소의 업무	E	E	E	E	E	E	E	E	E
바. 특정 회사에 대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업 ²⁾	E	E	E	E	E	E	E	E	E
사. 투자일임업 ¹⁾	E	E	E/T	E/T	E/T	E/T	E/T	E/T	E/T
사. 투자자문업	E	E	T	T	T	T	T	T	T
아. 사모투자전문회사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³⁾ 에 대하여 다음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재산의 운용·보관·관리 및 지분증권의 판매 또는 환매	E	E			E			E ⁴⁾	
- 일반사무관리 용역	E	E	T	T	T	T	T	T	T
차. 투자유한회사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카. 투자합자회사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타. 투자조합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파. 투자의명조합업	E	E			집합투자업으로 통합				
하. 단기금융업	E	E	E	E	E	E	E	E	E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	-	T/E	T/E	T/E	T/E	T/E	T/E	T/E	T/E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	E	E	E	E	E	E	E	E
- 그 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	-	T	T	T	T	T	T	T	T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업

〈표 II-2〉의 계속

	'13	'14	'15	'16	'18	'19	'20	'22	'23
자산 관리· 운용 용역 ¹⁾	-	-	-	-	-	-	-	-	E
라.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 업자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용역	-	-	-	-	-	-	-	-	E
마.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 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용역 ¹⁰⁾	-	-	-	-	-	-	-	-	E
14. 「산업발전법」 ¹¹⁾ 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¹⁾	E	E	E/T	E/T	E/T	E/T	E/T	E/T	E/T
15.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E	E	E	E	E	E	E	E	E
16.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¹⁾	E	E	E/T	E/T	E/T	E/T	E/T	E/T	E/T
17.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	E	E	E	E	E	E	E	E	E
18. 그 밖의 금전대부업	E ⁶⁾								
1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 대리 용역	-	-	-	-	-	-	-	-	E
20.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업무	-	-	-	-	-	-	-	-	E

주: 1. E: 면세, T: 과세, E/T(T/E): 원칙은 면세(과세)이나 일부 과세(면세); 연도는 개정세법 시행일 기준으로 작성됨

2. 1977년부터 2012년 까지의 개정 연혁은 별첨 1를 참고할 것

1)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전세권·임차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업권, 광업권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면세 적용을 배제함

2) 2015년 개정 전에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
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으로 한정하였으나, 2015. 2. 3. 이후부터는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로 한정함
3) 2015. 10. 23. 개정 전에는 '사모투자전문회사', 2015. 10. 23. 개정 이후부터는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을 사용하
였으며, 2022. 2. 15. 개정 이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는 명칭으로 변경됨

4) 2015. 2. 3. 이후부터는 해당 기구(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용역으로 한정함

5)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 포함함

- 6) 2015. 2. 3. 이후부터 금전대부업에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교부를 얻으로 하는 경우가 포함됨
- 7)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제16998호)」 제정(2020. 2. 11.) 및 시행(2020. 8. 12.)에 따른 근거법 및 명칭 개정: 2020. 8. 11. 이전에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창업기회사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아닌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창업기회사”였음
- 8) 2023. 5. 16.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 시행령이 폐지됨에 따라 삭제됨
- 9) 2023. 10. 19. 이후부터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은 제외함(2023. 9. 26. 개정)
- 10)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으로 한정함(2023. 9. 26. 개정, 2023. 10. 19. 시행)
-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개정연혁을 참고하여 저자 요약 정리

2) 현행 규정⁴¹⁾

-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자가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열거함(〈표 II-3〉 참고)
 - (금융 용역)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 중 열거된 것,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용역, 기타금융업,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 등
 - 상호저축은행업, 신용보증기금업,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 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 및 금전대부업을 기타금융업으로 구분함
 - (보험 용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 그리고 시행령 제2항에 따라 부수 용역으로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함⁴²⁾
 - 이때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에 열거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한 판례⁴³⁾와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한 판례⁴⁴⁾가 모두 있어 사안별로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시행령 제40조 제4항은 금융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더라도 조세증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특정 대행 용역 및 수수료거래 등에 대해 면세 적용을 배제함(〈표 II-4〉 참고)

4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35호) 제40조

4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43) 국심 2005서2898, 2006. 6. 30.

44)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가) 면세 금융 영역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면세로 열거하는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는 다음과 같음⁴⁵⁾
 - (은행 업무)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가목),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나목), 내국환·외국환 업무(다목)
 - (부수업무) 채무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라목), 상호부금(마목),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 매수·회수 및 관련 업무)(바목), 수납 및 지급대행(아목),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자목), 전자상거래 관련 지급대행(차목)

-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는 ‘은행 업무’, 은행 업무에 부수되는 ‘부수업무’, 은행업은 아니지만 겸영할 수 있는 ‘겸영 업무’로 크게 구분됨
 - (은행 업무)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내국환·외국환 업무를 말함⁴⁶⁾
 - (부수업무 및 겸영 업무)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함으로써 은행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운영하거나,⁴⁷⁾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를 겸영할 수 있음⁴⁸⁾

4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을 괄호()로 표시함

46) 「은행법」 제27조 제2항

47) 「은행법」 제27조2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 제1~3호; 다만 법에서 열거하는 다음의 부수업무는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음;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상호부금(相互賦金),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보호예수(保護預受), 수납 및 지급 대행,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대행,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 대행,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 및 대여,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 금융 관련 조사 및 연구 업무, 부동산의 임대, 수입인지, 복권, 상품권 또는 입장권 등의 판매 대행,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 서적, 간행물 및 전산 설비 등 물적 설비를 활용한 광고 대행, 지급형주화(금화·은화 및 금화·은화모약메달)·금지금·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 개발 및 판매, 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앞의 열거된 업무 외의 부수업무로서 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금융위원회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부수업무

48) 「은행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 제3항 제1~3호;

□ 「은행법」과 「부가가치세법」상 은행 업무 차이

-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은행 업무는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이지만, 「은행법」에 따른 부수업무는 일부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에 포함됨
- 「은행법」에 따른 겸영 업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은행업의 면세로 열거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면세할 것으로 보임

□ 다음 기관 등의 사업은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⁴⁹⁾

-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2)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음의 사업⁵⁰⁾□ 집합투자업⁵¹⁾(제1항 제2호 다목)

-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 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각종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등을 받아야 하는 금융 업무. 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 그 밖에도 은행의 경영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 은행이용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업무의 겸영이 가능함

49)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동법 시행령(2023. 9. 26., 대통령령 제33735호) 제40조 제3항

5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5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제5항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사업을 말함

- 다만 부동산·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 (이하 부동산·실물자산 등)는 제외함
 -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산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 그 밖에 이와 재산 가치가 있는 자산을 의미함⁵²⁾

□ 다음에 해당하는 신탁업(제1항 제2호 라목)

- 위탁자로부터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⁵³⁾ 집합투자 재산⁵⁴⁾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업무⁵⁵⁾
 - 금전을 수탁 받아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업무는 제외함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
 - 위탁자로부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⁵⁶⁾를 수탁 받아 수익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운용 업무 또는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함

□ 투자매매업⁵⁷⁾·투자중개업⁵⁸⁾ 및 이와 관련된 업무(제1항 제2호 마목)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과 관련된 업무란 다자간매매체결회사⁵⁹⁾의 업무, 한국금융

5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7조

5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재산

5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 투자합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함

55)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 신탁업을 제외한 신탁업을 말함

5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

57) 투자매매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청약·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58) 투자중개업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그 중개나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 또는 증권의 발행·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5항;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여 다음 일정한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매매체결대상상품”이라 한다)의

투자협회의 비상장주식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한국거래소의 업무를 말함

-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⁶⁰⁾ 용역(제1항 제2호 바목)
- 투자일임업⁶¹⁾(제1항 제2호 아목)
 - 다만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⁶²⁾)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제공하는 다음의 용역(제1항 제2호 자목)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용역
 - 사모집합투자기구 지분의 판매 또는 환매 등 용역
- 단기금융업⁶³⁾(제1항 제2호 하목)
 -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및 보증 업무와 그 부대 업무(어음 담보 대출 업무)

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이하 “다자간매매체결 업무”라 한다)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함

- 60)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투자회사로부터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영위할 수 있으며(「자본시장법」 제184조 제6항, 제238조 제6항 및 제8항; 동법 시행령 제212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거나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 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 61)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 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
- 6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사목 단서
- 63) 「자본시장법」 제360조 제1항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 중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제1항 제2호 거목)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전담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금융투자상품의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 단기금융 업무, 종합투자계좌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⁶⁴⁾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의 외국환 업무 용역⁶⁵⁾

- 「외국환거래법」에 다른 외국환 업무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및 이에 딸린 업무를 말함⁶⁶⁾
 - 외국환의 발행 또는 매매
 -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推尋) 및 수령
 -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비거주자와의 예금, 금전의 대차 또는 보증
 - 위 열거된 업무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업무
 - 비거주자와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되는 증권 또는 채권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
 - 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 한정)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신탁·보험 및 파생상품거래
 - 외국통화로 표시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

- 외국환 업무는 본래 외국환 업무취급기관인 금융회사 등만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⁶⁷⁾ 일정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 역시 일부 외국환 업무 용역을 할 수 있음
 -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는 금융회사 등은 아니지만 다음 중 하나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함⁶⁸⁾

64) 「자본시장법」 제77조의3 제1항 및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7조의5 제1항 및 제77조의6 제1항

6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66)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6호; 동법 시행령 제6조

67)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2항

68)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3항

- (환전 업무)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⁶⁹⁾
- (소액해외송금 업무)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과 이에 수반되는 외국 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⁷⁰⁾
- (기타전문외국환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관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 간 지급·추심 및 수령⁷¹⁾

(4) 기타금융업

- 그 외 금융업으로 분류된 것으로서 개별법에 따른 다음의 업종 또는 사업⁷²⁾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5호)⁷³⁾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6호)⁷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9호)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⁷⁵⁾
 -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 포함함

69)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7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71)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1항; 외국환거래규정 제2-39조 제1~3항

7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4호, 5호, 6호, 9호, 18호

73) 상호저축은행업의 업무는 신용계 업무, 신용부금 업무, 예금 및 적금의 수입 업무, 자금의 대출 업무, 어음의 할인 업무, 내·외국환 업무, 보호예수 업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 기업 합병 및 매수의 중개·주소 또는 대리 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 업무,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 제1항 제9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관리·판매 및 대금의 결제(제25조의2 제1항 제10호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업무를 공동으로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 투자매매업 및 신탁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할부금융업,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 등이 있음(「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1~16호)

74) 신용보증기금업의 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보증연계투자, 중소기업팩토링 운용, 경영지도,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구상권 행사, 신용보증제도의 조사 및 연구, 위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것, 재보증 업무 및 유동화회사 보증 업무 등이 있음(「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제1항 1~7호, 제2항)

7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9호 및 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제14호 및 제41조

○ 금전대부업(18호)

- 어음 할인, 양도 담보, 그 밖에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함

(5) 금융 영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

□ 위 (1)~(4)에 열거된 금융 영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⁷⁶⁾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이 제공하는 다음의 자산 관리·운용 용역으로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운용하지 않는 것
 - 창업기획자⁷⁷⁾가 개인투자조합⁷⁸⁾에 제공하는 것
 -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유한(책임)회사⁷⁹⁾가 벤처투자조합(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제외)에 제공하는 것
 - 한국벤처투자⁸⁰⁾가 동법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에 제공하는 것

7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7호, 제10호 및 10호의2, 12호, 13호, 15호부터 17호, 19호, 20호

7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된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

7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개인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출자금,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된 개인 또는 투자목적과 출자규모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기획자·신기술창업전문회사·중소기업창업지원 또는 벤처투자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7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이란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말함

80)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

-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집합투자업자⁸¹⁾ 및 이들과 공동으로 업무 집행조합원이 되는 자⁸²⁾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⁸³⁾에 제공하는 것
 -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다만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자금을 부동산·실물자산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이 「한국은행법」 제81조 제2항에 따른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다음의 금융관련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 가치세를 면제함
-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한국은행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⁸⁴⁾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와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농업은행이 공급하는 전산 용역⁸⁵⁾

81) 「자본시장법」 제8조 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함

8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제3항

83)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으로 등록된 조합을 말함

8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6항 제56호;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8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9항, 제10항 및 제121조의25 제7항, 제8항; 내재 부가가치세 문제를 고려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부터 한시적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 용역
 -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인(중앙회의 자회사 포함)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
 -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 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
-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와 전산 용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명칭사용 용역
 - 수협은행이 조합에 공급하는 다음 전산 용역
 -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에 대한 용역
 -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용역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

나) 면세 보험 용역

-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보험 용역은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함

인 조치로 면제하였으나 계속하여 면세 적용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으며,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 「보험업법」상 보험업이란 보험상품의 취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引受), 보험료 수수 및 보험금 지급 등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말함⁸⁶⁾

- 「부가가치세법」에 열거하는 면세대상 보험업의 업무는 다음과 같음
 - 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 보험조사, 보고 용역
 -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 업무를 대리하는 용역⁸⁷⁾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 용역⁸⁸⁾

- 「부가가치세법」상 열거되지 않은 업무로서 보험회사가 할 수 있는 부수업무 또는 겸영 업무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는 업무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함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 업무,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등을 겸영할 수 있음⁸⁹⁾
 - 겸영 업무가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으로 열거된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면세보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에 따라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86) 「보험업법」 제1조 제1호 내지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 생명보험상품은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상품은 화재·해상(항공·운송보험)계약,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 등, 제3보험상품은 상해·질병·간병보험으로 분류함

87)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0-1 ③

88)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0-2

89) 「보험업법」 제11조, 제11조의2;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영건전성을 해지거나 보험계약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금융 업무로서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다만 부수 업무로서 다른 보험회사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된 경우, 이와 같은 부수업무를 하는 경우 신고할 필요 없음

다) 부수 재화 또는 용역

-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⁹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른 금융·보험업이 아닌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상기 열거된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 거래로 봄⁹¹⁾
 - 면세 여부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는 공급인지’ 및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인지’에 대한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된다고 볼 수 있음
 - 이때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는 제1항에 열거하지 않은 금융·보험업자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⁹²⁾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영업을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어⁹³⁾ 사안별로 차이가 있음
 - 기술보증기금이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신탁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⁹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A)가 차량 리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동차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외국 모회사(B)로부터 지급보증 용역을 제공 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모회사(B)가 제공한 지급보증 용역은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한 금융 용역에 해당함⁹⁵⁾
 - 자동차대여업을 영위하는 자가 차량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한 렌트료(임대료) 중 보험료 상당액을 포함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보험중개·대리 또는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보험업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⁹⁶⁾

90)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6조 제2항

9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92) 국심 2005서2898, 2006. 6. 30.

93)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94) 서면-2018-법령해석부가-3940, 2019. 3. 8.

95) 서울행정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0703 판결

96) 수원고등법원 2023. 10. 18. 선고 2022누14410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4. 5. 선고 2022구합 7165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 9. 23. 선고 2021구합55142 판결

〈표 II-3〉 현행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 영역

구분	근거 법령	면세대상 사업 또는 용역(업무)
「은행법」에 따른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	제1항	가 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채무증서 발행
		나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다 내국환·외국환 업무
		라 채무의 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마 상호부금
		바 팩토링(기업의 판매대금 채권의 매수·회수 및 이와 관련된 업무)
		아 수납 및 지급 대행
		자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차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지급대행
		제1호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기타 은행업에 포함하는 사업	제3항	제2호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제4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제5호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
		제6호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제7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다 집합투자업 ¹⁾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	제1항	라 위탁자로부터 금전·증권·금전채권·동산·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및 집합투자재산을 수탁 받아 운용하는 신탁업, ¹⁾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업
		마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및 이와 관련된 업무로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 한국금융투자 협회의 비상장지분증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한국거래소의 업무

주된 사업

〈표 II -3〉의 계속

구분	근거 법령	면제대상 사업 또는 용역(업무)	
주 된 사 업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	바 집합투자자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용역 아 투자일임업 ¹⁾	
		자 제2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구의 업무집행사원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자구 집합투자자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용역, 지분 판매 또는 환매 등의 용역
		하	단기금융업
		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사업 중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
		제4호	외국환 업무 용역
	기 타 금 용 업	제1항	외국환 업무 용역
		제1항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제1항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업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 사업금융업)
		제18호	금전대부업
금 용·보 험 용 역 과 유 사 한 용 역 을 제 공 하 는 다 른 기 관 의 사 업 또 는 업 무	제1항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업무 및 주택도시기금의 운용·관리 업무	
	제10·11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사업	
	제12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가 하는 주택저당채권·하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 용 및 처분 사업	
	제13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벤처기업 등이 동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등에게 제공하는 관리·운용 용역으로서 법령에 열거된 것 ¹⁾	
	제15호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표 II -3〉의 계속

구분		근거 법령		면제대상 사업 또는 용역(업무)
주 된 사 업	금융·보험 용역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다른 기관의 사업 또는 업무	제1항	제16호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¹⁾
		제1항	제17호	금융결제원이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
		제1항	제19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제1항	제20호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른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같은 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업	제1항	제8호	보험업(보험중개·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 보험조사, 보고 용역을 포함함)
			집행 26-40-1 ③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 업무를 대리하는 용역
			집행 26-40-2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이 보험모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보험모집 용역
	부수 용역	제2항	-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6호	제9항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한국은행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 제159조의2에 따라 공급하는 명칭사용 용역
기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10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인(중앙회의 자회사 포함)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제7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금융지주회사 또는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2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에게 공급하는 명칭사용 용역	

〈표 II-3〉의 계속

구분	근거 법령	면세대상 사업 또는 용역(업무)
기 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5 제8항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협은행이 조합에 공급하는 다음 전산 용역 -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탁받은 같은 법 제138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 -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제1항 제7호에 따라 조합에 공급하는 전산 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용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수협은행이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9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공급하는 전산 시스템의 위탁운영 및 관리 용역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협은행에 공급하는 전산 용역

주: 1) 금전 등을 받아 부동산·실물자산 및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어업권, 광업권 등에 투자하는 사업은 제외함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21조의23, 제121조의25

라) 과세 금융·보험 용역

(1) 공통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면세로 열거하는 금융·보험업 및 용역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함⁹⁷⁾
-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제1호)
 -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 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용역, 수납·지급 대행 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용역은 제외함
 -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제2호)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명칭사용료와 전산 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함⁹⁸⁾
 - 부동산 임대 용역(제3호)
 -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용역과 유사한 용역(제4호)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 대여 용역을 말함⁹⁹⁾
 - 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 용역은 면세하며, 해당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함
- 다음에 열거된 사업자가 금전 등을 받아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¹⁰⁰⁾

9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9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3 제9항, 제10항 및 제121조의25 제7항, 제8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1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5년부터 한시적인 조치로 면제하였으나 계속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함, 현행 규정에 따르면 면세적용 일몰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임

9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10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단서규정 참고

-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회사 등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2) 금융 용역

- 다음의 금융 용역은 2003년과 2015년 세법개정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봄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가 공급하는 채권추심 용역
 -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의 부수업무로서 보호예수 업무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 중 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을 제외한 신탁업
 -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전당포업
 - 「산업발전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같은 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 일부 용역은 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되거나 면세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적용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 신용정보회사가 자산유동화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한 채권추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봄¹⁰¹⁾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에는 여전히 보호예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면세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존재함

101) 서울고등법원 2018. 5. 2. 선고 2017누52377 판결

(3) 보험 용역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리 용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연금계리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2015년 세법 개정으로 면세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15년 7월 1일 이후 체결·수정·변경·갱신 분부터 과세함

〈표 II-4〉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과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

구분		근거법령	
대행 용역 및 수수료 거래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급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¹⁾	제4항 제1호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제4항 제2호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²⁾	제4항 제2호	
	부동산 임대 용역	제4항 제3호	
	감가상각자산 대여 용역 ³⁾	제4항 제5호, 시행규칙 규칙 제28조	
부동산· 실물자산 등 투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괄호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일임업자, 「벤처투자촉진법」에 따른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회사 등,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 등이 금전으로 투자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단서규정	
세법 개정으로 면세 적용 배제	금융 용역 ⁴⁾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⁵⁾	-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 용역	
		은행의 보호예수	
	보험 용역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보험계리 용역 및 연금계리 용역		

주: 1)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 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 대행 용역, 수납·지급 대행 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 용역은 면세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호 제1호 단서)
 2) 은행이 제공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거래내역조회, 이체, 자금서비스 등 통합자금관리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면세함(서면3팀-1116, 2006. 6. 15.)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 용역은 면세함(「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8조 괄호)
 4) 세법 개정으로 면세 적용을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주된 면세사업에 부수하는 경우 면세 적용이 가능함
 5) 2020년 7월 1일부터 공급하는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으로서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전제로 영세율을 적용함(「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자목)
 자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개정연혁을 저자가 요약함

3)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

-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 범위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함
 - 금융·보험업은 개별 준거법령에 따라 고유 업무 외에도 부수업무나 겸영 업무를 영위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수업무와 겸영 업무의 면세 여부와 관련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구체적인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은행업의 부수업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업을 제외한 다른 금융·보험업에 대하여는 특정 역무가 아닌 업종 자체만을 열거함

- 따라서 개별 준거법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의 부수업무 및 겸영 업무에 대한 면세 여부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관련 유권해석과 판례를 다음 본문에서 소개함
 - 부수업무 또는 겸영 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또는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각호에서 열거하는 면세대상 사업 또는 용역인지 여부
 -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

- 가) 부수업무 또는 겸영 업무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대상인지 여부

- 대표적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업무 중 부수업무 또는 겸영 업무이지만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은행의 업무로 열거되지 않은 경우 면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음
 - 「은행법」상 은행의 부수업무 중 금융관련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 업무는 은행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면세됨
 - 은행이 제공하는 교육 용역 및 도서·간행물 출판 업무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면세 용역인 경우에는 면세 금융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될 수 있음

- 경영 업무 중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자문업, 신탁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면세됨
- 경영 업무 중 자산유동화 관련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0호에 따라 면세되며, 기업 인수·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의 경우 동 법령 제40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과세되는 것임

나)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 여부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¹⁰²⁾
 - 해당 대가가 주된 거래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유권해석에 따르면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¹⁰³⁾
 -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 용역
 - 투자조사 및 상담 용역
 - 면세 용역 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 금융·보험 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 유가증권 대체결제 업무·명의개서 대행 업무 등
 -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102)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동법 집행기준 14-0-1

10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동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1

- 금융·보험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음
- 대출 또는 신용공여와 함께 제공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한 사례
 - (금융주선수수료) 대출과 함께 제공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면세하며, 대출 없이 별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봄¹⁰⁴⁾
 - (SPC자산관리 용역 수수료) SPC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 관리 용역의 경우 신용공여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 면세,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된다고 봄¹⁰⁵⁾
 -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금융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회사가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시스템(HTS)을 통해 투자 중개업과 별도로 고객에게 주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되는 금융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¹⁰⁶⁾
 -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신용보증 및 보증연계투자 업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기업의 발명을 평가하고 평가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보증 업무와 별도로 공급하는 평가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¹⁰⁷⁾
 - 거래 관행상 주된 용역의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지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례
 -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보험대리점이 여행자보험가입자에게 콜 센터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거래 관행상 보험대리점업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¹⁰⁸⁾

104) 부가가치세제과-553, 2012. 5. 9.; 법규부가 2012-474, 2012. 12. 27.

105) 부가46015-4137, 1999, 10, 11.

106)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773, 2020. 6. 10.

107)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169, 2020. 2. 14.

108) 서면-2018-법령해석부가-1223, 2018. 7. 2.

- 보험회사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상품과 연계되어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가 보험업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¹⁰⁹⁾

다)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르면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유형은 다음과 같으며, 이는 별도의 거래로 보지만 과세·면세 여부의 판단은 주된 사업의 과세·면세 여부에 따름¹¹⁰⁾

-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 주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

□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한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음

- 금융업자가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 등을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부수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세함¹¹¹⁾
- 할부금융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가 대출처의 부도로 해당 업체의 제품을 판매하여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수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함¹¹²⁾
-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대출을 받은 자의 채무변제불능으로 인하여 담보 재화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이를 공매 처분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은 금융보험

109)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721, 2021. 6. 10.

110)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 동법 집행기준 14-0-1

111) 서면3팁-509, 2006. 3. 16.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4-0-1

112) 부가46015-233, 1998. 2. 10.; 대출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건물을 법원에 경매신청한 후 사업자가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보아 그 주된 사업에 따라 과세·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부가 1265. 1-1705, 1984. 8. 14)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됨¹¹³⁾

□ 금융·보험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한 판례 및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음

-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 용역은 그 성질상 본래의 의미의 은행 업무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
 - 대법원 판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은행업에는 예금의 수입, 자금 대출, 환 업무 등 본질적 요소¹¹⁴⁾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은행 업무’와 그에 필수적인 ‘부수업무’만이 포함된다고 해석함¹¹⁵⁾
 - 은행업을 하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은행업 본래의 의미에서 벗어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세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음
- 은행업자가 은행업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전자금융 이용 시 사용되는 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를 발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은행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함¹¹⁶⁾
-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 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 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함¹¹⁷⁾

113) 부가46015-1625, 1996. 8. 10.; 다만 해당 담보재화(면세재화 또는 면세사업 관련 재화는 제외)의 소유권이 대출받은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2)

1) 대출받은 자가 사업자인 경우: 과세
 2) 대출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폐업한 경우 포함): 과세하지 않음

11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서는 은행업의 본질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 개설·해지 및 입

금·지급 업무
 - 자금대출 또는 어음할인(대출 잔액증명발급, 금융기관에 의한 원리금 수납 업무는 제외)
 - 내국환·외국환
 - 채무보증 또는 어음의 인수

115)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2두10384 판결

11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88, 2011. 12. 13.

117)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 2010. 4. 16.; 법규부가 2009-99, 2010. 4. 20.

라) 기타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과세 및 면세 판정 사례

□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기타 금융·보험 용역의 과세 및 면세 판정 사례 예시는 다음과 같음¹¹⁸⁾

○ 면세 판정사례

-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른 금융사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 대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다른 금융사업자의 본질적 업무 제외)¹¹⁹⁾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 등의 대가를 받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된 자가 제공하는 보험모집 용역
-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보험업자와 피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 업무를 대리하는 용역¹²⁰⁾

○ 과세 판정사례

- 금융·보험 외의 사업자(법인 포함)가 여신전문금융기관과 계약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기관의 금융상품 판매 대행만을 주업으로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 「자본시장법」에 따른 유사투자자문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증권ARS라이브 방송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주식 시황 추이 등 증권투자에 대한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는 용역
-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여신전문금융 용역과는 별도로 제공하는 자문 용역

118)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26-40-2

119) 다른 금융사업자 등의 본질적 요소를 포함하는 업무는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의미함

120)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0-4

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1) 일반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나 용역에 한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면세사업(비과세사업 포함)을 위한 중간투입물 소비 또는 투자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¹²¹⁾
 - 면세사업자가 생산·취득 단계에서 지불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지 못하고 비용으로 처리함
 - 그 결과 최종 거래단계에서 적용하는 면세는 완전면세가 아닌 부분면세이며, 만약 생산 거래 중간단계에 면세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누적효과’와 ‘환수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¹²²⁾

-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면세 겸업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할 수 있음¹²³⁾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액 및 비과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함¹²⁴⁾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였다가 공급(매각)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12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

122) 환수효과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써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면세포기제도, 간이과세포기제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 등이 있으나, 금융·보험업에는 적용되지 않음

12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124)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40-81-4 ②

-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면세사업과 관련한 부분은 공제할 수 없음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만 공제함
 -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 연도 총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¹²⁵⁾

2) 특례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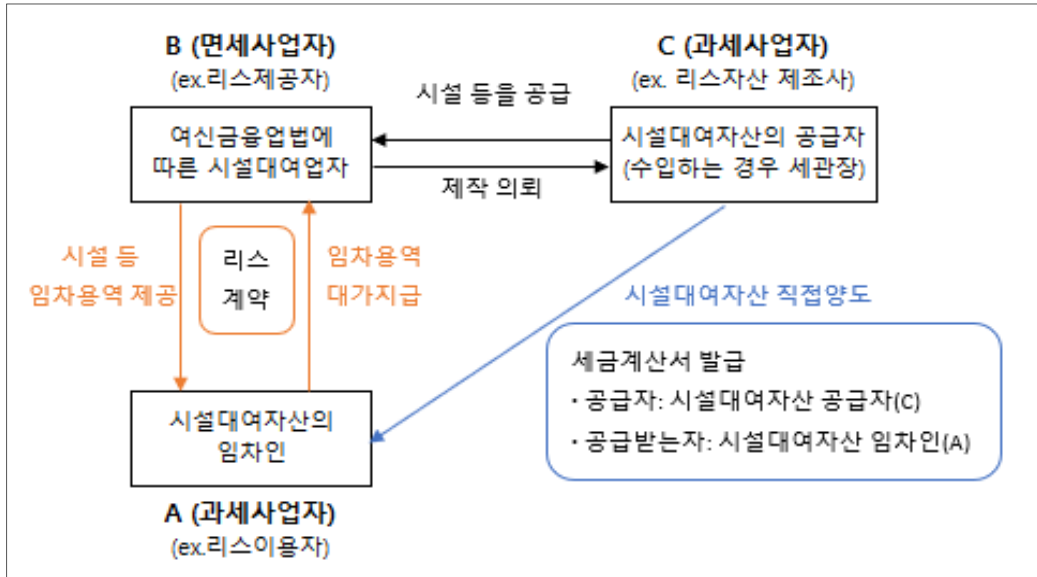
- 과세사업자(A)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B)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C)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공급자 또는 세관장(C)이 사업자(A)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음¹²⁶⁾
 - 위탁판매 또는 대리판매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거래상대방의 매입세액공제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¹²⁷⁾
 - 면세사업자인 시설대여업자(B)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A)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특례 규정을 통하여 시설 등의 공급자 또는 세관장(C)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임차인(A)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게 됨

1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1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음

12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집행기준 32-0-3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 규정은 1997년 12월 31일에 도입되었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7항(1997. 12. 31. 신설, 1998. 1. 1. 시행))

[그림 II-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매입세액공제 특례



자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라. 연결부가가치세

□ 우리나라는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2. 기타 간접세(교육세)

□ 우리나라는 현재 금융·보험업자를 포함하여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주세의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과 세율을 각각 달리하여 부과하고 있음¹²⁸⁾

○ 교육세는 교육재정의 확충에 드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임

128) 「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교육세는 고유의 과세기초를 갖고 있지 않으며 기존 세목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본세 부가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함(이만우·전형준·박기범(2006), pp. 36~37.)

- 1982년 신설 당시에는 1986년까지의 시한을 두고 있었으나 이후 두 차례 연장한 이후 1991년부터 영구세로 전환됨¹²⁹⁾

가. 납세의무자

-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서 금융업·보험업을 경영하는 자 중 별표에 규정하는 자임¹³⁰⁾

1) 금융업자

-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는 금융업자는 다음과 같음
 - (은행)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및 다음과 같이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¹³¹⁾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¹³²⁾
 - (금융투자회사) 「자본시장법」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¹³³⁾

129) 이상엽·박수진·이은별(2015), p. 96.

130)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동법 별표

131) 「교육세법」 제3조 별표 1 및 2, 3, 7, 8, 14호; 이를 소위 “특수은행”이라 함

132) 「교육세법」 제3조 별표 4, 5호

133) 「교육세법」 제3조 별표 9, 10, 12호

- (금전대부업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2023. 12. 31. 신설)¹³⁴⁾
 -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하는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포함함
- (기타 금융기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영업자¹³⁵⁾

2) 보험업자

-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는 보험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있음¹³⁶⁾
 - 보험회사는 「보험업법」 제4조에 따라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등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보험회사를 포함함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교육세 납부 의무가 있는 금융업자(상기 ‘가. 금융업자’에 열거된 자)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경우에 한함

나. 과세표준 및 세율

- 교육세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교육세율을 적용함

134) 「교육세법」 제3조 별표 15, 16호: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 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자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세 납부 의무를 부과함(2023. 12. 31. 개정, 2024. 1. 1. 시행)

135) 「교육세법」 제3조 별표 11, 13호

136)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동법 별표 제6호: 보험중개·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2023년 12월 31일 법령개정 시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세 납부 의무자에 추가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함

- 여기서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보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임¹³⁷⁾
-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이란 유가증권의 매각 또는 상환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에서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함
 - 보험료는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적립되는 금액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 등¹³⁸⁾과 재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¹³⁹⁾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는 다음이 포함됨¹⁴⁰⁾
 -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신탁보수, 대여료
 - 파생상품 등¹⁴¹⁾ 거래 순손익¹⁴²⁾ 및 외환매매 순손익¹⁴³⁾
 -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이익
 - 「보험업법」상 변액보험계약¹⁴⁴⁾ 특별계정의 평가이익¹⁴⁵⁾
 -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이 포함됨

137) 「교육세법」 제5조 제3항

138)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인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중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의 산정방식 등이 현행과 달라지게 되는데, 교육세 과세표준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보험료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보험계약의 만기·해지 및 보험사고 등 보험계약에 따른 지급에 대비하여 금융·보험업자가 적립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적립 금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교육세법 시행령」 제5조)

139)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 다만 금융·보험업자가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법인세법」 42조의 3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함(「교육세법」 부칙 <법률 제19187호, 2022. 12. 31.> 2조)

140) 「교육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4조 제1항

14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생상품을 말함

142)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에 따른 통화선도, 동 법령 제2항에 따른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의 평가손익을 포함함(2015. 2. 3. 개정)

143) 파생상품 등 제외하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을 포함함

144)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함. 변액보험상품은 개별법(채권에 함함),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시가법 중 보험회사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방법은 해당 사업연도 이후 계속 적용하여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4항 및 동법령 제73조 제2항 라목;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145) 「보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호의2(2023. 2. 28. 신설, 2023. 2. 28.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변액보험계약을 위한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손익에 따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보험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다목)이 신설됨

- 다음의 수익금액은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¹⁴⁶⁾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 국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및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 업무에 대한 수수료
 - 재보험 관련 보험료, 수수료 등
 - 보험회사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 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국외 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 자산·부채의 평가 또는 수익비용 귀속시기 차이 등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액
 -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이익 및 자산수증이익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 완성이익
 - 신용카드 발행자¹⁴⁷⁾와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¹⁴⁸⁾가 다른 경우, 가맹점 모집 및 관리자가 신용카드 등의 거래로 인하여 신용카드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가맹점수수료 중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 자본시장 지원 측면 또는 특수은행 등의 특정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의 중개를 다른 회사와 공동으로 수행하고 자신의 수수료와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를 함께 수령한 경우, 그 다른 회사에 분배될 수수료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무역어음 재할인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 및 수수료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 및 중소기업의 육성 분야에 자금 공급을 위해 금융·보험업자에게 대출·투자·보증한 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수수료 등

146)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147)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2호의 신용카드 발행 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를 말함

148)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신용카드업자를 말함

Ⅲ. 유럽연합(EU)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1. EU 부가가치세 준칙

-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틀은 기본적으로 EU 부가가치세 준칙¹⁴⁹⁾, ¹⁵⁰⁾을 따르기 때문에 회원국 모두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
 - 금융·보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의 세액공제(input tax credit)를 허용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면세임

-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1)항(a)~(g)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금융·보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함¹⁵¹⁾
 - 보험과 재보험 용역¹⁵²⁾
 - 보험 브로커(broker)와 보험 에이전트(agent)가 수행하는 관련 용역을 포함하

149) EU 부가가치세 준칙은 1977년 5월 17일 발표한 「제6차 부가가치세 준칙」(COUNCIL DIRECTIVE 77/388/EEC of 17 May 1977)의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토대로 2006년에 발표한 「제6차 부가가치세 준칙 개정」(Council Directive 2006/112/EC of 28 November 2006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을 현재까지 적용하며(The European Union's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VAT), <https://eur-lex.europa.eu/EN/legal-content/summary/the-european-union-s-common-system-of-value-added-tax-vat.html>, 검색일자: 2024. 1. 17.) 본문에서는 부가가치세 준칙으로 칭함

150) 준칙(Directive)은 그것이 달성할 결과에 대해서만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이 있고 그 이행의 형식과 방법의 선택은 회원국 당국의 재량으로 남겨둠(안창남, 2019, p. 13). 유럽연합법의 법원은 제1차 법원과 제2차 법원이 있는데, 전자는 리스본 조약, 유럽연합 조약, 유럽연합 운영조약이 있고, 후자에는 명령(regulation), 준칙(directive), 결정 등이 있음(안창남, 2019, pp. 10~13.)

151) The VAT Directive Article 135(1)(a)~(g); European Commission, "Exemptions without the right to deduct,"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exemptions-without-right-deduct_en, 검색일자: 2024. 1. 16.

152)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a호

고 보험사에 대한 비영업 부서(back-office) 관련 용역¹⁵³⁾의 제공이나 손해사정(damage assessment),¹⁵⁴⁾ 보험계리(actuarial) 관련 용역은 제외함

- 신용 공여(granting)와 관련 협상(인수·매입)¹⁵⁵⁾
 - 신용공여자에 의한 신용 관리를 포함함
- 신용 보증(guarantees)과 그 밖의 금전채무에 대한 기타 담보(security)에 관한 협상과 관련 거래(dealing)¹⁵⁶⁾
 - 신용을 보증하는 자에 의한 신용보증의 관리를 포함함
- 예금과 당좌예금, 지급과 이체, 대출, 수표 또는 기타 유통 증권(negotiable instruments)과 관련한 무현금 거래 및 협상¹⁵⁷⁾
 - 다만 채권 추심 활동은 제외함
- 법정 통화, 법정 통화로 사용하는 은행권, 법정통화로서 사용되는 주화와 관련된 현금거래¹⁵⁸⁾
 - 통화, 은행권, 주화 등의 협상(인수·매입) 관련 거래는 포함하지만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금, 은, 기타 주화, 은행권은 제외함
- 주식, 회사나 다른 단체의 지분, 사채 및 기타 증권과 관련 거래¹⁵⁹⁾
 - 주식 등의 협상(인수·매입) 관련 거래는 포함함
 - 그러나 재화의 점유나 부동산 이용에 대한 소유자의 대물적 권리 또는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자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증권에 대한 보관 및 관리 거래는 제외함¹⁶⁰⁾
- 회원국이 정하는 특정 투자펀드의 관리¹⁶¹⁾

153) ECJ, Mar 3. 2005, Case C-472/03,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v. Arthur Andersen & Co. Accountants cs [2005] ECR I-1719.

154) ECJ, Nov 20. 2003, Case C-8/01(Assurandør-Societetet, acting on behalf of Taksatorringen v Skatteministeriet), [2006] BVC 199

155)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b호

156)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c호

157)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d호

158)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e호

159)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f호

160)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f호, 제15조 제2항

161)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g호

- 다만 유럽연합 밖(extra Community) 수출에 대해 영세율(zero-rating)을 적용함
 - 이 경우 수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음

- 한편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401조는 면세 보험(또는 재보험) 서비스에 대해 회원국이 별도 세목으로 과세하는 것을 허용함¹⁶²⁾
 - 다만 별도 세목은 보험 서비스에 대한 거래세(turnover tax)의 특징적인 속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함
 - EU 회원국이 운용하는 보험세는 거래세로서의 속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판결한 바 있음¹⁶³⁾

- 현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보험세를 운용함
 - 상세한 내용은 '3.4.1) 보험세' 편에서 후술함

2. 면세 처리의 누적효과 완화 방안

가. EU 부가가치세 준칙

-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누적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가가치세 준칙은 과세 전환(opt to tax)제도¹⁶⁴⁾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VAT groups)¹⁶⁵⁾를 두고 있음¹⁶⁶⁾

162) Altenburger, O.A. et al., 2022, p. 341.

163) Chesham, 2019, pp. 6~8; 유럽사법재판소(ECJ)는 '(i) 재화와 용역의 거래를 대상으로 (ii) 거래 횟수와 관계없이 재화와 용역의 가격에 비례하여 (iii)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에 부과되고 (iv) 이전 단계에서 부과한 세액을 공제하므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를 과세한다는 측면을 매출세의 특징으로 제시하고 영국 보험세는 특정 보험 용역의 공급에만 부과되고, 보험 프리미엄에 대해 세율을 적용하고 생산과 유통의 각 단계별로 부과하지 않으므로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거래세가 아니라고 판시함(ECJ, April 29, 2004, Case C-308/01, GIL Insurance Ltd and Others v Commissioners of Customs & Excise, [2006] BVC 3)

164)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7조 제1항 제a호

165)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1조

- (과세전환제도) 금융 서비스 공급자는 과세전환제도를 통해 특정 면세 금융 서비스를 과세 처리할 수 있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¹⁶⁷⁾
 - 금융 서비스의 공급 중 공급자 본인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비율을 높일 수 있고 동시에 금융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자는 해당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금융 서비스의 면세 처리를 과세로 전환할 수 있는데 2023년 말 기준으로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의 9개국이 과세전환제도를 채택함
 - 상세 내용은 ‘3. 가. 3) 회원국별 과세전환(opt to tax)제도’ 편에서 후술함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는 재정·경제·조직적인 연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하여 법률상 독립한 회사의 그룹을 단일 납세의무자로 취급하는 간소화 방안임¹⁶⁸⁾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그룹 내부의 관계회사 간 거래는 내부거래로 취급하여 매입세액 불공제가 발생하지 않음
 - 2023년 말 기준 불가리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7개국)를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함
 - 핀란드, 몰타, 스웨덴은 금융 및 보험 업종에 한정하여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을 허용함

166) EU 회원국은 부가가치세 준칙 제32조 (1)항(f)의 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을 누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지만, 2017년 유럽재판소가 비용분담약정은 금융기관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더 이상 매입세액 불공제를 줄이기 위해 비용분담약정을 이용할 수 없음(Case C-326/15 judgements 1, 2 and 3 (JUDGMENT OF THE COURT (Fourth Chamber),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94787&pageIndex=0&doclang=en&mode=lst&dir=&occ=first&part=1&cid=2305361>, 검색일자: 2024. 1. 16.). 비용분담약정은 특정 면세 서비스 공급자로 이루어진 독립적 그룹이 중간투입물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그 비용을 그룹 구성원에게 면세로 재분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2조(1)(f), https://www.deutsche-boerse.com/resource/blob/3035778/1765424b2aedcb965ba8dbdfbda2adea/data/may2021_VAT_rules.pdf, 검색일자: 2024. 1. 22.)

167)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7조 제1항(a)

168)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1조

- 상세 내용은 ‘3. 가. 4) 회원국별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편에서 후술함

나. 금융 부문 관련 부가가치세 틀 개정을 위한 시도

- 금융 및 보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의 적용이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배경으로 인해 부가가치세 도입 당시부터 면세하였는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금융 부문의 면세 처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각도로 시도함
 - EC는 다음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논의함¹⁶⁹⁾
 - 준칙의 도입 이후 금융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변화하였다는 점
 - 금융기관은 면세 금융 서비스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대부분을 비용으로 부담 하는데 최근 기술 발전으로 인한 설비투자로 부담이 더욱 가중할 수 있다는 점
 - 금융 부문의 재정 기여도가 공평하고 공정한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 한다는 점
- 2007년 EC는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을 현대화 및 단순화하기 위해 준칙과 명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개정 절차를 종결하지 못함
 - 개정안에는 면세대상의 범위를 재정의하고 은행 및 보험 산업 모두에 대해 과세 전환을 채택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김
 - 개정안은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2016년에 최종 철회됨¹⁷⁰⁾
- EC는 2020년에 조세조치 개혁(EU Tax Action Plan)의 일환¹⁷¹⁾으로 금융보험

169) Conseil des prélèvements obligatoires La TVA, “une taxe à recentrer sur son objectif de rendement pour les finances publiques - février 2023,” <https://www.ccomptes.fr/fr/institutions-associees/conseil-des-prelevements-obligatoires-cpo>, 검색일자: 2024. 1. 22., p. 44.

170)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exemptions-without-right-deduct_en, 검색일자: 2024. 1. 23.

171) EC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정하고 단순화된 과세를 만들고 현대 기술과 증가하는 디지털 세계에 더욱 적응할 수 있도록 구현할 25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현재 준칙 개정을 위해 진행 중인 과제는 EU 내 재화 및 용역의 무역 촉진, 단일 EU VAT 등록시스템 전환, 금융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규정의 현대화, 세무상 거주자 규정 개정, 부가가치세 조세 범죄 방지가 있음(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package-fair-and-simple-taxation_en, 검색일자: 2024. 1. 23.)

서비스 관련 현행 부가가치세 규정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개 협의를 시행한 바 있음¹⁷²⁾

○ EC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면세를 유지 하되 일부 수수료 기반 서비스에 대해 과세하는 대안에 초점을 맞춤

□ 그리고 금융 부문이 재정 측면에서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별도 세목의 도입을 통해 금융 부문의 과세를 고려한 적도 있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함¹⁷³⁾

○ EC¹⁷⁴⁾와 IMF¹⁷⁵⁾는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로 은행 부문을 과소 과세하므로 해당 부문의 재정기여도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또는 금융활동세(Financial Activities Tax) 도입을 논의함

○ 2011년과 2013년 EC는 FTT 도입 제안을 제출하였으나 회원국 간 합의가 도출 되지 않음¹⁷⁶⁾

□ 한편 매입세액 불공제액(또는 hidden VAT) 규모를 살펴보면 유럽연합 내 주요 은행 부문은 평균 70억유로(2008년부터 2010년 3개년)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부담 하는 것으로 보고됨¹⁷⁷⁾

172)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package-fair-and-simple-taxation_en; 공개협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안은 2023년에 공개 예정이었지만 2024년 1월 현재까지 발표한 바 없음; EC는 이미 금융 용역에 대해 5가지 VAT 모델을 제안했는데, 모두 최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입법 정의를 포함함(표준세율(고정 요율 인하 옵션), 경감세율(고정 요율 인하 옵션), 투자 용역에 대한 표준세율(고정 요율 공제), 투자 용역에 대한 경감세율(고정 요율 공제를 포함), 새로운 비용 분담 방식)

173) Taxation of the financial sector,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financial-transaction-tax_en

174) European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EC (2010) 1166, Financial Sector Taxation- 7 October 2010.

175) IMF, September 2010, Financial Sector taxation. The IMF's Report to the G-20 and background material. Eds. S. Claessens, M. Keen and C. Pazarbasioglu.

176) Proposal for a Council Directive on a common system of financial transaction tax and amending Directive 2008/7/EC, 28 September 2011, COM(2011) 594 final;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financial-transaction-tax_en

177) PWC, 2011, p. 4.

- 전문가집단 PricewaterhouseCoopers(PWC)에 따르면 은행 부문의 매입세액 불공제액 추정치를 2008년부터 2010년 3개년 평균 70억유로로 보고함¹⁷⁸⁾
- PWC(2011)은 유럽연합 소재한 16개의 주요 은행¹⁷⁹⁾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의 회원국별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를 보고함
 - 3개년 총누계액 기준으로 프랑스(90억유로), 영국(49억유로), 이탈리아(18억유로), 독일(18억유로), 네덜란드(12억)의 순으로 매입세액 규모가 큼

〈표 Ⅲ-1〉 주요 은행 부문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2008~2010년)

(단위: 개, 백만유로, %)

국가	은행 수	매입세액 불공제액				부가가치세수 대비 매입세액 불공제액 비율		
		2008	2009	2010	평균 ¹⁾	2008	2009	2010
오스트리아	3	4	4	5	2	0.040	0.032	0.028
벨기에	4	146	194	255	64	0.591	0.796	0.994
불가리아	2	0	0	0	0	0.011	0.013	0.013
체첸공화국	4	3	2	3	1	0.027	0.025	0.027
덴마크	2	60	60	60	30	0.257	0.267	0.261
핀란드	3	50	50	50	17	0.320	0.331	0.325
프랑스	9	3,280	3,376	2,310	257	2.382	2.591	1.704
독일	8	455	540	767	96	0.258	0.304	0.426
그리스	3	18	18	18	6	0.104	0.118	0.111
헝가리	3	1	1	1	0	0.009	0.012	0.014
아일랜드	4	38	31	28	7	0.291	0.301	0.279
이태리	8	598	612	619	77	0.638	0.710	0.637
룩셈부르크	5	22	21	15	3	0.911	0.842	0.560

178) PWC(2006a)는 Eurostat 거시경제 데이터를 이용하여 2007년 기준 330억유로의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를 추정함 바 있음

179) Barclays, BBVA, BNP Paribas, BPCE, Commerzbank, Crédit Agricole, Danske Bank, Deutsche Bank, Dexia, DZ Bank, Grupo Santander, HSBC, ING Bank, Intesa Sanpaolo, Lloyds, Nordea Bank, Rabobank, Royal Bank of Scotland, Société Générale and UniCredit

〈표 III-1〉의 계속

국가	은행수	매입세액 불공제액				부가가치세 대비 매입세액 불공제액 비율		
		2008	2009	2010	평균 ¹⁾	2008	2009	2010
네덜란드	5	482	462	273	55	1.113	1.120	0.652
폴란드	4	6	8	1	0	0.006	0.008	0.001
포르투갈 ³⁾	2	36	0	34	17	0.251	-0.002	0.254
루마니아	3	17	10	10	3	0.159	0.122	0.104
슬로바키아	3	1	1	1	0	0.023	0.019	0.024
스페인	5	203	192	219	44	0.387	0.523	0.395
스웨덴	4	110	110	110	28	0.379	0.383	0.315
영국 ²⁾	10	1,651	1,346	1,872	187	1.515	1.491	1.644

주: 1) 회원국 소재 은행별 3개년 평균값임
 2) 영국은 2020년 1월 EU 탈퇴 이전이므로 포함하고, 슬로베니아에는 한 개의 은행이 소재하였지만 매입세액공제액의 수준이 미미하여 반영하지 않음
 3) 포르투갈의 한 은행은 불공제액 중 환급가능한 금액(18만 600유로)을 음(-)의 부호로 표시함
 자료: PWC(2011), p. 77; Eurostat, “tax revenue statistics,” https://ec.europa.eu/eurostat/statistics-explained/index.php?title=Tax_revenue_statistics, 검색일자: 2024. 3. 26.

3. EU 회원국별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현황

가. 부가가치세¹⁸⁰⁾

1) 금융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현황

□ EU 회원국은 EU 부가가치세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180) 금융 서비스에 대한 EU 회원국의 부가가치세 규정은 IBFD의 Country Tax Guides(Value Added Tax)을 토대로 작성함([https://research.ibfd.org/#/search?N=0+500001+4292941977+4293738526&Ne=7487&Nr=AND\(3,10\)&Nu=global_rollup_key&Np=2&Ntk=Text&Ntt=country%20tax%20guide&Nty=1&Ntx=mode+matchallpartial](https://research.ibfd.org/#/search?N=0+500001+4292941977+4293738526&Ne=7487&Nr=AND(3,10)&Nu=global_rollup_key&Np=2&Ntk=Text&Ntt=country%20tax%20guide&Nty=1&Ntx=mode+matchallpartial), 검색일자: 2024. 1. 23.)

- 입법 형식에는 차이를 두지만, 면세 금융 서비스의 범위를 공통으로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 제1항 제b호에서 제g호까지의 다음 규정을 따름(별첨 2 참조)
- 회원국은 공통으로 수수료기반 금융 서비스를 과세 금융 서비스의 범위로 정하지만 국가별로 일부 차이가 있음(별첨 2 참조)
- 준칙 또는 판례를 토대로 다음 금융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의 적용을 배제함
 - 채권 추심
 - 수집목적의 주화나 지폐, 화폐 자체로서의 관심 대상이 되는 동전
 - 재화에 대한 소유권 설정문서, 소유자에게 부동산 사용권을 부여하는 권리, 소유자에게 부동산 또는 해당 재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점유권 등을 나타내는 증권의 거래
- 수수료기반의 과세 금융 서비스의 범위는 회원국별로 법령, 판례, 과세당국 유권 해석을 통해 명확히 정함
 - 팩토링(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공화국, 그리스, 스페인, 크로아티아,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폴란드, 스웨덴, 슬로베니아),
 - 유가증권의 관리 및 보관(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헝가리, 이태리,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 금고 대여(불가리아, 독일, 이태리, 스웨덴, 크로아티아)
 - 예금 또는 유가증권 관련 관리 수수료¹⁸¹(오스트리아, 불가리아)
 - 행정, 법률, 감사, 규정준수 관련, 마케팅, 상품개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금융기관의 백오피스 활동(스페인, 크로아티아)
 - 투자 자문(폴란드)
 - 신용 부여 등 관련 계약이 미체결될 경우 중개인의 수수료(불가리아)
 - 신용카드 관련 송금의 처리, 결제, 승인 서비스 관련 거래(사이프러스)
 - 투자기금의 위탁자 관련 서비스(에스토니아)

181) 관리 수수료에는 인증서 발행, 교체, 복제, 보험 및 우편 서비스, 계정 관리, 입금 수수료, 명의 주식의 재발급, 관련 증명서 등이 있음

- 단발기 또는 POS 임대 및 관리(크로아티아)
- ATM 설치 및 유지관리(크로아티아, 폴란드)

2) 보험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 현황

- EU 회원국은 EU 부가가치세 준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입법 형식에는 차이를 두지만, 준칙 제135조 제1항 제a호에서 규정한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를 공통으로 부가가치세 면세함
 - 면세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의 범위에는 보험 중개인(broker) 또는 보험 대리인(agent)가 수행하는 보험 또는 재보험 서비스를 포함함
- 회원국은 보험사에 대한 비영업 부서(back-office) 관련 용역¹⁸²⁾의 제공이나 손해사정(damage assessment),¹⁸³⁾ 보험계리(actuarial)¹⁸⁴⁾ 관련 용역을 과세 대상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로 취급함
 -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 관련 용역이 부수적인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오스트리아와 핀란드는 손해사정이나 보험계리 관련 용역이 보험 서비스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함

3) 회원국별 과세전환(opt to tax)제도

- EU 부가가치세 준칙은 면세 금융 서비스의 과세전환을 허용하며¹⁸⁵⁾ 회원국의 선택 사항으로 남겨둠¹⁸⁶⁾

182) ECJ, Mar 3. 2005, Case C-472 / 03, Staatssecretaris van Financiën v. Arthur Andersen & Co. Accountants cs [2005] ECR I-1719.

183) ECJ, Nov 20. 2003, Case C-8/01 (Assurandør-Societetet, acting on behalf of Taksatorringene v Skatteministeriet), [2006] BVC 199

184) EC, 2020, p. 53

185)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7조 제1항(a)

186)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vatopt/html/vatopt_s_007.html%23vatopt_t_19_tfn_17

- 과세전환을 채택하는 경우 관련 적용 범위나 제한 등 관련 규정은 회원국이 정함¹⁸⁷⁾
- 과세전환은 금융 서비스를 포함한 면세 부동산 임대, 건축물 공급, 토지 공급 등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음
 - 금융 서비스에 대한 과세전환을 채택한 회원국은 9개국이지만 부동산 임대 등 면세 공급의 과세전환은 대부분 회원국이 채택함
- 현재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면세 금융 서비스에 대해 과세전환을 시행함¹⁸⁸⁾(별첨 2 참조)
 - 프랑스의 경우 과세전환 가능한 면세 금융 서비스의 범위는 부가가치세 준칙의 규정과 유사함
 - 이자 외 수취에 대한 여신 업무, 할인 또는 유사 수수료 외 수취에 관한 기업어음 관련 업무, 고객 계정에 대한 증권 관련 업무, 투자자금 운용, 외식이용권 발행 및 팩토링
 - 독일은 부가가치세 준칙의 규정과 유사하게 「부가가치세법」¹⁸⁹⁾에서 규정하는 다음 면세 금융 서비스는 과세전환 할 수 있음¹⁹⁰⁾
 - 신용 공여 및 협상, 법정 통화 거래 및 협상, 당좌계정, 수표, 금전채권 거래 및 협상, 예금 및 당좌계좌, 지급, 은행이체, 유통증권의 추심 관련 거래 및 협상,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협상, 지부증권 거래 및 협상,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의 인수 및 협상 등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의 경우 일부 면세 금융 서비스에 한하여 과세전환을 허용함¹⁹¹⁾
 - 오스트리아: 공급 과정에서의 신용 부여,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지급 보증

187)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7조 제2항

188) Annacondia, F. "7.2. VAT Options Exercised by the Member St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vatopt/html/vatopt_s_007.html%23vatopt_t_19_tfn_27

189)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4조 8a항~8g항

190) 독일 부가가치세법(UStG) 제9조

191) 에스토니아의 경우 과세전환을 허용하는 금융 서비스 범위를 확인하지 못함

- 벨기에: 지급 및 수령 관련 거래와 협상
- 불가리아: 임대계약(lease contracts) 내에서의 신용 부여
- 크로아티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신용 부여

4) 회원국별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 EU 부가가치세 준칙은 법적으로는 독립된 실체라고 하더라도 재무적·경제적·조직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연계한 연결(consolidated)그룹인 경우 하나의 납세의무자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¹⁹²⁾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 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사항에 해당함
 - 다만 제도의 도입이나 증대한 개정을 앞두고 있는 회원국은 입법 전에 반드시 부가가치세 자문위원회와 협의해야 함
- 연결그룹 간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의 범위로 보지 않으므로 연결그룹 내에서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비중을 낮출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음

192)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1조 전문((After consulting the advisory committee on value added tax(hereafter, the “VAT Committee”), each Member State may regard as a single taxable person any persons established in the territory of that Member State who, while legally independent, are closely bound to one another by financial, economic and organizational links.); EU는 지분을 혹은 의결권이 50%를 초과하거나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되는 등 하나의 기업(company)이 다른 기업에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재무적 연계), 그룹 내 구성원들의 주요 활동의 본질이 같거나 그 활동들이 상호보완적 또는 의존적인 경우, 또는 한 구성원이 전적으로 혹은 본질적으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경제적 연계), 경영진을 공유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공유하는 경우(조직적 연계)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룹 내 재무적·경제적·조직적 연계가 있는 것으로 봄(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VAT group o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1 of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COM 2009/0325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09DC0325&from=EN>, 검색일자: 2024. 1. 24.; 정다운·홍성희·이성현, 2022, p. 26)

- 회원국은 국내 입법을 통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는데, 상세 규정은 회원국 별로 차이가 있음¹⁹³⁾
 - 2009년 15개(영국 포함) 회원국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후 최근 룩셈부르크(2018년 7월 31일), 이탈리아(2019년), 프랑스(2023년), 폴란드(2023년)의 순으로 제도를 도입함
 - 2023년 현재 불가리아, 그리스,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는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하지 않음¹⁹⁴⁾

- EU 회원국 대부분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 여부를 납세자의 선택에 맡기지만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는 법정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EU 회원국 대부분은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제도의 적용을 허용하지만, 핀란드, 몰타, 스웨덴은 주로 금융 및 보험업에 한정하여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을 허용함 (<표 III-2>참조)
 - 핀란드와 스웨덴은 금융·보험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하며, 몰타는 금융, 복권, 게임, 퇴직연금 등이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을 허용함¹⁹⁵⁾

193) EU는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국내 입법에 회원국이 참고할 수 있도록 2009년 연결부가가치세 협의문서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Council and the European Parliament on the VAT group option provided for in Article 11 of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COM 2009/0325 final.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52009DC0325&from=EN>, 검색일자: 2024. 1. 24.)를 공개하였는데 적용 요건, 연결그룹의 부가가치세법상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담고 있음(정다운·홍성희·이성현, 2022, p. 24)

194) 정다운·홍성희·이성현, 2022, p. 29.

195) 핀란드와 스웨덴의 업종 제한 규정에 대해 EU 부가가치세 준칙이 적절하게 국내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한 EC의 이의제기에 대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경쟁업체 간 재정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고(핀란드의 경우), 조세회피 등에 있어서 금융업에 대한 금융감독이 추가적 안전장치로 작동하므로 타 산업에 대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스웨덴) 판결한 바 있음(PWC, "Non-business entity may be member of a VAT group - II.," [https://blogs.pwc.de/de/german-tax-and-legal-news/article/229367/non-business-entity-may-be-member-of-a-vat-group-ii./](https://blogs.pwc.de/de/german-tax-and-legal-news/article/229367/non-business-entity-may-be-member-of-a-vat-group-ii/), 검색일자: 2024. 1. 25.)

- EU 회원국 일부는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최소 적용 기간을 규정함
 - 체코와 라트비아는 시행 후 1년간, 룩셈부르크, 몰타는 2년간,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는 3년의 의무 적용 기간을 두고 있음
 - 스웨덴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시행 및 해지 모두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함

- EU 회원국 대부분은 연결실체의 지분비율 규정을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 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0%의 지분비율을 규정함
 - 오스트리아는 75%의 지분비율을 규정하지만 50~75%의 지분비율이라도 경제적·조직적인 연결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음
 - 덴마크(100%)와 몰타(90%)는 다른 회원국보다 높은 지분비율을 요구함

〈표 III-2〉 EU 회원국의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현황

국가	도입 여부	강행 규정	업종 제한	연결 지분비율	의무 적용 기간
오스트리아	○	○	×	75% ¹⁾	×
벨기에	○	×	×	50%	3년
불가리아	×	-	-	-	-
사이프러스	○	×	×	-	×
체코	○	×	×	40%	1년
덴마크	○	×	×	100%	×
에스토니아	○	×	×	50%	×
핀란드	○	×	○(금융 및 보험)	50%	×
프랑스	○	×	×	50%	3년
독일	○	○	×	50%	×
그리스	×	-	-	-	-
헝가리	○	×	×	- ²⁾	×
아일랜드	○	×	×	50%	×
이탈리아	○	×	×	50%	3년
라트비아	○	×	×	50%	1년
리투아니아	×	-	-	-	-

〈표 Ⅲ-2〉의 계속

국가	도입 여부	강행 규정	업종 제한	연결 지분비율	의무 적용 기간
룩셈부르크	○	×	×	50%	2년
몰타	○	×	○(금융 복권, 게임, 퇴직연금 등)	90%	2년
네덜란드	○	○	×	50%	×
폴란드	○	×	×	50%	3년
포르투갈	×	-	-	-	-
루마니아	×	-	-	-	-
슬로바키아	○	×	×	50%	×
슬로베니아	×	-	-	-	-
스페인	○	×	×	50%	3년
스웨덴	○	×	○(금융 및 보험)	50%	× ³⁾
크로아티아	×	-	-	-	-

주: 1) 오스트리아는 50~75%의 지분비율이라도 경제적 조직적 연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연결할 수 있음

2) 헝가리는 계열사(affiliated)로 간주되는 자를 대상으로 연결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만 지분율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3) 제도의 시행 및 해지 모두 국세청의 승인이 필요함

자료: IBFD, "Country Tax Guides VAT Groups," [https://research.ibfd.org/#/search?N=0+500001+4292941867+4293738526&Ne=7487&Nr=AND\(3,10\)&Nu=global_rollup_key&Np=2&Ntk=Text&Ntt=vat%20groups&Nty=1&Ntx=mode+matchallpartial](https://research.ibfd.org/#/search?N=0+500001+4292941867+4293738526&Ne=7487&Nr=AND(3,10)&Nu=global_rollup_key&Np=2&Ntk=Text&Ntt=vat%20groups&Nty=1&Ntx=mode+matchallpartial), 검색일자: 2024. 1.25.; 정다운·홍성희·이성현, 2022, p. 19.

나. 부가가치세 외 간접세

1) 보험세

- 부가가치세 준칙은 보험 및 재보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면서 '거래세(turnover tax)에 해당하지 않는 조세를 새로 도입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함¹⁹⁶⁾

196)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401조

- 1988년 직접 보험과 관련한 준칙¹⁹⁷⁾이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간접세로 보험세를 처음 허용한 이후, 유럽 보험회사의 보험감독체계인 유럽연합 준칙(2009/138/EC) (이하 솔벤시(Solvency) II)¹⁹⁸⁾의 제157조에서 보험세 규정을 승계함

- 현재 대부분 EU 회원국은 생명보험 또는 일반보험의 보험료(insurance premium)에 대해 보험세를 부과함(별첨 3 참조)
 - 사이프러스와 아일랜드는 보험세 외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함
 - 사이프러스는 생명보험과 일반보험에 대해 건당 2유로(최대 18유로)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함
 - 아일랜드는 일반보험에 대해 계약건당 1유로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함
 - 보험세에 추가하여 별도 준조세(parafiscal taxes)를 부과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있음
 - 체코공화국과 폴란드는 보험세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준조세를 부과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는 보험세를 도입하지 않음

197) 생명보험 외 직접 보험과 관련된 법률, 규정 및 행정 규칙의 조정에 관한 준칙('Second Council Directive 88/357/EEC of 22 June 1988 on the coordination of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relating to direct insurance other than life assurance and laying down provisions to facilitate the effective exercise of freedom to provide services and amending Directive 73/239/EEC'). 제25조에서 보험 프리미엄에 대한 간접세(indirect tax)를 규정하는데 본문은 Article 25 Without prejudice to any subsequent harmonization, every insurance contract concluded by way of provision of services shall be subject exclusively to the indirect taxes and parafiscal charges on insurance premiums in the Member State ... 중략 ... Each Member State shall, subject to future harmonization, apply to those undertakings which provide services in its territory, its own national provisions for measures to ensure the collection of indirect taxes and parafiscal charges due under the first subparagraph.'임(<https://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88L0357:EN:HTML> 검색일자: 2024. 1. 16.)

198) 본래 명칭은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이며 EU 보험업의 자본 건전성과 고객 보호 강화를 목표로 도입되었으며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함

- 솔벤시 II에 따라 보험계약을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일반보험)으로 구분할 때, 대부분 회원국의 보험세는 주로 일반보험을 과세기반으로 함
 - 불가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10년 이상 생명보험), 헝가리,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생명보험에 대해 보험세를 면세함
 - 대부분 EU 회원국은 수출신용보험과 재보험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보험세를 면세함

- 보험세 세율의 수준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유사한 수준이거나 부가가치세보다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로 구분할 수 있음¹⁹⁹⁾
 - 네덜란드(21%), 독일(19%), 핀란드(24%)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과 보험세 표준세율이 동일함
 - 보험세 표준세율과 부가가치세 표준세율 간 격차가 큰 국가는 벨기에(2~9.25%), 사이프로스(1.5%), 덴마크(1.1%), 불가리아(2%), 아일랜드(1~3%), 룩셈부르크(4%), 루마니아(0.15~4.5%)가 있음
 - 격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는 슬로바키아(8%), 슬로베니아(8.5%), 스페인(8%), 프랑스(9%), 포르투갈(9%)이 있음

- EU 회원국 대부분 보험료(insurance premium) 총액을 보험세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보험금 지급액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음
 - 독일과 스웨덴은 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보험세 과세표준을 계산함
 - 독일은 주거형건물 손해보험과 가재도구 손해보험에 대한 과세표준을 각각 보험료의 86%, 보험료의 85%로 정함
 - 스웨덴은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료의 95%를 과세표준으로 정함

199) 보험세 세율은 괄호()로 표시함

2) 급여세

- EU 부가가치세 준칙은 달리 규정한 바는 없지만 프랑스와 덴마크는 금융·보험을 포함한 부가가치세 면세 부문을 대상으로 별도 세목인 급여세를 부과함²⁰⁰⁾
- 프랑스는 직전연도 매출액의 90% 이상 면세인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급여세(Taxe sur les salaires)를 4.25%, 8.5%, 13.6%의 세율로 부과함²⁰¹⁾
- 덴마크는 부가가치세 면세 부문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정 세율의 급여세(Lønsumafgift)를 부과함²⁰²⁾
 - 인건비 지급기관을 비영리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 신문·출판사, 기타 면세 서비스 부문으로 구분하여 각각 6.37%, 15.3%, 3.54%, 4.12%의 세율(2023년 기준)을 부과함

200) 비EU 회원국으로는 호주,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등이 금융 및 보험 부문에 급여세를 부과함(Laurent Quignon, 2018, p. 95)

201) Entreprendre.Service-Public.fr, "Taxe sur les salaires,"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2576>, 검색일자: 2024. 1. 23.); 2023년 기준 총급여 8,573유로까지는 4.25%, 총급여 8,573초과~17,114유로까지는 8.5%, 총급여 17,114유로 초과는 13.6%의 세율을 적용함

202) Skat.dk, "Beregning af lønsumsafgift," <https://skat.dk/erhverv/loensumsafgift/beregning-af-loensumsafgift>, 검색일자: 2024. 1. 23.

IV. 주요국의 금융·보험 서비스 관련 간접세

1. 호주

가. GST

1) GST 개요

- 호주는 2000년 7월부터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의 일반 소비세인 Goods and Services Tax(GST)를 시행함²⁰³⁾

- (과세대상) 대부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²⁰⁴⁾과 수입²⁰⁵⁾에 대하여 GST를 부과하는 데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가 호주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재화의 수입
 - 자문이나 정보의 제공
 - 부동산의 수여(grant), 양도(assignment), 포기(surrender)

203) 연방정부 도매판매세(Wholesale Tax)와 주 정부의 9종의 간접세숙박세(Bed tax: 숙박비에 부과하는 세금), 금융기관세(Financial institution duty: 은행거래관련세금), 인지세(Stamp duty: 유가증권거래), 은행이용세(Bank account debits tax), 부동산양도수속관련세금(conveyancing duty), 사업관련인지세(Business stamp duty: 대출계약, 할부구매계약, 월세계약, 리스, 양도증서, 수표, 약속어음 등)를 통·폐합함(안종석, 2012, p. 201)

204)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9-40

205)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13-15

- 권리의 창설(creation), 수여(grant), 이전(transfer), 양도(assignment) 또는 포기(surrender)
 - 금융 공급(financial supplies)
 - ㉠ 어떤 것을 해야 할 ㉡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하는 ㉢ 어떤 행위 또는 상황을 수인할 의무로 나아가거나 그 의무로부터 해방되는 것
 - 위 항목에서 둘 이상 것의 결합
- (세율)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재화 및 용역의 수출 및 국제운송 등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²⁰⁶⁾
- 영세율은 수출이나 국제운송 외 식품, 건강, 교육, 보육, 종교 등 관련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도 적용함²⁰⁷⁾

2) 금융·보험서비스 관련 GST 규정

- 호주는 법률에서 열거하는 특정 금융과 생명보험 등 금융 공급은 GST를 면세하고 일반보험(생명보험 외) 공급은 과세함²⁰⁸⁾

가) 금융 공급(financial supplies)

- 호주 GST는 금융 공급(financial supplies)과 관련 부수 용역을 면세함
- 금융 공급은 GST 사업자인 금융 공급의 제공자²⁰⁹⁾가 사업 목적으로 대가를 위해

206)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ision 38

207) 호주는 생필품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 금융 용역의 제공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 한해 면세를 적용함

208)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Division 40: 면세 사업자는 매입 시 납부한 GST를 환급 받거나 매입세액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입세액만 납부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호주는 면세를 input-taxed라고 표현함

209) 이자의 공급과 관련한 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또는 직접 발행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이자를 취득하는 회사를 금융 공급의 제공자(financial supply provider)라고 함(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6)

수행하는 이자의 취득(acquisition), 제공(provision), 처분(disposal) 등 이자의 공급(the supply of interest)을 의미함²¹⁰⁾

- 이자의 인수(acceptance) 및 수령(receipt) 역시 이자의 공급으로 봄²¹¹⁾

□ (이자와 관련한 금융 공급)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9(3)에서 면세인 이자와 관련한 금융 공급의 범위를 열거하는데²¹²⁾ 달리 면세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²¹³⁾

- 은행 업무 과정에서 호주 예금수취기관(Authorised deposit-taking institution, ADI)이 1969년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영위하거나 국영은행업(State banking business)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계좌
- 신용장을 포함한 부채, 신용 약정 또는 신용권
- 부동산이나 동산에 대한 담보 또는 저당(charge or mortgage)
- 1993년 퇴직연금산업(감독)법에 따른 퇴직연금펀드, 예금펀드, 통합 퇴직연금 신탁 또는 공공부문 연금 제도 또는 1997년 퇴직 저축 계좌법에 다른 퇴직 저축 계좌
- 종신연금(annuity) 또는 할당 연금(allocated pension)
- 보증(guarantee)
- 제3자와의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로부터 해당 인(person)을 보호하는 손해보전(idemnity)
- 재화와 관련하여 2012년 7월 1일 이전에 체결한 할부 구매 계약(hire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신용(credit)으로 해당 재화에 대한 신용을 별도 청구하고 재화의 수령인에게 공개한 경우
- 유가증권²¹⁴⁾

210)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5, Section 40-5.08, Section 40-5.09

211)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5

212)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9

213)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8(a)

214) 전부 또는 실질적으로 현물 대가를 받고 다른 참가자로부터 재화이나 용역을 얻을 수 있는 물물 교환 계획에 참여할 권리를 발행자에게 부여하는 경우는 제외함(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09(6))

- 2001년 회사법 제9조의 사채 정의 중 (a),(b),(c),(e),(f)항에 따른 사채(debenture)
- 사채로 볼 수 있는 개인 발행 문서
- 2001년 회사법 제9조 관리투자제도의 정의 중 (e),(i),(m)항에 따른 제도
- 파트너십 또는 신탁의 지분

- 파생상품 등
- 외국 지점의 비거주자 사용 계좌 및 외국연금기금²¹⁵⁾

□ (호주 ADI의 계좌 관련 예시)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11 규정은 면세 금융 공급의 역무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그중 은행업과 관련한 역무를 살펴 보면 <표 IV-1>와 같음

<표 IV-1> 호주 은행업 관련 GST 면세 금융 용역의 범위

항목	구분	항목	구분
1	계좌 보유자를 위한 수표, 직불카드, 예금 및 저축 계좌의 개설, 보관, 운영, 유지 및 폐쇄	11	당좌대일 편의시설의 무단 사용
2	계좌 보유자를 위한 현금 수집, 처리 및 분류	12	바우처의 보유 및 보관
3	ATM, 전자 및 전화 계좌 운영	13	계정 정보를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4	예금주를 위한 표준수표 및 예금장부 제공	14	계정 압류
5	직불카드 및 스마트카드 공급	15	연방, 주 등 수수료, 관세 및 세금의 회수
6	수표 현금화 및 지불 주문	16	계정에 대한 감사 확인
7	계좌 명세서 작성, 조정 및 교체	17	전자 자금 이체
8	부도 거래 및 수수료 미지급 통지	18	계좌 보유자를 위한 자금 이체
9	수표 지급 중지	19	계좌 보유자에게 지급
10	인가된 당좌대출 시설 운영	-	-

주: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9(3)에서 규정한 호주 ADI 금융 공급에 대한 예시임
 자료: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11; SCHEDULE 2 Examples of financial supply

215) 법인이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은행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외국에서 은행업을 수행하는 동안(1959년 은행법의 의미 내) 비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계좌 및 1997년 소득세법의 정의에 따른 외국연금기금을 의미함(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40.5.-9(3))

- (수수료 기반 금융 공급) 다음 금융 공급에 대해 수수료가 1천호주달러 이하인 경우 GST 면세함
 - 호주 ADI의 금융 용역 중 타기관 계좌 보유자를 위한 계좌 관련 서비스 또는 기타 서비스²¹⁶⁾
 - 인출, 예금, 전자이체, 계좌잔액 확인 등 ATM(automated teller machine) 서비스

- (면세 적용의 배제)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12 규정은 면세 적용을 배제하는 금융 공급을 열거하는데 <표 IV-2>와 같음
 - 본 규정에서 열거하는 대부분의 공급은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공급에 해당하며 주된 면세 금융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경우 주된 공급에 따라 면세를 적용함

<표 IV-2> GST 면세 금융 공급이 아닌 공급

항목	~의 공급, ~에 대한 이자의 공급, ~에 의한 이자의 공급	항목	~의 공급, ~에 대한 이자의 공급, ~에 의한 이자의 공급
1	계정과 관련하여 호주 ADI에 공급한 수표·입금 양식·장부	12	다른 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관리 (신탁 또는 퇴직연금, 연금, 종신연금 펀드에 대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및 행정 서비스 포함)
2	계정과 관련하여 호주 ADI가 특정 계정 소유자의 요구 사항에 맞게 특수 양식 또는 표준 양식을 오버프린팅하는 것	13	채권 추심 서비스
3	금융 공급과 관련한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14	팩토링 계약 또는 팩토링 계약과 동일한 효력의 계약에 의한 매출회계 서비스
4	지급 시스템(디지털 통화의 범위는 제외)	15	신탁 서비스
5	계정과 관련하여 호주 ADI가 제공하는 계정과 연계되지 않은 가치저장수단카드 (Stored value facility card)와 선불카드	16	통화, 디지털 통화, 문서 및 기타 관련 보관(custodian) 서비스

216) ADI에 계좌가 없는 자를 위해 다른 호주 ADI로 전자 이체 관련 수수료 또는 대출 신청 수수료 등이 있음

〈표 IV-2〉의 계속

항목	~의 공급, ~에 대한 이자의 공급, ~에 의한 이자의 공급	항목	~의 공급, ~에 대한 이자의 공급, ~에 의한 이자의 공급
6	다음 경우와 같은 리스(lease)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계약에 따른 재화 (a) 임차인은 재화에 대한 임대인의 권리를 취득할 의무나 선택권이 없다 (b) 임대인들은 그들의 권리를 임차인들에게 처분한다	17	호주 통화 또는 시장 가치가 법정 통화의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외국 통화, 또는 시장 가치가 법정 통화로 표시된 가치를 초과하는 두 종류의 통화를 사고 파는 계약
7	과세공급을 하거나 그 공급이 과세공급인 것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 권리 또는 의무,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담보 및 저당 제외)	18	제3자에게 상품을 처분할 때까지 전시 또는 시연 목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을 위한 약정
8	과세 공급을 하거나 공급이 과세 공급인 것을 취득하기 위한 옵션이나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 이행의 결과로 이루어진 공급(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담보 및 저당 포함)	19	2012년 7월 1일 이후 체결 할부구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9	유가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경우하거나 그 거래의 청산(clearance)과 결제를 위한 설비(facilities)	20	2012년 7월 1일 이후 체결 할부구매 계약에 따른 신용
10	생명보험을 제외한 보험업과 관련 재보험업	21	재화에 대한 보증
11	중개 서비스(broking services)	-	-

주: 주된 면세 금융 공급에 부수하여 위에서 열거하는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공급에 따라 면세를 적용함

자료: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12

□ 〈표 IV-2〉에서 열거하는 공급 중 면세 금융 공급이 아닌 과세 전문서비스(항목 3)와 지급시스템(항목 4)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함²¹⁷⁾

○ 항목 3 전문서비스

- 전문적인 실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이나 회계사의 자문, 세무 신고를 위한 조세 관련 자문
- 보험계리적 자문

217)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40-5.13

-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 용역 등

○ 항목 4 지급시스템

-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회비, 처리 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마케팅 수수료, 위험 관리 수수료, 다중통화 수수료 등을 부과하는 서비스
-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제삼자에 대한 관련 서비스
- 청구, 신용 및 직불카드 거래 관련 지급시스템의 한 참가자가 다른 참가자에게 수행하는 용역의 공급
- 즉시 인출 및 입금(direct credit and debit), 기타 차변 및 대변, 청구, 신용 및 직불 카드 거래, 수표, 전자자금이체, ATM, BPAY, 인터넷뱅킹, Bank@Post, SWIFT(세계은행간금융통신협회) 지불 전달 시스템, 승인 RTGS(real time gross settlement) 시스템, 호주 지급결제시스템(Austrclear)을 처리, 정산, 청산 및 전환하는 거래
- 시스템 운영자가 지급시스템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계정 데이터 처리 및 전자 지급서비스

나) 보험 공급

□ 호주는 생명보험은 GST 면세하고, 생명보험이 아닌 일반보험(general insurance)은 GST 과세함²¹⁸⁾

○ 재보험은 본래 보험 유형에 따라 GST 처리함

- 생명보험 관련 재보험은 면세이고 일반보험 관련 재보험은 과세로 처리함

□ (생명보험) 일반적으로 1995년 생명보험법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관련 재보험은 GST 면세 금융 공급으로 처리함

○ GST 면세 생명보험업 예시는 다음과 같음²¹⁹⁾

218)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GST and general insurance,"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4gst.pdf>, 검색일자: 2023. 2. 21.

219)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 2019) Section 40-5.11; Schedule 2—Examples of financial supply

- 사망·생명의 종료·지속에 따른 우발사고 발생 시 금전 지급을 정하는 보험계약
- 생명의 종료·지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급하는 보험계약
- 생명의 종료·지속에 따른 기간 동안 연금(annuity)을 지급하는 보험계약
- 생명의 지속과 관계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지급하는 보험계약
- 1995년 생명보험법 제9A조에 따른 지속 장애보험
- 1995년 생명보험법 제14조에 따른 투자계정계약 또는 투자연계계약을 구성하는 계약(보험계약 여부와 관계없음)

- (일반보험) 생명보험을 제외한 보험업과 관련 재보험은 GST 과세함²²⁰⁾
 - 일반보험 공급에 대한 GST 과세방식은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 사이의 마진(margin)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금흐름방식(cash flow method)에 기초함
- 다만 민영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여행보험, 국제운송재화 관련 보험은 영세율을 적용함²²¹⁾
- 보험 용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용역(insurance related service) 중 보험계리 용역 등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서비스는 GST 과세함²²²⁾

3) GST 매입세액 처리

- 재화 또는 용역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 취득이 과세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GST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금융 공급과 관련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없음²²³⁾

220)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 2019) Section 40-5.12, 13

22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38-355

222)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GST Regulations 2019) Section 40-5.13

223) 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11.15.: 다만 벌칙, 여행비용, 가족부양, 레크레이션 클럽 비용, 레저 시설 비용, 접대비, 재정적인 유니폼, 비공제 현물 혜택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과세 및 면세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할 수 없음(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69.5)

- 공제대상 매입세액이라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취득의 대가 전체를 제공하지 않거나 사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액은 감액조정함
- 그러나 (i) 과세 또는 영세율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융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 (ii) 특정 금융 공급과 관련한 취득이 있는 경우 금융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함
 - 금융 공급을 위해 취득한 금융 취득가액의 기준금액이 15만호주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할 수 있음(금융 취득 기준금액)
 - 특정 금융 공급을 위한 취득가액에 대해 경감매입세액 공제(reduced input tax credit)를 할 수 있음(경감매입세액공제)
- (금융 취득 기준금액) 금융 취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 공급과 관련한 사업목적의 금융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²²⁴⁾
 - 금융 취득은 금융 공급의 수행과 관련한 취득을 의미함²²⁵⁾
 - 차입(borrowing)으로 구성하는 금융 공급의 경우로서 면세 공급이 아닌 공급을 수행하는 경우는 금융 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함²²⁶⁾
 - 금융 취득 기준금액은 금융 공급의 수행을 위해 해당 월말로 종료하는 12개월 동안의 금융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액(총액)이 15만호주달러 또는 해당연도에 청구한 매입세액 공제액(총액)의 10%을 의미함²²⁷⁾
- (경감매입세액공제) 특정 종류의 취득으로 인한 매입세액은 금융 공급과 관련되어 있더라도 감액된 비율로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음²²⁸⁾

224) 호주 「부가가치세법」 Division 189

225) 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189-5; 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189-15

226) PHILIP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 259 (CCH Australia Ltd., 9th ed. 2008), at 255.

227) 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189-5

228) 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70-5; 취득이 면세 금융 공급과 과세 공급의 겸업 목적인 경우 금융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75%의 경감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과세공급의 경우 일반규칙을 적용함(호주 「부가가치세법」 Section 70-20)

- 특정 종류의 취득은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70-5.02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대부분 금융 기관이 아웃소싱한 서비스와 관련한 취득에 해당함 (<표 IV-3> 참조)²²⁹⁾
 - 경감매입세액공제는 금융 공급 관련 서비스의 내부수행과 외부수행 간 편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됨
- 적격 취득에 대해서는 75%의 경감공제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55%의 경감공제율을 적용함²³⁰⁾
 - 공인 신탁계획에 의한 취득 공급인 경우 55%의 경감공제율을 적용함
 - 기타 열거하는 특정 취득 공급에 대해 75%의 경감공제율을 적용함
- (보험금 간주매입세액 공제)²³¹⁾ 과세 보험 공급의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음(보험금 간주매입세액공제)
 -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기인하여 최종소비자인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 해당 보험금 지급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²³²⁾
 - 그리고 피보험자가 GST 등록 사업자로 당초 납입한 보험료 관련 GST 매입세액 일부만을 공제한 경우 보험사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으나 공제액은 감액조정함²³³⁾, ²³⁴⁾
 - 이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 청구 시 당초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GST 매입세액 공제 비율을 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함

229) PHILIP MCCOUAT, AUSTRALIAN MASTER GST GUIDE 259 (CCH Australia Ltd., 9th ed. 2008), at 257.

230)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70-5.3

23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10

232)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ection 78-15

233)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ubparagraph 78-10(2)(b)(ii)

234) 감액조정액=보험금×(1-매입세액공제율)× $\frac{1}{11}$ (호주 「부가가치세법」(GST Act 1999) Subsection 78-15(2))

〈표 IV-3〉 경감매입세역공제 관련 특정 취득

공급	역무
बैंक 및 현금 관리 서비스 거래	텔레뱅킹, 인터넷 बैं킹, Bank@Post 관련 시설의 사용을 포함하여 금융 공급 촉진자가 계좌 관련 거래를 개설, 발행, 폐쇄, 운영, 유지 또는 수행하는 서비스 기록 보관소 보관, 검색 및 파기 서비스, 명세서 처리 및 대량 매일 발송, 처리, 정산, 청산 및 전환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계정 관련 정보의 처리 및 조작 등 계정 공급자의 계정 정보와 관련한 서비스 처리 카드계좌 제공자의 거래카드 취득 계좌제공자의 통장, 입출금 서식, 수표 및 수표장 취득 신용 조회 및 신용 점수 평가 제공을 포함하여 계정 제공자를 위한 계정 신청과 관련된 서비스 처리
지급 및 펀드 이체 서비스	결제 시스템 운영자가 시스템 참가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결제 시스템 참가자가 시스템 접근과 관련하여 제삼자에게 부과하는 수수료, 지급 시스템 참가자들 사이에 부과하는 수수료와 관련한 공급 처리, 정산, 청산 및 전환의 거래 계정 데이터 처리, 전자지불서비스를 포함하여 결제 시스템 참가자가 시스템 액세스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증권거래 서비스 대출 서비스	금융 공급 촉진자 a financial supply facilitator가 주문 및 거래 실행, 거래 청산 및 결제, 권리 및 보너스 발행을 포함한 증권 발행 관리, 주식상장(floatations) 및 민영화 주문, 인수합병 주문, 인수 입찰 주문, 환어음 발행 및 현금화를 포함한 결제 수행, 제출, 인출 및 교환 통제를 포함한 기타 증권 거래, 인수 등을 포함한 증권 지분의 제공, 법정 취득 또는 처분의 주문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주식 발행의 할당, 배당금 지급, 주식발행 신청서 접수, 환매 또는 지분 상환, 증권 주문, 보너스 문제, 증권결제, 고객 계정 처리, 거래 처리 및 기록, 투자자 문의 처리 등을 포함한 증권 및 단위 발행인을 위한 관련 서비스 금융 공급 촉진자가 제공하는 대출 대행 서비스, 대출 편의 제공; provision of a loan facility, 모기지 증가, 신디케이트론 주문, 도입 및 증가 모기지 신용 및 부동산물권 보험 모기지 신용 재보험

〈표 IV-3〉의 계속

공급	역무
대출 서비스	<p>대출보장보험</p> <p>대출 개시 및 중개, 서류 준비를 포함한 대출 정산 및 해지, 대출 서류 등록, 신용 조회 평가 및 신용 점수 분석, 평가, 부동산 소유권 검색, 소유권 등록 및 인증, 성명 변경을 포함한 모기지 변경, 제목에 대한 경고 표시 및 제거 등과 같은 대출 신청, 관리 및 처리 서비스</p>
신용조합 서비스	<p>상환 처리, 명세서 준비, 대출 파일 기록 제출 및 요청 등과 같은 대출 관리 서비스</p>
채권추심 서비스	<p>2개 이상의 신용조합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법인체, 또는 해당 법인이 전체 지분을 소유한 법인을 통한 신용조합 공급</p> <p>부채 회수, 소송, 서류 제출, 금융 공급 촉진자가 사용자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회수를 관리 등과 같은 채권 추심 서비스</p>
자산기반 금융 서비스	<p>법정 할부구매 금융 공급 촉진자의 주선</p>
무역금융 서비스	<p>무역금융 거래 처리 및 기록과 무역금융 송금 서비스</p>
자본시장 및 금융 상품 서비스	<p>파생상품이나 외국 통화의 공급 또는 해당 통화를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 신용계약의 매도, 디지털 통화 공급 또는 디지털 통화 구매 또는 판매 계약 등을 금융 공급 촉진자가 주선</p> <p>파생상품 공급자, 외국 통화의 공급자 또는 해당 통화를 매매하기로 한 계약, 디지털 화폐 공급자, 또는 디지털 화폐 구매 또는 판매 계약 중 하나에 제공하는 거래의 처리, 계정 유지 및 보고서 생성 서비스</p>
펀드관리 서비스	<p>객의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신탁기금이나 퇴직연금을 위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신탁 또는 퇴직연금의 수탁인 역할, 단일 책임 주체, 자산배분 서비스,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기능 등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p> <p>회원, 고용주, 수탁자 기록 및 관련 회계, 신청, 기부금, 혜택 및 분배 처리, 자금과 신탁 간의 이체, 보고서, 명세서 및 양식의 작성 및 배포, 회원의 문의사항 및 불만사항 처리, 기록 보관소 보관, 검색 및 파기 서비스, 명세서 처리 및 대량 메일 발송, 세무 및 감사 서비스를 제외한 업계 규제 요건 준수, 생명 보험 증권에 따른 청구 처리 및 평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기능 등 투자 자금과 관련한 관리</p>

〈표 IV-3〉의 계속

공급	역무
보험 서비스	<p>일반보험 또는 생명보험 중개</p> <p>생명보험사에 제공하는 보험계약자 기록 및 관련 회계, 보험료 및 혜택 처리, 정책에 따라 청구 및 평가, 명세서 처리 및 대량 처리를 포함하여 보고서, 명세서 및 양식의 작성 및 배포, 보험계약자의 문의 및 불만사항 처리, 기록 보관소 보관, 검색 및 파기 서비스, 신청서 처리 및 평가, 세무 및 감사 서비스를 제외한 업계 규제 요건 준수, 재보험 요건 관리 등과 같은 행정관리서비스</p>
수수료 및 프랜차이즈 수수료	<p>금융공급축진자가 금융공급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공급</p> <p>금융 공급 축진자가 프랜차이즈에 제공하는 공급, 축진자가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p>
수탁자 및 보관 서비스	<p>(a) 호주 ADI 지점으로부터의 현금 인도 및 회수를 제외하고 자산의 구매, 판매 또는 양도 없이 현금의 양도, 금융공급 축진자에 의한 증권거래의 수행 및 결제, 소득 및 기타 지급금 징수, 이익과 권리의 등록, 대리 투표, 옵션 및 워런트 행사; 호주 ADI에 계좌 개설 및 유지, 금융 공급과 관련된 지정 서비스를 포함한 수탁자 및 보관 서비스(금전, 문서 및 기타 물건의 보관 제외)</p> <p>회계 기록의 유지, 과세 보고, 모니터링의 위임, 거래 실행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성과 분석, 위험 관리 보고와 같은 마스터 보관 서비스</p> <p>단일 책임 기관 서비스</p>
공인된 신탁제도에 공급	<p>공인된 신탁 계획에 의해 2012년 7월 1일 이후 취득 공급</p> <p>다만 토지에 대한 자유 보유 지분 판매, 계층 단위 판매 또는 장기 임대 부여 또는 판매를 통해 이루어진 상품 판매 또는 부동산 공급을 통한 공급, 특정 중개 서비스, 특정 펀드 관리 서비스, 특정 투자자금 관리 서비스, 특정 수탁자 및 보관 서비스, 특정 마스터 보관 서비스, 특정 모니터링 또는 보고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음</p>
모니터링 서비스	<p>2012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취득하고 2006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모니터링 및 보고 서비스(과세 및 감사 서비스 제외)</p>

자료: 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70-5.02

4)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 호주는 GST를 도입한 2000년 7월 1일부터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운용함
 - 의결권의 90% 이상을 소유한 둘 이상 법인이 GST 목적상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을 단일법인으로 취급하여 GST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연결부가가치세 과세제도를 운영함²³⁵⁾
 - 과세당국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²³⁶⁾

- 호주의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집단 내 모든 구성원에 한해 허용함²³⁷⁾
 - GST 그룹 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GST 등록 사업자여야 함
 - 90% 이상의 의결권을 소유한 기업집단의 구성원이어야 함
 - 그리고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회계기준(현금주의 또는 발생주의)과 과세기간이 동일하여야 함
 - 다른 연결그룹에 속하지 않을 것
 - Division 54에 따른 등록된 지점(GST branch)이 아닐 것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적용하면 연결그룹 대표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및 납부를 수행하고 연결그룹 구성원 간 내부거래는 GST 대상 공급 활동으로 처리하지 않음²³⁸⁾
 - 대표법인은 과세기간 동안 연결그룹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음²³⁹⁾

235) GST Act 1999 SECTION 48-1
 236) GST Act 1999 SECTION 48-71
 237) GST Act 1999 SECTION 48-10
 238) GST Act 1999 SECTION 48-40 (1)
 239) GST Act 1999 SECTION 48-45

- 연결그룹의 공동매입세액은 일반 원칙에 따라 공급 부분을 식별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각 부분에 대한 대가를 배분함
 - 배분은 상식 차원에서 공급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직접법 또는 간접법 등²⁴⁰⁾으로 대가를 배분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는 별도로 보관해야 함
- 연결그룹 구성원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부책임이 있음²⁴¹⁾
 - 그룹 대표는 일반적으로 GST 매출세액을 납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만 연결 그룹 구성원은 국세청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 공동 및 개별적인 책임을 부담함

나. 기타 간접세

- 해당 사항 없음

240) 직접법은 실제사용거리, 사용시간, 사용량, 사용공간, 직원 수와 같은 요소에 근거하여 계산하며 간접법은 투입 또는 산출에 근거한 방식 등이 있으며 국세청은 이외 기타 합리적인 방법을 인정함 (최정희, 2019, pp. 73~74)

241) 호주 국세청, "Indirect tax sharing agreement – reasonable allocation of indirect tax law liability," <https://www.ato.gov.au/Business/GST/In-detail/Managing-GST-in-your-business/GST-groups-and-branches/Indirect-tax-sharing-agreement---reasonable-allocation-of-indirect-tax-law-liability/>, 검색일자 : 2024. 2. 21.

2. 싱가포르

가. GST

1) GST 개요

- 싱가포르는 일반 소비세인 GST(Goods and Service Tax)를 1994년 4월 1일자로 최초 도입함²⁴²⁾

- (과세대상) GST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음
 - 사업자가 싱가포르에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재화의 수입
 -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용역의 수입)²⁴³⁾
 - 전체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과세 대상자가 공급받는 자의 경우에 한함
 - 국외 공급자가 싱가포르 국내 비등록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디지털 서비스와 비 디지털 서비스

- (세율) 일반적으로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 9%의 세율을 적용하고, 재화의 수출과 국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함
 - GST 세율은 최초 도입 당시 3%이었다가 2003년 4%, 2004년 5%, 2007년 7월 1일 7%, 2023년 8%, 2024년 9%로 인상함

242)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Goods and Services Tax," <https://www.mof.gov.sg/policies/taxes/goods-and-services-tax>, 검색일자: 2024. 2. 21.

243)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Goods and Services Tax," <https://www.mof.gov.sg/policies/taxes/goods-and-services-tax>, 검색일자: 2024. 2. 21.

2) 금융·보험서비스 관련 GST 규정

- 싱가포르의 법률에서 열거하는 특정 금융서비스와 생명보험 및 재보험 등에 대해 GST 면세하고 손해보험은 GST 과세함
 - 그러나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주선(arranging)·중개(broking)·인수(underwriting)·자문(advising) 등과 같이 수수료 기반 서비스는 GST 과세함²⁴⁴⁾
- GST 제21조 제3항에 따라 국제 용역(international service)인 금융·보험 서비스는 GST 영세율을 적용함²⁴⁵⁾
 - 재화의 수출 관련 또는 국외의 어느 한 장소에서 국외의 다른 장소로 재화의 이동에 관여하는 금융·보험서비스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가) 금융 서비스

- GST 법률에서 열거하는 다음 금융서비스는 GST 면세함^{246), 247)}
 - 은행 계좌: 은행 계정의 운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용역의 공급²⁴⁸⁾
 - 은행 계좌 개설, 계좌이체, 수표 발행 및 정산, ATM 관련 거래 등은 GST 면세함
 - 그러나 수표 특수 인쇄 및 골드뱅크(gold saving accounts)는 GST 과세함

244) IRAS, "Supplies Exempt from GST,"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

245) Article 21(3)(h) of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3

246) Part I of Fourth Schedule to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Act

247)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 금융·보험 서비스 외 GST 면세는 디지털 결제 토큰의 공급(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거용 부동산의 판매와 임대, 투자 귀금속(Investment Precious Metals)의 수입 및 국내 공급에 대해 GST 면세함; IBFD, "Singapore - Goods and Services Tax - Country Tax Guides - 8. Exemptions (Last Reviewed: 30 September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g_s_8.1.1.1.&refresh=1704695963463%23evat_sg_s_8.1.1.2., 검색일자: 2023. 1. 9.)

248) Paragraph 1(a)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 화폐교환(exchange of currency): 현물 또는 선물환 기준 통화의 교환, 통화 스왑 및 통화 옵션 계약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화폐 교환²⁴⁹⁾
 - 다만 수집·투자·화폐연구 목적으로서의 지폐 또는 동전의 공급은 제외함
- 인수 은행²⁵⁰⁾이 소매업체 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지급결제 서비스²⁵¹⁾
 - 예시로는 신용카드, 충전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제 카드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 공급, 판매자에게 안전한 결제방식의 공급, 시스템 사용 관련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기타 보조 서비스의 공급 등이 있음
- 어음·수표·신용장 등의 발행, 지급, 추심, 이전²⁵²⁾
 - 송금 및 보증(transfer and guarantee) 서비스, 상업·화물환신용장(commercial and documentary credits)의 두 가지 범주의 거래에 대해 GST 면세함
- 채무 증권의 발행, 할당, 소유권 이전, 인출, 인수 또는 보증²⁵³⁾
 - 채권, 사채, 예금 증서 및 기업 어음, 미수금 팩토링 및 대출의 이전 관련 거래에 대해 GST 면세함
- 지분증권 또는 파트너십 지분의 발행, 할당, 소유권 이전²⁵⁴⁾
- 대출, 선수금, 신용의 공급²⁵⁵⁾
 - 환어음 기타 수단의 팩토링(factoring), 포페이팅(forfaiting), 할인(discounting) 등 신용의 공급은 GST 면세함
 - 다만 대출 또는 신용의 공급 관련 주선 및 중개 서비스는 과세함
- 대출, 선수금, 신용의 공급을 위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또는 계약의 갱신 및 변경²⁵⁶⁾
 - 유사한 만기의 채무증권을 인수하거나 채무증권 또는 대출증서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옵션이 채무증권 보유자/대출자에게 제공될 때 해당 채무증권 또는

249) Paragraph 1(b)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0) 가맹점의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신용카드 및/또는 직불카드 결제를 처리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

251) Paragraph 1(c)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2) Paragraph 1(d)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3) Paragraph 1(e)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4) Paragraph 1(i)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5) Paragraph 1(g)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6) Paragraph 1(k)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대출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에 대해 GST 면세함

- 할부신용금융의 제공²⁵⁷⁾
 - 할부구매, 조건부 판매, 신용판매계약 등을 통해 재화 판매대금과 함께 이자와 유사한 별도 부과금을 부과하고 이를 표시한 경우 해당 할부신용금융의 공급은 GST 면세함
- 할부구매계약(hire-purchase agreement)에 따른 할부신용금융 공급의 이전 및 양도²⁵⁸⁾
 - 금융기관이 할부구매계약(본질적으로는 팩토링 약정) 기간 중에 약정에 따라 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다른 금융기관에 이전 및 양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할부구매계약의 이전 및 양도를 면세함
- 파생상품 관련 거래
 - 재화의 인도 또는 과세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급 또는 양도²⁵⁹⁾
 -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자재의 인도를 수반하지 않는 미할당 원자재(unallocated commodity)의 판매에 대한 계약의 공급 또는 양도²⁶⁰⁾
- 단위신탁 또는 사업신탁에 단위 소유권의 발행 또는 이전²⁶¹⁾
- 이슬람 금융 관련 금융 서비스²⁶²⁾

257) Paragraph 1(h)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8) Paragraph 1(i)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59) Paragraph 1(j)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0) Paragraph 1(n)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1) Paragraph 1(p)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2) Paragraph 1(r)~(u)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표 IV-4〉 싱가포르 GST 면세대상 금융서비스(금융기관)

구분	금융·보험 관련 업무
은행계좌	당좌, 예금, 저축 계좌의 운영
지급결제	은행권, 화폐, 동전 등의 교환, 대변 또는 차변의 계좌를 통한 화폐 교환
	신용카드, 충전카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결제카드를 통한 결제서비스
유가증권	어음·수표·신용장 등 소유권의 발행·지급·수집·이전 또는 신용장 발행의 통지
	채무증권의 발행, 할당, 소유권 이전, 인출, 인수 및 배서 지분증권의 발행, 할당 또는 소유권 이전
대출	대출, 선수금 또는 신용의 공급
	할부구매, 조건부 판매 또는 신용판매계약 관련 할부신용금융 편의(facility of instalment credit finance)의 공급
	할부구매계약 관련 할부신용금융 편의의 공급의 이전 또는 양도
파생상품	대출, 선수금 또는 신용의 공급에 대한 채무증권, 지분증권, 계약의 갱신 또는 변경
	파생상품의 공급 또는 양도(재화 또는 과세 용역의 공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매도자와 매수자 간 원자재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할당(unallocated) 원자재의 판매계약의 공급 또는 양도
신탁	단위신탁 또는 사업신탁에 따른 단위 소유권의 발행 또는 이전
이슬람 관련 금융	자금조달자가 효과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비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적격 이슬람 금융계약의 자금 조달의 공급
	이슬람 채무증권 계약에 따른 이슬람 채무증권의 소유권 발행 또는 이전
	자금조달자가 효과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슬람 채무증권 계약에 따른 자금 조달의 공급 적격 이슬람 중개계약에 따라 은행 간 자금조달의 공급

자료: Part I of Fourth Schedule to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Act(<https://sso.agc.gov.sg/Act/GSTA1993?ProvIds=Sc4-#Sc4->, 검색일자: 2024. 1. 9.)

□ 비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중에서 은행예금과 외환차손익은 GST를 면세함²⁶³⁾

- 은행 예금은 비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은행에 대한 대출로 처리하며, 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이자소득은 신고대상 GST 면세 공급으로 처리함

263)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Supplies Exempt from GST,"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 검색일자 : 2024. 2. 21.

- 비금융기관의 외화매출로 인한 외환차손익은 GST 면세 공급에 해당함
 - 한 과세기간 내 외환차손익 순액(절대값)이 신고대상 GST 면세 공급가액임

나) 보험 서비스

- GST 면세대상 보험서비스는 생명보험(life insurance),²⁶⁴⁾ 재보험,²⁶⁵⁾ 사회보장 제도(CPF)에 따른 보험과 연금²⁶⁶⁾이 있음²⁶⁷⁾
 - 보험법에 따른 생명보험의 공급 또는 소유권의 이전은 GST 면세 공급에 해당함²⁶⁸⁾
 - 개인생명보험에 대한 개별 특약(의료 또는 개인 상해 특약)은 본질적으로 생명보험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보고 GST 면세임
 - 그러나 단체생명보험증권에 대한 의료 또는 개인 상해 특약에 대한 보험료는 GST 과세함
 - 생명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상해보험이나 의료보험은 보험법에 따른 생명보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ST 과세임
 - 싱가포르 국민연금펀드(Central Provident Fund, CPF)가 공급하는 보험서비스는 GST 면세함
 - 재보험계약과 재보험에 대한 중개 서비스는 GST 면세함
- 손해보험(general insurance)서비스의 공급은 GST 과세함²⁶⁹⁾
 - 보험중개인(a insurance intermediary)이 보험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 GST 납세의무는 보험사에게 있음(3.5.1)

264) Paragraph 1(l)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5) Paragraph 1(q)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6) Paragraph 1(la)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7) Li Ming Tan, "Singapore - Goods and Services Tax," IBFD,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sg_s_8.1.1.1.&refresh=1704695963463%23evat_sg_s_8.1.1.2, 검색일자: 2024. 1. 9.

268) paragraph 1(l) of Part I of the Fourth Schedule to the GST Act

269) IRAS, "IRAS e-Tax Guide GST: Guide for the Insurance Industry(Fifth Edition)," p. 3,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taxguide_gst_guide-for-the-insurance-industry-\(fifth-edition\).pdf?sfvrsn=183c5b91_2](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taxguide_gst_guide-for-the-insurance-industry-(fifth-edition).pdf?sfvrsn=183c5b91_2), 검색일자: 2024. 1. 9.

- 주선(arranging)·중개(broking)·인수(underwriting)·자문(advising) 등과 같이 금융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는 수수료 기반 서비스는 GST 과세함²⁷⁰⁾
- 보험사는 대리인, 중개인, 금융 자문가 등 보험 중개자를 참여시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권유, 판매, 주선할 수 있는데 이러한 보험 중계(intermediaries) 서비스는 GST 과세임
- 그러나 재보험계약의 중개 서비스는 GST 면세임

〈표 IV-5〉 보험서비스 관련 싱가포르 GST 규정

구분	보험 유형 및 관련 의무
면세	생명보험 계약의 공급 또는 소유권 이전
	싱가포르 국민연금펀드(CPF)의 보험보장 또는 연금의 공급
	재보험계약의 공급 및 소유권 이전, 재보험계약의 중개
과세	손해보험 계약의 공급 또는 소유권 이전
	보험계약의 주선·중개·인수·자문 서비스

자료: Part I of Fourth Schedule to the Goods and Services Tax (GST) Act(<https://sso.agc.gov.sg/Act/GSTA1993?ProvIds=Sc4-#Sc4->, 검색일자: 2024. 1. 9.)

3) GST 매입세액 처리

- GST 등록 사업자는 과세 사업과 관련한 GST 매입세액을 GST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²⁷¹⁾
- 공제가 가능한 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과세 공급에 직접 귀속하는 매입세액과 과세 및 면세 공급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매입세액 중 과세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함²⁷²⁾

270) IRAS, "Supplies Exempt from GST,"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harging-gst-(output-tax)/when-is-gst-not-charged/supplies-exempt-from-gst), 검색일자: 2024. 1. 9.

271) Article 19, 20 of the GST Act

272) the GST(general) Reugation 29; 공통매입세액 중 과세 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 공급가액 대비 과세 공급가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함(GST regulation 29(2)(d)(i))

- 다만 면세 공급액이 (i) 월평균 4만싱가포르 달러 이하이고 (ii) 해당 기간 면세 공급액이 총 공급액(과세와 면세의 합계)의 5% 이하인 경우(최소허용기준)에는 면세 공급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²⁷³⁾
 - 최소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면세 공급에 직접 귀속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취급함
 - 다음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과세 공급에 직접 귀속하거나 공통매입세액으로 과세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도 공제할 수 없음(매입세액 불공제 항목)²⁷⁴⁾
 - 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 자동차 관련 비용,²⁷⁵⁾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클럽 가입비, 직원 의료비(법정 의료비 제외), 직원을 위한 의료 및 상해 보험료(법정 보험료 제외), 확률게임 관련 거래 등 지출
- 한편 싱가포르는 면세 금융·보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둔
- 비금융기관의 면세 금융 서비스 관련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3조 특례)
 - 은행업의 개산 매입세액 공제 특례(제30조 특례)
 - 보험업의 현금 보험금 간주매입세액 공제 특례(제41A조 특례)
- (제33조 특례)²⁷⁶⁾ 비금융기관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특정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직접 귀속하는 매입세액은 GST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허용함
- 비금융기관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GST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필

273) The GST(General) Regulation 제28조;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laiming-gst-\(input-tax\)/claiming-input-tax-incurred-to-make-exempt-supplies](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claiming-gst-(input-tax)/claiming-input-tax-incurred-to-make-exempt-supplies), 검색일자: 2024. 1. 9.

274) GST(General) Regulation 제26조와 제27조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을 의미함(<https://sso.agc.gov.sg/SL/GSTA1993-RG1?ProvlDs=P1V-#pr26->, 검색일자: 2024. 1. 3.)

275) 자동차보험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수리, 복원, 대체 관련 보험사의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허용함(IRAS, IRAS e-Tax Guide GST Guide on Insurance: Cash Payments and Input Tax on Motor Car Expenses(Third Edition), p. 1, 2021,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tax-guide-for-cash-payment-and-input-tax-on-motor-car-expenses\(third-edition\).pdf?sfvrsn=6825a137_4](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tax-guide-for-cash-payment-and-input-tax-on-motor-car-expenses(third-edition).pdf?sfvrsn=6825a137_4), 검색일자: 2024. 1. 9.)

276) The GST(General) Regulation 제33조

수적인 금융 서비스의 공급은 GST 과세 공급으로 간주하여 해당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직접 귀속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음

- 이때 금융 서비스의 범위는 GST(General) Regulation 제33조에서 규정하는 GST 면세 금융 서비스에 한함
 - 예금
 - 화폐 교환(수집, 투자, 화폐연구 등 지폐나 동전을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채무증권의 최초 발행자에 의한 채무증권의 소유권 발행·할당·이전
 - 지분증권의 최초 발행자에 의한 지분증권 소유권의 발행·할당·이전
 -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대출·선수금·신용
 - 매출채권의 양도
 - 모든 단위신탁 또는 사업신탁에 따른 단위 발행
 - 금리 위험, 통화 위험, 상품 가격 위험 등에 대한 특정 헤지
 - 채무증권 보유자가 채무증권 발행자에게 신용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의 수령, 매출채권에 대한 신용 제공과 관련한 이자의 수령
 - 이슬람 채무증권 계약에 따른 이슬람 채무증권의 소유권 발행 또는 양도
 - 자금조달자가 효과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이슬람 채무증권 계약에 따른 파이낸싱 공급
- 은행, 보험사, 금융회사 등 제34조에서 열거하는 금융기관은 제33조 특례매입세액 공제의 적용을 배제함²⁷⁷⁾
- 제33조 면세 공급 외 다른 금융 서비스의 공급이 있는 경우 그 금융 서비스의 공급액이 총 공급액(과세와 면세의 합계)의 5%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제33조 면세 공급에 직접 귀속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²⁷⁸⁾

277) The GST(General) Regulation 제34조: (i) 1970년 은행법에 따른 은행, 종합은행, 역외은행 (ii) 1970년 싱가포르 통화당국법 제28조 또는 2022년 금융서비스시장법에 따른 금융기관 (iii) 1966년 보험법에 등록된 생명보험업, 일반재보험업, 생명재보험업, 재보험중개업을 영위하는 회사 또는 단체 (iv) 1967년 금융회사법에 따른 금융회사 (v) 2008년 대금업자법에 따른 대금업자 등 (vi) 2019년 결제서비스법에 따라 국경 간 송금업 또는 환전업을 영위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자 (vii) 2015년 전당포법에 따른 전당포 (viii) 팩토링(debt factor) (ix) 신용카드, 결제카드 또는 기타 결제카드 회사 (x) 단위신탁(다만 리츠 또는 리츠의 특수목적기구, 사업신탁 또는 그 특수목적기구는 제외) (xi) 디지털 결제 토큰 거래자

- (제30조 특례) 싱가포르는 매입세액 공제액 산정의 간소화를 위해 개산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허용함²⁷⁹⁾
- 겸업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매입세액에 대해 과세나 면세의 구분이나 공통 매입세액의 배분 없이 개산 공제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적용할 수 있음
 - 개산 매입세액 공제율은 은행 등록허가 유형에 따라 72~94%(2023년 기준)임²⁸⁰⁾
- (제41A조 특례) 손해보험의 현금 보험금(cash payment) 간주매입세액 공제²⁸¹⁾
- GST 과세 보험서비스의 부가가치 산정을 위해 보험사는 현금 보험금에 대해 간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현금 보험금의 간주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i) 200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한 보험보장임
 - (ii) 보험증권에서 약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한 현금 보험금을 지급함²⁸²⁾
 - (iii) 보험계약자가 GST 비사업자이거나 GST등록 자영업자인 경우로 사적 사용 목적으로 보험계약의 보험료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함
 - (iv) 보험증권의 보험료는 9%의 세율 적용함²⁸³⁾

278) The GST(General) Regulation 제35조

279) 개산 매입세액 공제율제도는 산출물(output)을 위해 투입한 비용 및 지출 관련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 목적으로 면세, 과세(또는 영세율) 공급의 구분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간소화된 세무실무가 가능하고 사업에 투입하는 비용이나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의 누적효과를 줄이고 금융 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평가된 바 있음(Glenn P. Jenkins and Rup Khadka(1998), pp. 35~47). 2024년 현재 싱가포르 과세당국은 2025년 1월까지 개산 매입세액 공제율 제도의 폐지 또는 축소를 고려하고 있음

280) 도입 당시(1997년) 개산 공제율의 범위는 58%~98%임(Glenn P. Jenkins and Rup Khadka (1998), pp. 35~47.); 개산 매입세액 공제율은 싱가포르통화청이 작성한 통계를 기초하여 매년 조정하며 통계작성과정과 원자료는 공개하지 않음(오윤, 2010, p. 72)

281) IRAS, "IRAS e-Tax Guide GST Guide on Insurance: Cash Payments and Input Tax on Motor Car Expenses(Third Edition)," pp. 1~5, 2021,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tax-guide-for-cash-payment-and-input-tax-on-motor-car-expenses\(third-edition\).pdf?sfvrsn=6825a137_4](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uploadedfiles/pdf/e-tax-guide-for-cash-payment-and-input-tax-on-motor-car-expenses(third-edition).pdf?sfvrsn=6825a137_4), 검색일자: 2024. 1. 9.; The GST(general) regulation 41A

282) 측량사, 조정사, 조사원 및 기타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와 같은 보험회사와 제삼자 공급업체가 계약한 별도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는 포함하지 않음

283) 영세율 또는 면세 적용하여 보험료에 대한 매출 GST 납부액이 없는 경우, 해당 보험증권에 따라 지급한 현금 보험금에 대한 의제 매입세액은 허용하지 않음; 9%의 세율을 적용하는 보험에는 자동차

- (v) 현금 보험금 관련 자료²⁸⁴⁾의 보관이 필요함
-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 의제매입세액=GST 세율/(100%+GST세율)×현금 보험금 지급액

4)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 싱가포르는 1993년 GST 도입 당시 그룹 GST 등록 제도도 함께 도입함
 - 모회사와 자회사가 GST 목적상 기업집단을 형성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을 단일 법인으로 취급하는 그룹 GST등록 제도(Group registration)를 운용함
 - 그룹 GST 등록제도의 적용은 과세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하며, 과세당국은 세수 보호 목적으로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²⁸⁵⁾
 - 그룹 GST 등록제도의 적용에 대한 별도의 업종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싱가포르 그룹 GST 등록제도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집단 내 모회사와 자회사에게 한해 허용함
 - GST 그룹 내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GST 등록 사업자여야 함²⁸⁶⁾

보험, 개인상해보험(personal accident insurance), 건강 및 의료보험,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Workmen's compensation), 화재 및 재산 보험, 공중책임보험(Public liability insurance)이 있고 면세 또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보험은 종신보험(whole life), 연금보험(endowment plans), 재보험 계약, 선박보험(Marine Hull)이 있음

284) 보험료에 부과한 GST를 표시한 세금계산서, 2007년 1월 1일 이후 보험보장을 표시한 보험증권, GST 규정 26 및 27에 따라 보험료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GST 등록 사업자를 표시한 신고서 등 보험계약 약정에 따른 현금 보험금 지급 및 적용 요건 충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관하여야 함

285) 1993년 11월 26일자 시행한 GST 법령(<https://sso.agc.gov.sg/Act/GSTA1993/Historical/19931126?DocDate=19940315&ValidD>)에 그룹 GST 등록제도를 규정함;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IRAS e-Tax Guide GST: General Guide On Group Registration (Fifth Edition)," https://www.iras.gov.sg/media/docs/default-source/e-tax/etaxguide_gst_general-guide-on-group-registration.pdf?sfvrsn=462c6e25_12, p. 4

286) 싱가포르는 과세대상 공급 100만싱가포르달러) 미달하거나 영세율을 대상하는 면세대상 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의무를 면제함(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3 First Schedule.; 싱가포르 국세청, "Factors to Consider Before Registering Voluntarily for GST,"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factors-to-consider-before-registering-voluntarily-for-gst](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factors-to-consider-before-registering-voluntarily-for-gst), 검색일자: 2023. 1. 9.)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
 - (i) 사업자는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싱가포르 내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²⁸⁷⁾
 - (ii) 연간 매출액은 최소 10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이어야 함(매출요건)
 - (iii) 사업자 발행주식은 싱가포르 증권거래소 또는 국외 증권거래소에 상장함(상장요건)
 - (iv) 위 (ii) 또는 (iii)를 충족하는 법인의 자회사일 것(적격 자회사 요건)
 - (v) 위 (ii) 또는 (iii)를 충족하는 법인(벤처캐피털 투자사업의 일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음(적격 벤처캐피털 투자 요건)
 - 지명 대표 법인은 싱가포르 거주자 또는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함
 - GST 그룹의 각 구성원은 다음 지배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²⁸⁸⁾
 - 그룹 내 한 구성원이 개개의 다른 구성원을 지배함
 - 구성원이 아닌 자(개인 또는 법인 모두)가 GST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을 지배함
 - 파트너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둘 이상 개인(구성원이 아닌)이 GST 그룹 내 모든 구성원을 지배함
 - 지배(control)는 싱가포르 회사법 제5조의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i)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의 이사회 구성을 지배 (ii)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의 의결권 과반수를 초과하여 지배 (iii) 지주회사가 다른 법인의 발행주식(우선주 제외) 과반수를 초과하여 보유할 때 지주회사-자회사 관계가 성립함
- 그룹 GST 등록 시 대표 법인(representative member)이 GST 그룹 내 GST 사업자 모두의 GST 납세의무를 이행함

287) 싱가포르 비거주자 또는 사업장이 없는 법인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그룹 GST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외국 구성원과 국내 대표 법인은 최소한 매출요건, 상장요건, 적격 자회사 요건, 적격 벤처캐피털 투자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함(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registration,"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plying-for-special-gst-registration-\(group-registration-and-divisional-registration\)/group-registration](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plying-for-special-gst-registration-(group-registration-and-divisional-registration)/group-registration), 검색일자: 2024. 1. 9.)

288) Goods and Services Tax (General) Regulations §4(3); Companies ACT 1967 §5

- 그룹 GST 등록이 승인되면 새로운 GST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며, 대표 법인은 GST 그룹 전체를 총괄한 단일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함
- GST 목적상 GST 그룹 내에서 이루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GST의 적용을 배제함²⁸⁹⁾
 -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 GST 그룹 내 국내 사업자가 동일한 GST 그룹의 국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이 대리납부(reverse charge) 대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그룹 GST제도하에서는 GST 매입세액공제 규정은 그룹 단위로 적용함
 - 그룹 내 구성원 중 하나가 GST 면세 공급을 하는 경우, 그룹 전체에 대해 부분 매입세액공제(partial exemption rule)를 적용함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배제 여부를 결정하는 최소허용기준을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함
 - 과세당국은 세수보호 일환으로 GST 그룹의 매입세액 공제액을 감액조정하거나 불공제할 수 있음²⁹⁰⁾

나. 기타 간접세

- 해당사항 없음

289)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Group registration," [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applying-for-special-gst-registration-\(group-registration-and-divisional-registration\)/group-registration](https://www.iras.gov.sg/taxes/goods-services-tax-(gst)/gst-registration-deregistration/applying-for-special-gst-registration-(group-registration-and-divisional-registration)/group-registration), 검색일자: 2024. 1. 9.

290) Goods and Services Tax (General) Regulations §5(1)

3. 프랑스

가. 부가가치세

1) 개요

- 프랑스는 1954년부터 전단계 세액공제 방식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함
- 부가가치세는 국내 재화 또는 용역의 유상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하며,²⁹¹⁾ 독립적인 지위를 갖추어 경제적인 사업 활동을 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함²⁹²⁾
 - 다만 EU 회원국(역내)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것은 재화의 수입이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며, 이와 상응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됨
-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0%이나²⁹³⁾ 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더 낮은 세율(10%, 5.5%, 2.1%)을 적용하며,²⁹⁴⁾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²⁹⁵⁾
 - 난방용 목재, 미가공 관상용 원예품 및 화훼재배품, 유기농 제품의 라벨링 생산·관리 및 관련 제품, 사회보장보험에 의해 환급되지 않는 의약품, 여객운송 용역 등에 대하여는 10% 세율을 적용함²⁹⁶⁾
 - 기초생활 식료품²⁹⁷⁾ 및 농산품,²⁹⁸⁾ 위생용품, 장애인용 의료장비, 도서, 전기 및

291) 「CGI」 제256조 제1항; 안창남·손승연(2019), pp. 33~41.

292) 「CGI」 제256A조; 안창남·손승연(2019), p. 23

293) 「CGI」 Article 278

294) 「CGI」 Article 278-0 bis~281 octies; 안창남·손승연(2019), pp. 53~54; 프랑스 행정부, “Application des différents taux de TVA,”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3567>, 검색일자: 2024. 1. 22.

295) 우리나라는 세율을 0%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함(「CGI」 제271조 V항)

296) 「CGI」 제278a조; 제278c조; 제279조

297) 제과제품, 초콜릿·코코아 및 이를 함유한 모든 복합제품(단 가정용 밀크 초콜릿, 초콜릿 캔디, 코코아콩, 코코아 버터는 5.5% 세율 적용), 마가린 및 식물성지방, 캐비어, 주류 등은 감면세율 대상에서 제외함

열 공급, 양로원 및 장애인 시설, 영화·공연 등의 입장권, 예술품 수입 또는 EU 역내 취득 등에 대하여는 5.5%세율을 적용함²⁹⁹⁾

- 특정 언론 간행물, 공영방송(TV수신료), 면세사업자에 대한 도축용 동물 판매, 사회보장보험에 의해 환급되는 의약품 및 특정 의약품(혈액, 연구목적 기기 등) 등에 대하여는 2.1% 세율을 적용함³⁰⁰⁾
- 재화의 수출, 국제 항공·해상운송 용역, EU역내 재화의 공급³⁰¹⁾ 등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함³⁰²⁾

□ 프랑스는 은행 및 금융 용역 및 공익목적의 용역이나 의료·교육 용역, 부동산 임대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³⁰³⁾

2)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프랑스의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 135조에 규정된 것과 유사하며,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7조 제1항 (a)호에 따라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opt to tax)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프랑스는 부가가치세 누적효과의 경감 및 급여세(Taxe sur les Salaries; payroll tax)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9년부터 일부 면세 금융 용역에 대하여 과세전환 할 수 있도록 허용함³⁰⁴⁾

298) 식품이나 농업생산에 사용되지 않는 미가공 농·수산물은 표준세율(20%)을 적용함

299) 「CGI」 Article 278-0 bis

300) 「CGI」 Article 281 quarter, sexies, octies

301) 프랑스 납세의무자가 EU역내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것은 수출 거래가 아니라 프랑스 내의 재화 공급으로 봄(「CGI」 제256조 제3항)

302) 「CGI」 제262조, 제262-00 bis

303) BOFIP, “TVA - Champ d'application et territorialité - Opérations exonérées en régime intérieur,” <https://bofip.impots.gouv.fr/bofip/1104-PGP.html/identifiant=BOI-TVA-CHAMP-30-10-20190102>; 검색일자: 2024. 1. 26.; 「CGI」 Article 261, 261C, 261D

304) 「CGI」 Article 260B; BOFIP, “TVA - Régimes sectoriels -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 Champ d'application - Opérations imposables sur op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1834-PGP.html/identifiant=BOI-TVA-SECT-50-10-30-20200506>, 검색일자: 2024. 1. 23.; 홍범교·김민경·정훈(2014), p. 74

- 기존에는 모든 거래에 일괄적으로만 과세전환이 가능하였으나, 2022년 개정으로 거래단위별(an operation-by-operation basis) 과세전환이 허용됨³⁰⁵⁾

가) 금융 용역

- (면세) 프랑스는 「일반세법(CGI)」에서 열거하는 다음의 은행 및 금융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³⁰⁶⁾
 - 대출 및 신용공여 관련 협상, 신용공여자의 신용관리, 「통화금융법(Code Monétaire et Financier; CoMoFi)」에 따른 증권대차거래,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업무
 - 중개기관이 수령하는 거래 수수료는 제외함
 - 신용 보증거래, 기타 유가증권 거래 및 신용공여자의 신용보증관리 업무
 - 보증, 배서, 어음 및 신용장 및 이와 관련하여 받는 모든 수수료, 보증계약 관리 수수료 등이 포함되며,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수료는 제외함
 - 예금 및 당좌예금, 지급, 이체, 채권, 수표 및 기타 유통증권 등 관련 거래
 - 다만 채권추심(debt collection)은 제외함
 - 과세사업에 부수된 거래로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³⁰⁷⁾
 - 법적 통화로 사용되는 화폐, 주화 등 관련 거래

305) Bakermckenzie, "Europe: VAT - Option to tax in the financial world,"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bm/tax/europe-vat-option-to-tax-in-the-financial-world>, 검색일자: 2024. 1. 23.

306) 「CGI」 Article 261C 1°; BOFIP, "TVA - Régimes sectoriels -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 Champ d'application - Opérations exonérée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839-PGP.html/identifiant=BOI-TVA-SECT-50-10-10-20230823>, 검색일자: 2024. 1. 23.

307) 과세사업에 부수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과세 처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환자가 의사에게 용역 대가를 지불하기 위한 지급결제 서비스(은행계좌로 대금을 이체하기 위해 은행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포함)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고(CJEU, 28 october 2010 판결: C-175/09, AXA UK plc, ECLI:EU:C:2010:646.), 게임 배팅의 주최자가 소매업체를 통하여 주최자를 대신하여 지분을 모으고 당첨금을 지불하도록 참여시키는 경우, 소매업체가 주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CJEU, May 14 2008 판결: C-231/07 및 C-232/07, Tiercé Ladbroke et Derby, ECLI:EU:C:2008:275)

- 수집품으로서의 화폐, 주화 등은 제외함
 - 주식, 회사 및 협회 등의 지분, 사채 및 기타 증권 등 관련 거래
 - 주식 등 거래 관련 수수료, 유가증권 등 매매이익, 선물금융상품 운용 관련 수수료 등이 포함됨
 - 증권 등의 보관·관리 업무 및 부동산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과 관련된 증권 거래는 제외함
 - 양도성 유가증권 및 대체투자펀드,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에 대한 집합투자회사의 관리 업무³⁰⁸⁾
 - 여신기관, 투자업, 환전업, 어음할인업(escompteur) 및 중개인 또는 이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자 등에 의한 금 투자 관련 금융 용역
 - 단 비산업용 목적의 금(other than industrial-use gold)은 면세 범위에서 제외함
 - 지급결제 또는 신용카드발급 수수료
 - 단 지급결제 시스템 등 운영 관련 용역(기계 임대 또는 판매)은 과세함
 - 수입인지 및 우표³⁰⁹⁾
- (과세전환) 금융기관, 투자회사, 환전업자, 어음할인업자, 중개업자와 은행 및 금융 용역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³¹⁰⁾는 면세 금융 용역에 대하여 과세전환 할 수 있음³¹¹⁾
- 단 비정기적·일시적으로 은행 및 금융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과세전환을 적용할 수 없음
 - 과세전환은 거래별로 적용할 수 있으며, 과세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일반 원칙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³¹²⁾

308) Directive 2009/65/EC 제1조 제2항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 열거된 사업을 말함

309) 「CGI」 Article 261C 3°

310) 「CGI」 Annexe III, Article 70 sexies

311) 「CGI」 Article 260B

312) IBFD, “France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8. Exemptions (Last Reviewed: 15 August 2023).”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fr_s_8.%23evat_fr_s_8.1.1.2., 검색일자: 2024. 1. 29.

- 과세전환을 적용한 해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취소할 수 있으며, 과세전환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5년이 되는 해의 10월 31일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함³¹³⁾
- 다음과 같은 금융 용역은 일반적으로 과세전환이 가능하다고 봄³¹⁴⁾
 - 신용 거래 중 이자(이자에 준하는 수수료 포함) 이외의 수익
 - 상업어음 거래(할인수수료, 연장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수수료)
 - 은행계좌 및 수표거래(계좌 유지 및 이전, 수표, 송금 관련 수수료 등)
 - 증권거래(증권 거래 및 매매, 청약·투자수수료)
 - 양도성 유가증권, 특정 대체 투자 펀드 및 채권형 뮤추얼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관리 업무
 - 음식점 쿠폰 발행, 판매수수료
 - 팩토링 운영 및 거래 관련 수수료
 - 선물금융상품 거래 관련 등록 수수료, 거래 수수료
- 그러나 다음과 같이 특정금융기관 간 거래, 이자(이자에 준하는 수수료 포함) 기반의 금융 용역거래, 특정 채권이나 주식 거래, 법적통화·외환거래 등에 대하여는 과세전환이 불가능함³¹⁵⁾
 - 특정 금융기관 상호간 이루어지는 거래

313) BOFIP, "TVA - Régimes sectoriels -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 Champ d'application - Opérations imposables sur option - Modalités d'exercice, de fonctionnement et de révocation de de l'op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7181-PGP.html/identifiant=BOI-TVA-SECT-50-10-30-20-20220622>, 검색일자: 2024. 1. 23.

314) BOPIF, "TVA - Régimes sectoriels -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 Champ d'application - Opérations imposables sur option - Opérations pouvant faire l'objet de l'option - I. Opérations pouvant faire l'objet de l'op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7180-PGP.html/identifiant=BOI-TVA-SECT-50-10-30-10-20220622>, 검색일자: 2024. 1. 24.

315) 「CGI」 Article 260C: BOPIF, "TVA - Régimes sectoriels -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 Champ d'application - Opérations imposables sur option - Opérations pouvant faire l'objet de l'option - II. Opérations ne pouvant faire l'objet de l'op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7180-PGP.html/identifiant=BOI-TVA-SECT-50-10-30-10-20220622#Operations_ne_pouvant_faire_11, 검색일자: 2024. 1. 24.

- 저축은행(Caisses d'Épargne)그룹 및 일반은행(Banques Populaires)그룹의 중앙기관과의 거래 또는 중앙기관과 그룹 내 계열사 간 거래
 - 프랑스 은행협동조합(crédit mutuel) 회원 간 거래
 - 프랑스 농업협동조합(Crédit Agricole)³¹⁶⁾ 회원 간 거래
 - 이자기반의 금융 용역 거래
 - 「통화금융법」에 따른 금융증권 대출 관련 이자, 할증수수료, 증권대여보수 및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연금파생이익
 - 이자 및 할부수수료 등과 유사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익(예를 들어 초과인출 수수료, 어음·수표 보증수수료, 신용·대출 개설 수수료, 신용보증·채무보증 수수료, 채권발행 또는 자본납입 관련 보증수수료 등³¹⁷⁾)
 - 양도성 유가증권 및 양도성 채무증권의 양도
 - 채무증권 투자에 특화되어 있는 특정 투자기업 및 투자기구³¹⁸⁾의 주식 발행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금액 또는 채권양도 및 관리에 대한 보수(수수료 등)
 - 채권·주식 발행 및 배정 수수료
 - 재무부가 프랑스 국립은행에 지급하는 금전
 - 외환어음할인, 해외채권유치(MCNE), EU 내 공급 또는 해외수출 관련 금융 거래³¹⁹⁾
 - 법적 통화로 사용되는 화폐, 주화 등 관련 거래(수집용 화폐 등 제외)
 - 여신기관, 투자업, 환전업, 채권할인판매업(escompteur), 중개인 또는 이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자 등에 의한 금 투자 관련 금융 용역
- (과세) 다음의 은행 및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³²⁰⁾
- 신용보증공여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공되는 대출 또는 신용·보증 관리 업무

316) 「통화금융법」 제L.512-21조에 규정하는 농업협동조합으로, 농촌 및 농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의 주요 금융기관 그룹사 중 하나임

317) 「CGI」 부록 IV 제23조O

318) Sociétés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SICAV); 우리나라의 투자신탁회사와 유사한 기구

319) 「CGI」 부록 IV 제23조P

320) BOFIP, "TVA - Régimes sectoriels -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 Champ d'application - Opérations imposables de plein droit," <https://bofip.impots.gouv.fr/bofip/1842-PGP.html/identifiant=BOI-TVA-SECT-50-10-20-20120912>, 검색일자: 2024. 1. 23.

- 유가증권 보관·관리 용역(예: 보관·관리수수료, 이자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 수집목적의 화폐, 주화 등 관련 거래
- 금괴, 골드바 관련 거래(금융기관 등에 대한 인도는 제외³²¹⁾) 및 공개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 관련 업무
- 면세 금융 용역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업무(예: 금융 자문 또는 연구 관련 수수료, 상업 정보 수수료 등)
-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할 수 있으나 증권 및 현금 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기타 거래
 - 채권추심업무(Recouvrement de créances), 임대차 거래(Opérations de crédit-bail), 금고임대(Location de coffres-forts)
 - 장비임대, 문서 인쇄 및 판매, 특정 IT 용역, 이메일 서비스, 법률·세무 상담 수수료, 지불시스템 작동을 위한 장비의 임대 또는 판매 등
- 전문 연금제도의 금융 자산관리 및 연·기금 관리 서비스³²²⁾

〈표 IV-6〉 프랑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규정

면세	과세 ¹⁾	과세전환 대상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신용공여 관련 협상, 신용공여자의 신용관리, 「통화금융법」에 따른 증권대차거래, 환매조건부매매계약 업무 • 신용 보증거래, 기타 유가증권 거래 및 신용공여자의 신용보증관리 업무(중개수수료 제외) • 예금 및 당좌예금, 지급, 이체, 채권, 수표 및 기타 유통증권 등 관련 거래(채권추심제외) • 법적 통화로 사용되는 화폐, 주화 등 관련 거래(수집용 화폐 등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공여자가 아닌 자에 의해 제공되는 대출 또는 신용·보증 관리 업무 • 유가증권 보관·관리 용역(보관·관리수수료, 이자상환수수료, 환매수수료 등) • 수집용 화폐, 주화 등 관련 거래 • 금괴, 골드바 관련 거래(금융기관 등에 대한 인도는 제외) 및 공개금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인 관련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거래 중 이자(이자에 준하는 수수료 포함) 이외의 수익 • 상업어음 거래(할인수수료, 연장수수료 및 이와 유사한 수수료) • 예금, 당좌계좌, 지급, 이체, 채권, 수표 및 기타 유통증권 등 관련 거래 • 증권거래(증권 거래 및 매매, 청약·투자수수료) • 양도성 유가증권, 특정 대체투자 펀드 및 채권형 뮤추얼펀드 등 집합투자기구 관리 업무

321) CGI 제262조 제2항 12°

322) CJEU, 2020. 10. 8. C-235/19, United Biscuits

〈표 IV-6〉의 계속

면세	과세 ¹⁾	과세전환 대상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 회사 및 협회 등의 지분, 사채 및 기타 증권 등 관련 거래(유가증권, 선물 거래 포함) - 보관·관리 업무 제외 • 양도성 유가증권 및 대체투자 펀드, 이와 유사한 집합투자에 대한 집합투자회사의 관리 업무 • 여신기관, 투자업, 환전업, 어음할인업(escompteur) 및 증권개인 또는 이를 주요 활동으로 하는 자 등에 의한 금 투자 관련 금융 용역(비산업용 금 제외) • 지급결제 또는 신용카드발급 수수료 • 수입인지 및 우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 금융 용역으로 열거되지 않은 기타 업무(예: 금융 자문 또는 연구 관련 수수료, 상업 정보 수수료 등) • 전문 연금제도의 금융 자산관리 및 연·기금 관리 서비스 • 증권 및 현금 거래와 관련되지 않는 기타 거래 - 임대차거래, 금고임대, 채권추심 업무, 장비임대, 문서인쇄 및 판매, 특정 IT 용역, 이메일 서비스, 법률·세무상담 수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점 쿠폰 발행, 판매수수료 • 팩토링 운영 및 거래 관련 수수료 • 선물시장 거래 관련 등록 및 거래 수수료

주: 1) 프랑스는 과세대상 및 과세전환대상 금융 용역을 법령에서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며, 과세되는 금융 용역을 예시적으로 작성한 것임. 기본적으로 면세 금융 용역으로 열거되지 않은 역무는 과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나) 보험 용역³²³⁾

□ 프랑스는 다음의 보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³²⁴⁾

- 보험 및 재보험 거래
- 위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보험중개기관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323) BOPIF, "IV. Opérations d'assurance et de réassurance et prestations de services afférentes à ces opérations effectuées par les courtiers et intermédiaires d'assurance," https://bofip.impots.gouv.fr/bofip/823-PGP.html/identifiant%3DBOI-TVA-CHAMP-30-10-60-10-20220427#Operations_dassurance_et_de_13, 검색일자: 2024. 1. 24.

324) 「CGI」 Article 261C 2°

- (보험 및 재보험 거래) 보험사가 보험료를 받고 특정 위험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와의 합의된 보상을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 위험에 관한 계약이 존재하는 보험 또는 재보험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함
- 보험 또는 재보험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제공된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험사 및 재보험사가 위험을 부담하는 계약거래가 있어야 함
 - 따라서 회사, 보험회사, 상호보험사 및 기타보험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제3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보험 및 재보험 거래의 경우에도 보험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인 경우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부동산 임대회사가 임대 용역을 제공하면서 임대 부동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임차인에게 보험료를 동일한 금액으로 재청구하는 경우 보험료 재청구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봄³²⁵⁾
 - 즉 임대 용역의 제공과 보험료 재청구 거래를 독립적인 거래로 보며,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보험료 재청구 거래에 대하여는 면세됨
- (보험중개기관 등³²⁶⁾이 제공하는 보험거래 관련 용역) 보험중개기관 등이 보험 및 재보험의 운영에 기여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범위는 매우 포괄적임
- 보험계약 발행, 기존 계약에 신규 수익자의 가입, 보험료 청구 및 수금, 보험증서의 관리 및 해지, 손해처리 및 평가, 보험금 지급 등이 포함됨
 - 다만 이러한 용역이 자격이 있는 보험중개기관 등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대표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포함됨
 - 보험법에 따라 단체보험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손실을 관리하는 협회

325) CJUE, 2013. 1. 17. 판결; 사례 C-224/11, BGZ Leasing sp. z o.o., ECLI:EU:C:2013:15; 유럽 연합법원(CURIA), “ECLI:EU:C:2013:15,” <https://curia.europa.eu/juris/document/document.jsf?text=&docid=132522&pageIndex=0&doclang=fr&mode=lst&dir=&occ=first&part=1&cid=484535>, 검색일자: 2024. 1. 25.

326) 프랑스 일반세법상 언급된 보험중개기관에는 보험중개인인 “Courtiers”과 보험중개업보다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중개업자로서 “Intermédiaires d'assurances”가 있음

- 보험법에 따른 단체보험계약 체결에 개입하는 신용기관 및 금융회사
 - 보험회사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회사의 포트폴리오 등을 관리하는 사회공제조합법(code de la mutualité)에 따른 회사
- 보험중개기관 등의 자격은 형식적 또는 법적 자격이 아니라 실제 수행하는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유럽연합법원 판례에 따르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³²⁷⁾
- 보험자 및 피보험자와 관련이 있어야 함
 - 피보험자와의 간접적 관련성도 인정하므로 여러 중개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중개나 한 중개인이 다른(하위) 중개인에게 일부 수수료를 지급하는 하위중개의 경우에도 면세대상 보험거래로 봄
 - 중개인의 핵심적인 역할(예: 영업, 고객 확보)을 수행하여야 함
 - 유럽연합법원은 잠재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배포, 홍보함으로써 계약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판단함³²⁸⁾
- 보험세가 부과되는 사업 및 보험법이 적용되는 자본화 상품³²⁹⁾ 관련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전환을 허용하지 않음³³⁰⁾
- 보험세는 다음 장에서 상세 설명함
- 보험 또는 재보험 거래와 관련이 없거나 자격이 없는 보험중개기관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지원 또는 관리 용역(통상 '백오피스' 업무)은 일반세법 제261C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327) 프랑스 최고행정법원(Conseil d'État; 국사원), 2019. 10. 9., n° 416107, ECLI:FR:CECHR:2019:416107.20191009; CJUE, 2016. 3. 17. 판결, 사건 C-40/15, Aspiro SA, ECLI:EU:C:2016:172

328) CJUE, 2005. 3. 3. 판결, 사건 C-472/03, Arthur Andersen, ECLI:EU:C:2005:135; CJUE, 2016. 3. 17. 판결, 사건 C-40/15, Aspiro SA, ECLI:EU:C:2016:172(재인용)

329) Contrat de capitalisation; 생명보험과 유사하게 운용되는 저축성 보험 상품

330) 「CGI」 Article 260 10° 및 14°

- 예를 들어 자격이 없는 보험중개기관 등의 단순한 손해처리 업무 대리 용역(손해사정), 정보기술시스템 또는 회계 및 재무 감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유럽연합사법재판소는 백오피스 업무는 보험회사의 본질적인 활동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험거래가 아니며, 중개인의 핵심적 역할(예: 영업)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중개인이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용역도 아니라고 봄³³¹⁾
- 반면 이러한 서비스가 보험중개기관 등에 의해 제공되고 보험 또는 재보험 거래와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면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³³²⁾
- 따라서 면세대상 금융서비스 및 보험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으며, 취득(매입)가액에 포함되어 비용으로 처리함
 - 다만 EU 외 국가에 주된 거소 또는 주소가 있거나 고정사업장이 설립된 자에게 제공되거나 상품 수출과 관련된(Exportations de biens) 특정 금융서비스 또는 보험 및 재보험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³³³⁾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금융서비스 또는 보험거래나, 과세전환 대상 금융서비스로서 부가가치세과 과세된 거래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331) CJCE, 2005. 3. 3. 판결, 사건 C-472/03, Arthur Andersen, ECLI:EU:C:2005:135; 보험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손해처리, 보험증권 발행·관리 및 해지, 계약변경 및 요율조정 등을 하위 계약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함

332) 「CGI」 Article 271: 다른 조사국과 달리 총 매출액에서 면세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 전체를 공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333) 「CGI」 Article 271 (V); BOPIF, “D. Certaines opérations d’assurance ou de réassurance et d’intermédiaires en assurance et réassuranc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530-PGP.html/identifiant=BOI-TVA-DED-10-20-20211222#Certaines_operations_dassur_23; BOPIF, “E. Certaines opérations bancaires et financières,” https://bofip.impots.gouv.fr/bofip/1530-PGP.html/identifiant=BOI-TVA-DED-10-20-20211222#Certaines_operations_bancai_24; 검색일자: 2024. 1. 30.

- 총 매출액에서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의 배분 없이 전체를 공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과세 및 면세 거래가 모두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면세거래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하며,³³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공제계수(coefficient de déduction)에 해당하는 만큼 안분하여 공제 가능함³³⁵⁾
 - 공제계수는 (1) 과세사업 계수(coefficient d' assujettissement),³³⁶⁾ (2) 과세매출 계수(coefficient de taxation),³³⁷⁾ (3) 공제허용계수(coefficient d' admission)³³⁸⁾ 을 곱하여 계산함³³⁹⁾
 - 따라서 법령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통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비율 및 과세공급가액 비율만큼 공제 가능함
 -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 예시: 90% 이상 사적 사용된 재화 또는 용역, 비영업용 승용차, 직원 사택 등 관련 매입세액
 - 다만 과세전환이 불가능한 면세 금융거래 등으로서 회사의 주된 활동과 관련성은 있지만 과세대상 공급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하인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공제계수 계산 시 분모 및 분자 모두에 포함하지 않음³⁴⁰⁾

334) 「CGI」 Annex II, Article 209

335) 「CGI」 Annex II, Article 205, 206; BOPIF, “TVA - Droits à déduction - Détermination des droits à déduction - Coefficient de taxa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1665-PGP.html/identifiant=BOI-TVA-DED-20-10-20-20130610>, 검색일자: 2024. 1. 29.

336) 과세사업 계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사업의 비율을 말함(「CGI」 Annex II, Article 206 II)

337) 과세매출 계수: 과세매출만 있는 경우 1, 면세매출만 있는 경우 0,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동시에 있는 경우 총 공급가액(분모) 중 과세공급가액(분자)이 차지하는 비율로 함(「CGI」 Annex II, Article 206 III-3)

338) 법령 규정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예: 업무무관비용, 출퇴근차량 등)인 경우 0, 매입세액 공제가능 항목인 경우 1이며,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비율(0.8 (휘발유, 디젤) 또는 0.5(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로 함(「CGI」 Annex II, Article 206 IV; 「CGI」 Article 298 4.; 안창남·손승연(2019), pp. 62~63)

339) 회사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이 아닌 IT장비를 구입하고 면세거래에 30%, 과세거래에 70%를 사용하고, 회사 매출액 중 면세 공급가액은 6만유로, 과세 공급가액은 30만유로인 경우 공제계수는 과세사업계수(0.7)×과세매출계수(0.83 = 300,000/360,000)×공제허용계수(1)=0.58으로 계산되는 것임(자료: assistant-juridique, “TVA: quand faut-il déterminer un coefficient de déduction?,” https://www.assistant-juridique.fr/coefficient_deduction_tva.jsp; 검색일자: 2024. 1. 30.)

- 그러나 회사의 주요 활동과 직접적·영구적으로 연관된 경우는 제외함

4) 연결부가가치세 제도³⁴¹⁾

- 프랑스는 법적으로 독립적이지만 재무적, 경제적, 조직적 측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기업을 단일 기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 연결부가가치세(Group TVA)를 시행함
 - 프랑스는 2012년부터 통합납부제도(Consolidation de la TVA)를 시행하였고, 2020년 12월 29일 재정법(Loi de finances pour) 개정으로 연결부가가치세가 도입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연결부가가치세의 적용은 업종에 제한 없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한번 신청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함 3년 의무 적용 후 연결그룹 가입 및 탈퇴는 자유롭게 가능함
 - 연결부가가치세 적용 시 과세관청의 승인 등 별도절차 또는 연결부가가치세 적용 거부권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적용요건) 연결부가가치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그룹(이하 '연결그룹')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³⁴²⁾
 - 연결그룹 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자가 둘 이상이어야 하며, 연결그룹은 다른 연결그룹의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연결그룹의 경제활동 소재지 및 고정사업장은 프랑스에 있어야 함

340) 「CGI」 Annex II-Article 206-III-3-3°-b; BOPIF, “2. Opérations financières et immobilières accessoires exonérées pour le calcul du coefficient de taxation forfaitaire,” https://bofip.impots.gouv.fr/bofip/1665-PGP.html/identifiant=BOI-TVA-DED-20-10-20-20130610#Operations_financieres_et_i_31, 검색일자: 2024. 1. 29. 부차적인(considered as accessories) 금융거래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공제 안분계수 계산 시 무시함(분모와 분자에 모두 포함되지 않음)

341) 정다운·홍성희·이성현(2022), pp. 66~70

342) CGI 256C I, III.-1.

- 연결그룹은 재무적, 경제적, 조직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재무적 요건) 하나의 법인이 다른 법인의 지분 또는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보유하여야 함
 - (경제적 요건) 그룹 구성원 상호간 사업활동을 촉진, 보완하는 관계로서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조직적 요건) 연결 주체가 연결 구성원에 대하여 일상적인 관리·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함
- (세무처리) 연결그룹 내 하나의 구성원을 그룹대표로 지정하고, 해당 그룹대표가 부가가치세법상 단일 사업자가 되어 그룹 전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수행함³⁴³⁾
- 그룹대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월별 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룹 구성원은 부가가치세 연대납부, 내부 문서의 정당서 입증 등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음
- 연결그룹 내 구성원 간 거래는 내부거래로 간주하므로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님
-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원칙에 따르며,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각 구성원의 공제계수를 반영하여 계산함³⁴⁴⁾

나. 기타 간접세³⁴⁵⁾

1) 보험세

- (과세대상) 프랑스는 보험자(assureur)와 피보험자(assuré) 사이에 실질적으로 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이 체결된 보험거래에 대하여 보험세(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s, TCAS)³⁴⁶⁾를 과세함³⁴⁷⁾

343) CGI 256C III.-2.

344) 「CGI」 Annexe II Art. 205

345) 「CGI」 Art. 991-1004bis

346) 프랑스 보험세에 대한 규정은 1944년 12월 1일 31일 제정됨. 보험세는 영문표기로 Insurance Premium Tax(IPT)임

- 일반적인 보험계약과 계약관련 준비 용역, 계약변경 및 추가 또는 해지 거래는 모두 보험세 과세대상임³⁴⁸⁾
 - (일반적인 보험계약) 표준보험계약, 단기보험계약, 종합보험계약, 구독형보험계약 등
 - (계약관련 준비 용역) 보험제안서, 감정평가보고서, 보험대상자산 검토, 농업보험 위험에 대비하여 매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수확물의 상세목록 작성 행위 등이 포함됨
 - (보험 계약 변경 및 추가) 보험계약 소유자 변경, 보험료 또는 보험금 변경, 거주지 보증 변경, 특정 위험이나 납부할 보험료 지정 등과 같은 보험계약의 변경 및 계약 내용을 추가하는 행위 등이 포함됨
 - (계약 해지) 협의에 의한 해지, 취소·철회에 의한 해지 모두 보험세 대상임
 - 채무자의 부도 등 예상치 못하거나 비정상적인 사유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신용보험은 보험세 과세대상이나, 피보험자의 신용장 개설, 대출 등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상환을 보장하는 조건의 신용보험은 보험세 과세대상이 아님
 - 간접보증계약은 보험세 과세대상으로 보며, 채무자가 인수한 증서의 지급을 보장하는 조건의 보증계약 행위 또는 보험회사의 직접적인 보증행위는 보험세 과세대상이 아님
- (면세대상) 다음에 열거된 보험에 대하여는 보험세를 과세하지 않음³⁴⁹⁾
- 재보험³⁵⁰⁾ 및 단체보험³⁵¹⁾

347) BOPIF, "TCAS-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 - Notions générales sur les contrats d'assurance - V. Champ d'applica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812-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10-10-20120912>, 검색일자: 2024. 2. 1.

348) BOPIF,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 - Conventions d'assurance assujetties à la taxe," <https://bofip.impots.gouv.fr/bofip/813-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10-20-20120912>, 검색일자: 2024. 2. 1.

349) 「CGI」 Article 995~999

350) 「CGI」 Article 995 1°

351) 「CGI」 Article 998 1°

- 생명보험, 생명연금계약, 실업보험, 건강보험계약 등 특정 위험을 다루는 보험 계약³⁵²⁾
 - 특정 차량 관련 보험계약³⁵³⁾
 - 3.5톤을 초과하는 상업용 화물차량 관련 손해보험(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책임보험은 제외)
 - 전기자동차 관련 보험(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에 한함)
 - 특정 기관에 의해 체결된 보험계약³⁵⁴⁾
 - 인지세 및 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는 보험계약³⁵⁵⁾
- (납부의무자) 보험세 납부의무자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임
- 프랑스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보험사 등의 경우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이, 프랑스에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 없이 외국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납부의무자가 됨³⁵⁶⁾

352) 그 외에도 특정 농업 위험 관련 보험, 해상·하천 또는 항공·항해·해양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위험에 대한 보험, 작물 및 입목에 영향을 미치는 서리·폭풍 위험에 대한 보험, 운송 물품에 대한 보험 및 육상 운송업체의 민사책임 관련 보험, 수출신용 보험, 공동 유동화기금이 가입하는 보증계약도 포함됨 (자료: BOPIF,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s - Exonérations - Contrats couvrant des risques particuliers,” <https://bofip.impots.gouv.fr/bofip/3524-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10-40-30-20180404>, 검색일자: 2024. 2. 1.)

353) BOPIF,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 - Exonérations - Contrats relatifs à certains véhicules terrestres à moteur,” <https://bofip.impots.gouv.fr/bofip/2444-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10-40-50-20210407>, 검색일자: 2024. 2. 1.

354) 국립수혈센터 또는 「사회보장법」 및 「농촌법」상 보충연금 또는 예비연금 관련 기관이 체결하는 특정 보험(자료: BOPIF,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s - Exonérations - Contrats souscrits par et auprès de certains organismes,” <https://bofip.impots.gouv.fr/bofip/3522-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10-40-10-20120912>, 검색일자: 2024. 2. 1.)

355) 곡물협동조합 및 이에 준하는 조합, 단체가 체결하는 보험, 농업작물재해 관련 보험, 사회복지 및 아동복지사업 관련 보험, 비농업전문직 종사자(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 사회보장법이 적용되는 행위(건강, 출산 등) 관련 보험, 적십자, 결핵요양소 등 사회기관이 체결하는 보험 등이 있음(자료: BOPFI,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 - Exonérations - Contrats bénéficiant d'une exonération de droits de timbre et d'enregistrement,” <https://bofip.impots.gouv.fr/bofip/3384-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10-40-40-20160203>, 검색일자: 2024. 2. 1.)

356) BOPIF,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s - Recouvrement,” <https://bofip.impots.gouv.fr/bofip/3446-PGP.html/identifiant%3DBOI-TCAS-ASSUR-50-10-20120912>, 검색일자: 2024. 2. 1.

- 보험회사와 그 대표자 또는 지점이사, 보험중개인 및 대리인, 피보험자 등 보험 계약의 모든 책임당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짐³⁵⁷⁾
- (과세대상금액)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와 보험계약에 부수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인해 보험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얻는 모든 금액에 대하여 과세함³⁵⁸⁾
 - 보험료(Primes): 보험의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해 지불하는 모든 금액으로, 증액(추가 납입) 보험료도 포함됨
 - 상호보험에서 각 회원이 지불하는 모든 금액
 - 보험계약에 부속되는 용역(Accessoires de la prime)에 대한 비용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피보험자가 지불하는 금액
 - 예를 들어 세금, 보험료 회수, 수금 및 관리 수수료, 보험계약·증권 관리 및 유지수수료, 중개업체나 대리인 등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또는 보수,³⁵⁹⁾ 피보험재산에 대한 평가수수료, 보험증권 및 계약서 비용, 계약 검토수수료
 -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가 아닌 금액, 이자 및 기타 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금액은 보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세율) 다음과 같이 법에서 열거하는 특정 유형의 보험을 제외하고는 9% 세율이 적용됨³⁶⁰⁾
 - 일반 화재 보험 계약: 30%

357) 「CGI」 Article 1708

358) 「CGI」 Art. 991; BOPIF, "TCAS - Taxe sur les conventions d'assurances - Base d'imposition," <https://bofip.impots.gouv.fr/bofip/2443-PGP.html/identifiant=BOI-TCAS-ASSUR-20-20190402>, 검색일자: 2024. 2. 1.

359) 보험회사가 보험료 회수업체 또는 수금담당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나 보수를 말하며, 피보험자가 특정 회사의 대리인이나 중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수료는 보험세 과세금액에 포함되지 않음

360) 「CGI」 Article 1001; 보험세 과세대상에는 보험세 외에도 국민보증기금, 국민농업재난기금, 추가 연대세, 의료상해보증기금, 테러피해자를 위한 공동기금 등 부가적인 세금(sur tax)이 있으나, 본문에서는 보험세율만을 다룸. 단 마요트(Mayotte) 지역은 법정세율에서 50%를 경감함

- 비면세 농업 활동 관련 화재보험, 상업, 공업, 공예, 농업활동에 전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지방당국의 행정건물, 화재로 인한 사업중단 관련 보험: 7%
- 지방자치기관(caisses départementales)에서 가입한 화재보험: 24%
- 일반 자동차 관련 보험: 33%
 - 농업용 차량 보험, 3.5톤을 초과하는 상업용 화물차량 관련 책임보험: 15%
 - 법적의무보험 외의 자동차 관련 보험: 18%
 - 운전자 법적 보호(Legal protection)를 위한 보험: 13.4%(2017년부터)³⁶¹⁾
- 해양스포츠, 해양여가활동(예: 유람선) 관련 보험: 19%

2) 급여세

- 프랑스 급여세(Taxe sur les Salaries; payroll tax)는 부가가치세 과세 부문과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1968년에 도입되었으며, 생산요소 소득을 직접 계산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함으로써 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부가 방식임
- 프랑스에 주소 또는 고정사업장을 면세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의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겸영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수)에 대해 일정 세율로 과세함³⁶²⁾
 - 일반적으로 특정 자유직업,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 은행 및 금융기관, 보험회사, 특정 보험중개인 및 주식중개인, 행정단체 및 사회단체, 협동조합 또는 공제조합, 농업전문가 등이 급여세 과세대상이 됨
- 급여지급액에서 전문가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4.25~13.6%의 세율로 과세됨³⁶³⁾
 - 과세표준 8,573유로까지는 4.25%, 8,573유로에서 1만 7,114유로는 8.5%, 1만 7,114유로 이상은 13.6%의 누진세율을 적용함(2024년 기준)

361) 2016년 12월 31일 이전까지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12.5%

362) 프랑스 정부, "Payroll tax,"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vosdroits/F22576?lang=en>, 검색일자: 2024. 2. 6.

363) 「CGI」 Article 231 - 1, 2 bis

- 다만 소규모기업자³⁶⁴, 특정 농업 고용주(농작물 및 가축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주립 학위(State Diploma Bachelor +5)를 발행하는 고등교육기관³⁶⁵이나 주(State) 및 정부기관 또는 특정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는 급여세가 면제됨

4. 독일

가. 부가가치세

1) 개요

- 독일 부가가치세(Umsatzsteuer)는 1968년에 최초 도입 및 시행됨
- 독일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대상 거래 대하여 부과함³⁶⁶
 - 과세대상 거래는 독일 내 유·무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U 외 제3국으로부터 재화의 수입, EU 역내 국가로부터의 재화 또는 특정 용역의 수입 및 재화 또는 용역의 자가 공급을 말함
 - 부가가치상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인 상업적 또는 전문적 활동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민법상 법적 능력을 가진 자연인, 법인, 단체가 될 수 있음³⁶⁷

364) 세금을 제외한 전년도(또는 전전연도, 당해연도) 매출액이 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를 말함

365) 대학, 경영대학원이 이에 해당함

366) 「Umsatzsteuergesetz」(이하 「UStG」) §1 Abs.1

367) 「UStG」 §2 (1); 김유찬·이유향(2019), pp. 9~10.

-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표준세율(19%)을 적용하며, 특정 항목에 대하여는 경감세율(7%), 재화의 수출 등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함³⁶⁸⁾
 - (표준세율) 최초 도입 당시에는 10%였으나 2007년부터 19%를 적용함
 - (경감세율) 농·축산품, 도서, 음반, 예술품 등 부가가치세법 부록에 열거된 재화의 공급이나 수입 또는 EU 역내 취득, 축산 및 식물체 재배, 치과의사의 행위 및 치과 기술, 특정 승객운송 용역 등에 대하여 7% 경감세율을 적용함
 - (영세율) 재화의 수출(임가공수출 포함), EU 역내 재화의 공급, 보세창고 보관 재화의 공급, 특정 항공·해상운송업 및 국외운송 용역, 중앙은행에 대한 금 공급, EU 외 제3국에 대한 특정 금융서비스 공급 등에 대하여는 0%를 적용함³⁶⁹⁾
- 독일은 금융·보험 용역, 토지임대 용역, 문화, 교육 및 의료 용역, 공익 목적의 활동 등과 관련된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³⁷⁰⁾

2)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 독일의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에 규정된 것과 유사함
 - 그리고 부가가치세 준칙 제137조 제1항 (a)호에 따라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opt to tax)제도³⁷¹⁾를 도입함

가) 금융 용역

- 독일은 다음의 금융 용역에 대해 원칙적으로 면세를 적용함³⁷²⁾
 - (a) 신용의 공여 및 중개·주선

368) 「UStG」 §12

369) 「UStG」 §4 Nr.1~7; §15 (3)

370) 「UStG」 §4 Nr.8~29.; Bloomberg tax, "7.3. Exempt Supplies or Equivalent," [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BC18#section\(3\)_0](https://www.bloomberglaw.com/product/tax/document/XNPSBC18#section(3)_0), 검색일자: 2024. 1. 17.

371) 「UStG」 §9

372) 「UStG」 §4 Nr. 8. (a)~(i)

- (b) 법정 화폐 공급 및 증개(수집 목적의 화폐 거래 제외)
 - 다양한 통화로 된 법정 화폐 교환 및 관련 증개서비스, 가상화폐 교환거래도 포함
 - (c) 채권, 수표 및 기타 상업어음 등 판매 및 증개(채권 추심은 제외)
 - (d) 예금, 당좌예금, 지급 및 이체와 기타 기업어음추심 관련 판매 및 증개
 - (e) 유가증권 관련 판매 및 증개(유가증권 보관·관리 업무는 제외)
 - (f) 회사 및 기타 협회 등의 주식(지분증권) 판매 및 증개
 - (g)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증서 인수 및 해당 거래의 증개
 - (h) 자본투자법(Kapitalanlagegesetzbuchs)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사업의 관리 및 대체투자펀드 관리, 보험감독법(Versicherungsaufsichtsgesetzes)에 따른 퇴직연금펀드의 관리
 - (i) 우표 공급
- 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위에서 열거하는 면세 금융 용역 거래에 대하여 개별 거래별로 과세전환 할 수 있음³⁷³⁾
- 따라서 금융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고객에 따라 선택적으로 과세 적용이 가능함
 - 다만 증권집합투자사업의 관리 및 대체투자펀드 및 퇴직연금펀드의 관리와 우표 공급에 대하여는 과세전환 할 수 없음

373) 「UStG」 §9

〈표 IV-7〉 독일의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 규정

면세대상	과세대상 ¹⁾	과세전환 대상 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의 공여 및 증개·주선 • 법정 화폐 공급 및 증개(수집 목적의 화폐 거래 제외) • 채권, 수표 및 기타 상업어음 등 판매 및 증개(채권 추심 제외) • 예금, 당좌예금, 지급 및 이체와 기타 기업어음추심 관련 판매 및 증개 • 유가증권 관련 판매 및 증개(유가증권 보관·관리 업무는 제외) • 회사 및 기타 협회 등의 주식(지분증권) 판매 및 증개 •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증서 인수 및 해당 거래의 증개 • 「자본투자법」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사업의 관리 및 대체투자펀드 관리, 「보험감독법」에 따른 퇴직연금펀드의 관리 • 우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목적의 화폐 거래 • 채권추심 •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의 공여 및 증개·주선 • 법정 화폐 공급 및 증개(수집 목적의 화폐 거래 제외) • 채권, 수표 및 기타 상업어음 등 판매 및 증개(채권 추심 제외) • 예금, 당좌예금, 지급 및 이체와 기타 기업어음추심 관련 판매 및 증개 • 유가증권 관련 판매 및 증개(유가증권 보관·관리 업무는 제외) • 회사 및 기타 협회 등의 주식(지분증권) 판매 및 증개 •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증서 인수 및 해당 거래의 증개

주: 1) 독일은 과세 금융 용역을 법령에서 열거하지 않기 때문에 과세 금융 용역은 예시적으로 작성함
면세 금융 용역으로 열거하지 않은 역무는 부가가치세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2) 면세로 열거된 금융 용역 중 「자본투자법」에 따른 증권집합투자사업의 관리 및 대체투자펀드 관리, 「보험감독법」에 따른 퇴직연금펀드의 관리 및 우표 공급을 제외하고는 과세전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함

자료: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가 정리함

나) 보험 용역

- 독일은 다음의 보험 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³⁷⁴⁾
 - 「보험세법」에 따른 보험약정에 근거하여 제공되는 용역
 - 「보험세법」에 의하지 않더라도 보험금의 지급에는 면세를 적용함
 - 다른 사람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용역(보험 보장 용역)
 - 사업자가 제 삼자의 이익을 위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임
 -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 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는 보험의 본질적인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의 용역은 면세대상 보험 용역으로 보지 않음³⁷⁵⁾
 - 「보험세법」상 법률 계약에 따르지 않는 것
 - 예를 들어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보증보험은 면세대상 보험 용역으로는 보지 않으며,³⁷⁶⁾ 다만 금융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차량(부품)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판매한 경우
 - 보험료 징수 및 영업처리와 관련된 활동 및 보험사에 제공하는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지원부서 활동³⁷⁷⁾
 - 금융법원은 공동보험계약과 관련한 검사·계산, 보험증서 발급, 보험료 징수, 손해 배상 조정 등의 계약체결 및 처리와 관련된 행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소위 ‘관리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³⁷⁸⁾

374) 「UStG」 §9 Nr. 10, 11

375) 독일 세무플랫폼(HAUFE), “3.3 Nicht steuerfreie Umsätze,” https://www.haufe.de/finance/haufe-finance-office-premium/schwarzwidmannradeisen-ustg-4-nr10-versicherungs-33-nicht-steuerfreie-umsaetze_idesk_PI20354_HI5068144.html, 검색일자: 2024. 1. 17.

376) 「VersStG」 §2;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손실 또는 손해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여러 사람 또는 단체 간의 협정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하며,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증이나 다른 안전 조치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계약은 보험계약으로 간주되지 않음

377) 김무열·박수진·허윤영(2020), p. 64

378) 독일 연방재정최고법원(BFH), “Urteil vom 24. April 2013, XI R 7/11,” <https://www.bundesfinanzhof.de/de/entscheidung/entscheidungen-online/detail/STRE201310148/>, 검색일자: 2024. 1. 17.

- 독일은 보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지만 보험계약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보험관계를 근거로 하여 보장하는 보험 프리미엄 지급에 대하여는 보험세(Insurance Premium Tax. IPT)를 과세함
 - 보험세는 다음 장에서 상세 설명함

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처리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비사업용 또는 면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음³⁷⁹⁾
 - 사업연관성이 충족된 거래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비율이 10% 미만인 경우 사업목적으로 공급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³⁸⁰⁾
 - 사업에 사용하는 비율이 10% 미만인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없음
 - 총 매출액에서 면세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거나 일정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매입세액의 배분 없이 전체를 공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겸영사업자로서 과세 및 면세 실지귀속을 판단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경제적 귀속에 따른 합리적 추정비율을 사용하여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계산함³⁸¹⁾
 - 공통매입세액을 안분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과세거래와 면세거래를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함³⁸²⁾
 - 과·면세 겸용 건물을 예시로 들 경우, 합리적 추정비율은 표면적비율(Flächenschlüssel), 기여율(Objectbezogener Umsatzschlüssel; 예를 들어 임대료 수입 등), 건물 용적률(Umbauter Raum) 등을 사용할 수 있음³⁸³⁾

379) 「UStG」 §15 (2)

380) 「UStG」 §15 (1) 후단

381) 「UStG」 §15 (4)

382) 「UStAE」 §15.17. (2)

383) 「UStAE」 §15.17. (7)

- 매출액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 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하는 것은 다른 경제적 배분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됨³⁸⁴⁾

4) 연결부가가치세³⁸⁵⁾

- 독일은 모회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여러 기업을 세무목적상 통합된 단일 단체로 보아³⁸⁶⁾ 과세하도록 하는 그룹과세제도(Organträgerschaft 또는 Organschaft)를 1934년부터 운용함³⁸⁷⁾
 - 그룹과세제도는 법인세, 지방영업세, 부가가치세에도 적용함
 - 연결그룹의 효과는 국내에서만 적용되므로 모회사 또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 연결모회사가 해외에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가장 중요한 국내 사업부문을 사업자로 간주함³⁸⁸⁾
- 연결부가가치세제는 업종에 제한 없이 요건을 충족한 연결그룹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선택권이 없음³⁸⁹⁾
 - 연결부가가치세 적용에 납세자의 신청이나 과세관청의 승인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음

384) 「UStG」 §15 (4) 3문장

385) IBFD, "Germany - Value Added Tax - Country Tax Guides - 2. Taxable Persons - 2.4. Groups," https://research.ibfd.org/#/doc?url=/linkresolver/static/evat_de_s_2.5.&refresh=1705538375533%23evat_de_s_2.4., 검색일자: 2024. 1. 18.

386) 「UStG」 §2 (2) Nr. 2: 독일 내에 설립된 법인체로서 모회사(Organträger)와 재정적, 경제적, 조직적 관계에 밀접하게 묶여 있는 자회사(Organgesellschaften)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음

387) 정다운·홍성희·이성현(2022), pp. 54~61.: 독일의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는 1934년 최초 시행되었으며, 최초 도입 목적은 당시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가 없어 각 판매단계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함에 따라 중간단계의 회사를 합병하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으나 이후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되었고, 다수 판례 및 EC 위원회에서는 연결부가가치세의 목적을 '행정 간소화'라고 보고 있음

388) 「UStG」 §2 (2) Nr. 2: 「UStAE」 2.9.

389) 「UStAE」 2.8. (4)

- 모회사 의결권이 50% 이하로 변동되거나, 모회사 또는 자회사 매각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적용이 종료됨
- 과세관청의 연결부가가치세 적용 거부권에 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음
- (적용요건) 연결부가가치세는 모회사(Organträger)와 자회사(Organgesellschaften) 간 재무적·경제적·조직적 통합을 요건으로 함³⁹⁰⁾
 -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독립적·계속적으로 상업적 또는 전문적 활동을 수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어야 함³⁹¹⁾
 - (모회사) 부가가치세법상 연결그룹에는 하나의 모회사만 존재할 수 있으며,³⁹²⁾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업 주체라면 모회사가 될 수 있음³⁹³⁾
 - (자회사) 자회사는 일반적으로 민법 및 상법상 법인이어야 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파트너십(Personengesellschaft) 또한 자회사가 될 수 있음
 - 모회사와 자회사가 재정적, 경제적, 조직적 관점에서 통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함
 - (재정적 통합) 명백한 종속관계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50%를 초과하여 보유하여야 함³⁹⁴⁾
 - (경제적 통합) 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 활동이 그룹 내에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³⁹⁵⁾
 - (조직적 통합) 모회사가 자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법적·실질적인 개입이 직접적으로 가능하여야 함³⁹⁶⁾

390) 경제적, 조직적 통합 요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그룹과세 적용에만 필요한 요건이며, 법인세법 목적의 그룹과세 시에는 적용되지 않음(「UStAE」 2.8. (3) 1분)

391) 「UStG」 §2 (1); 「UStAE」 2.8. (2)

392) 「UStAE」 2.8. (3) 2분

393) 공공법인 또한 기업적 활동을 하는 사업 주체인 경우 모회사가 될 수 있음

394) 「UStAE」 2.8. (5)-(5b)

395) 「UStAE」 2.8. (6)

396) 「UStAE」 2.8. (7)

- (세무처리³⁹⁷) 연결부가가치세 적용 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납세의무자)는 모회사가 되며, 자회사는 독립적인 납세의무자 지위를 상실하며, 모회사는 연결그룹의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며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자회사는 사업자의 지위는 없으나 요약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 그룹과세를 적용받으면 모회사와 자회사는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자로 취급되므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님
 - 자회사는 모회사의 사업부문으로 취급되고 자회사의 모든 거래는 모회사에 귀속되며, 그룹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내부거래로 간주됨
 - 모회사가 겸영사업자로서 과세·면세 실시귀속이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함

나. 기타 간접세(보험세)

- (과세대상) 독일은 계약 또는 기타 방식으로 형성된 보험 관계(insurance relationship)³⁹⁸를 기반으로 하여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료(Versicherungsentgelts)에 대하여 보험세를 과세하고 있음³⁹⁹
 -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협정(EEA) 내 소재 보험사와 다음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의 거소나 주소에 관계없이 보험세가 적용됨⁴⁰⁰
 - 독일 내 소재 부동산(건물 및 구조물, 시설물 등), 상업상 운송 중 재화를 제외한 내용물(contents)과 관련된 위험

397) smartsteuer, "Organschaft," <https://www.smartsteuer.de/online/lexikon/o/organschaft/>, 검색일자: 2024. 1. 18.; Deloitte, "VAT consolidation in Germany," <https://www2.deloitte.com/content/dam/Deloitte/de/Documents/Country%20Services%20Group/Brochure-VAT-consolidation-in-Germany.pdf>, 검색일자: 2024. 1. 18.

398) 보험관계에는 공동의 손실이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와의 보험계약은 포함되며, 보증 또는 기타 보안을 위해 체결한 보험계약은 포함되지 않음; VersStG §2

399) 「보험세법(Versicherungsteuergesetz, 이하 "VersStG")」 §1 (1)

400) 「VersStG」 §1 (2)

- 독일 내 공인등록부에 등록되어 고유의 번호판(registration plate)이 제공되는 모든 유형의 차량과 관련된 위험
 - 독일 내 4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험 관계를 기초로 하는 여행, 휴가와 관련된 위험
 - 기타 위험 또는 대상에 대한 보장
 - 유럽연합(EU) 및 유럽경제지역협정(EEA) 내에 소재하는 보험사와 보험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독일 내 거소·주소 또는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보험계약 체결시점에 보험대상물이 독일에 있는 경우 보험세가 적용됨⁴⁰¹⁾
- (납부의무자) 보험세 납부의무자(tax payment debtor)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사(Versicherer)임⁴⁰²⁾
- EU 또는 EEA 내에 보험사의 거소, 등록사무소,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 보험프리미엄을 수령할 권한을 위임받은 보험대리인 또는 세금납부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납부의무자가 됨⁴⁰³⁾
 - 보험사 외에도 보험금을 수령하는 다른 개인 또는 단체, 타인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자도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⁴⁰⁴⁾
 -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및 기타 모든 책임당사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짐⁴⁰⁵⁾
 - 최종적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납세의무자(tax debtor)는 보험계약자임⁴⁰⁶⁾
- (과세표준) 보험관계를 체결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에 지급되는 모든 유형의 지급금을 과세표준으로 함⁴⁰⁷⁾

401) 「VersStG」 §1 (3)

402) 「VersStG」 §7 (2)

403) 「VersStG」 §7 (3), (5)

404) 「VersStG」 §7 (7)

405) 「VersStG」 §7 (8)

406) 「VersStG」 §7 (1); 보험계약자(Versicherungsnehmer: policyholder)는 보험의 가입자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하는 주체를 말함

407) 「VersStG」 §3

- 지급금에는 보험료(Prämie) 및 납입금(Beiträge), 선급보험료(Vorbeiträge) 및 선납금(Vorschüsse), 추가납입금(Nachschüsse), 단체보험 등의 분배금(Umlagen), 보험증권 발급수수료 및 서류관련 비용, 기타 부가비용 등이 포함됨
 - 보험사가 공급하는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보상이나 개별적인 보험계약자와 관련된 기타 사유에 따른 지급금은 포함되지 않음
 - 예를 들어 대체서류 발급비용, 지급 독촉 비용 등이 있음
 - 보험료에서 이익배당을 상계한 후 그 차액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차액을 보험료로 함
 - 보험료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 보험세액은 환급됨⁴⁰⁸⁾
 - 보험료의 환급은 납세의무자인 보험계약자에게 환급됨
 - 그러나 보험계약상 보험료 환급이 명시적으로 보장되는 경우는 제외함
- (과세시기) 보험료의 과세 시기는 현금주의(Istversteuerung; cash accounting scheme)와 발생주의(Sollversteuerung; accrual accounting schem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⁴⁰⁹⁾
- 현금주의에 따르면 실제 보험료 납부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보험계약자(Zahlende)가 보험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지급 시점에 과세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령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함
 - 발생주의에 따르면 납부기간별 예상 보험료를 과세표준으로 함
 - 즉 보험료 납부기일이 도래한 날의 기간을 기준으로 과세함
-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한 과세표준은 별도 규정에 따름⁴¹⁰⁾
- 소방세법상 영업중단과 관련된 화재보험: 보험료×60%

408) 「VersStG」 §9 (1)

409) 「VersStG」 §5 (2)

410) 「VersStG」 §5 (1)

- 주거용 건물보험: 보험료×86%
 - 주택 가재도구 보험: 보험료×85%
 - 우박, 폭풍, 가뭄, 홍수 등 기상 관련 자연재해로부터 토양 생산물 또는 및 농업 및 원예 작업 시 관련 토양생산물 보호를 위한 유리구조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보험 가입기간에 대한 피보험금액(보장금액)
- (세울) 일반적으로 주거용 건물 및 가재도구에 대한 보험 등에 적용되는 세율은 19%이며,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하여는 별도 세율을 적용함⁴¹¹⁾
- 화재보험 및 영업중단과 관련된 화재보험: 22%
 - 우박, 폭풍, 가뭄, 홍수 등 기상 관련 자연재해로부터 토양 생산물 또는 및 농업 및 원예 작업 시 관련 토양생산물 보호를 위한 유리구조물에 대한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0.3%
 - 해양선체보험(Seeschiffskaskoversicherung): 3%
 - 상업 목적의 선박으로 해상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함
 - 환급형 상해보험: 3.8%
- (면세대상) 다음과 같은 재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등에 대하여는 보험세가 과세되지 않음⁴¹²⁾
- 재보험
 - 공법상 단체(öffentlich-rechtlicher Körperschaften)가 조합원의 연금 및 유족 연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 「사회보장법」 제7권에 따른 상해보험
 - 「사회보장법」 제3권에 따른 고용보험 및 「비용보상법」에 근거한 보험
 - 사망, 생존, 질병, 돌봄(요양), 장애, 직업능력 상실 또는 소득 감소의 경우 자본, 연금 또는 기타 이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는 보험
 - 상해보험, 책임보험 및 기타재산보험에는 적용되지 않음

411) 「VersStG」 §6

412) 「VersStG」 §4 (1)

- 「기업연금개선법(BetrAVG)」⁴¹³⁾ 제1장 제4부에 따른 보험
- 단체교섭자가 실직 직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정한 임금보상기금 관련 보험(실업 보험 등)
- 징계, 파업 등에 대하여 전문협회로부터 법적 보호나 지원을 제공하는 단체보험⁴¹⁴⁾
- 국제운송 재화에 대한 운송보험, 전쟁위험보험, 멸실 및 손상에 대한 손해보험(책임 보험은 제외)
- 독일연방공화국에 인가된 외교사절단 및 그 구성원 등 국가외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험계약자로 가입한 보험(상호주의에 한하여 면세)
- 보험금액이 4천유로 이하인 가축보험
- 공동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수익분배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정 부과금
- 화재지원협회(Brandunterstützungsvereine)를 대상으로 개별 피해 청구에 부과되는 5,500유로 이하의 기여금

5. 기타

가. 뉴질랜드

- 뉴질랜드는 1986년 GST 도입 당시 금융 서비스에 대해 GST 면세함
 - 뉴질랜드 GST에 따른 면세 금융 서비스는 화폐 거래, 특정 증권 거래, 신용 및 대출 공급, 생명보험(연금 포함)의 공급, 인도불가능한 선물계약 및 금융 옵션의 공급, 유가증권이 관여된 거래와 관련한 이자, 원금, 배당의 지급 및 징수, 대출, 지분, 생명보험의 공급과 관련한 중개(intermediation) 및 브로커 서비스 등 유형의 거래를 의미함⁴¹⁵⁾

413) 약어로 「BetrAVG」(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betrieblichen Altersversorgung)

414) 「VersStG」 §2 (1)에 따른 보험계약의 의미 내에서의 단체와의 보험계약

415) Newzealand GST section 3

- 금융 서비스의 범위에는 채권 추심, 금융리스(equipment leasing), 신용관리, 회계서비스, 투자 안내, 화재 및 일반보험, 자문(advice)은 포함하지 않음⁴¹⁶⁾
- 2005년 1월부터 금융기관의 특정 금융 중개 서비스는 GST 면세에서 영세율⁴¹⁷⁾의 전환을 허용하였음
 - 과세 GST 등록 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서비스는 영세율을 적용함
 - 공급받는 GST 등록 사업자의 특정 12개월 기간(공급이 이루어진 과세 기간 포함) 동안 이루어진 과세 공급은 해당 기간 동안의 총 공급액의 75% 이상이거나 또는
 - 공급받는 GST 등록 사업자가 75%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특정 12개월 기간 동안 기준을 충족하는 그룹에 속하여야 함
 - 그러나 공급받는 자인 GST 등록 사업자가 최종소비자 또는 면세 사업자에게 금융 중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의 적용을 배제함
 - (매입세액공제) 영세율을 적용하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지불한 매입세액은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공제) 한편 다른 금융기관(직접 공급자)에 금융기관이 공급하는 면세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⁴¹⁸⁾
 - 면세 금융기관 간 금융 서비스 거래 대부분은 영세율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

416) Inland Revenue Department National Office(2004), p. 54

417) Newzealand GST sections 11A(1)(q) and (r)

418) Newzealand GST section 20(3)(h); Newzealand GST section 20C;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계산은 다음 산식을 따름

$$a \times (b \div c) \times (d \div e)$$

a: GST 등록 사업자가 수행한 금융 서비스가 모두 과세 공급이라면 GST section 20(3)(h)를 제외하고 section 20(3)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 총액

b: 한 과세기간 동안 등록 사업자가 다른 금융기관(직접 공급자)에 수행한 면세 금융 서비스

c: 한 과세기간 동안 등록 사업자가 수행한 면세 금융 서비스의 총액

d: section 20C에 따라 결정된 과세 기간 동안 직접 공급자가 수행한 과세 공급가액(영세율 금융 서비스 포함)

e: section 20C에 따라 결정된 과세 기간 동안 직접 공급자가 수행한 총 공급가액

함에 따라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축소하지 못함⁴¹⁹⁾

- 그래서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매입세액에서 공급받는 다른 금융기관의 과세 공급
가액 비율을 고려하여 공급자인 금융기관의 매입세액 중 추가 공제를 허용함

□ 뉴질랜드는 화재보험이나 일반보험의 보험료(premium)에 대해 15%의 GST를
부과함

- 그리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에 대해 매입세
액공제를 허용함⁴²⁰⁾

나. 이스라엘

□ 현재 이스라엘은 금융기관의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고
금융기관⁴²¹⁾의 급여 및 이윤을 대상으로 하는 17%의 임금 및 이윤세를 부과함⁴²²⁾

419) Inland Revenue, "Amendments to the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85",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new-legislation/act-articles/taxation-annual-rates-trans-tasman-savings-portability-kiwisaver-and-remedial-matters-act-2010/remedial-matters/amendments-to-the-goods-and-services-tax-act-1985>, 검색일자 : 2024. 2. 21.

420) <https://www.taxpolicy.ird.govt.nz/publications/2020/2020-ip-gst-issues/chapter-8#current>;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하는 GST 등록 사업자가 보험사에게 과세 공급을 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때 과세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과 관련하여 보험금에 부과한 GST는 Section 5(13)에 따라 납부하여야 함; 매입세액 공제는 해당 보험계약의 공급이 과세 공급인 경우 또는 해당 보험계약의 공급 이행 시점이 1986년 10월 1일 이후였다면 해당 보험계약의 공급이 과세 공급이 되었을 경우에 한하고, 보험금이 등록 사업자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또는 수입과 관련있는 경우, 보험계약의 공급이 영세율을 적용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가 등록사업자가 아니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수익손실에 대한 권리(1982년 사고보상법, 1992년 사고희생 및 보상 보험법, 1998년 사고보험법, 2001년 사고보상법의 의미에 따른 수익)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경우, 공급자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보험계약의 공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Newzealand GST section 20(3)(d))

421) 이스라엘 부가가치세법 제1조 각 항은 금융기관을 "(1) 수표로 요구받은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 당좌예금 계좌로 자금을 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 (2) 제1항이 적용되는 회사 또는 협동조합을 명칭으로 지칭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적법하게 명칭의 일부로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회사 (3) 이스라엘 은행법(1954-5774)에 정의되어 있으며 해당 법에 따른 유동성 조항이 적용되는 금융 기관 (4) 보험사 (5) 재무부 장관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함. (5)항의 재무부 장관령에 따르면 금융기관으로 "(1) Tel Aviv Stock Exchange Ltd.의 회원이고 사업 매출의 75% 이상이 금융 기관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2) 뮤추얼펀드법에 정의된 수탁자 또는 펀드매니저인

- 과거 1976년 부가가치세법 도입 당시부터 1979년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 가산 방식(additinal method)을 이용하여 금융과 보험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바 있었음⁴²³⁾
- 그러나 부가가치세제도의 송장을 기반으로 하는 전단계세액공제 방식과 다른 가산 방식이 갖는 한계⁴²⁴⁾로 인해 1979년부터 금융 및 보험 서비스를 부가가치세제의 영역에서 제외하고 현재 별도 세목을 적용함

다. 남아프리카

- 남아프리카는 좁은 의미의 금융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하고, 수수료 기반 금융 서비스와 단기 보험은 과세함⁴²⁵⁾
- 1991년 금융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하였으나 1996년부터 명시적 수수료 기반 금융 서비스와 단기 손해 및 재산 보험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
- 단기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수령하는 보험료 총액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 간 마진에 대해 과세하는 현금흐름방법을 토대로 함
 - 보험금을 수령하는 피보험자의 GST 등록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⁴²⁶⁾

사업자로서 거래액의 75% 이상이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 (3) 외화 또는 유가증권이나 기타 양도성 서류(상환 또는 환매를 받을 목적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해당)매매에 종사한 자”가 있음 (הטלת המס על מוסד כספי, 'אלכסנדר שפירא ושות', <https://www.capitax.co.il/content/2/358>, 검색일자, 검색일자 2024. 1. 16.)

422) 이스라엘 부가가치세법 제4조(b); 금융기관 외에도 비영리기관의 활동에 대해 지급한 급여에 대해 급여세를 부과함(이스라엘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a항)

423) Alan A. Tait(1988), p. 92

424) Alan A. Tait(1988, p. 92)는 이스라엘의 가산방식이 갖는 한계로 (i) 송장(invoice)을 근거로 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ii) 국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의 적용으로 세수 기반의 축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만일 영세율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국제 거래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고 (iii)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급여와 이윤은 부가가치 자체와 다름을 지적함

425) South African Institute of Taxtion, “SA has one of the broadest VAT bases on financial services,” <https://www.thesait.org.za/news/249648/SA-has-one-of-the-broadest-VAT-bases-on-financial-services-.htm>; <https://www.pwc.co.za/en/assets/pdf/on-point-vat-on-financial-services-3rd-edition.pdf>; https://zaguan.unizar.es/record/123841/files/texto_completo.pdf, 검색일자: 2024. 1. 16.

라. 아르헨티나

- 아르헨티나는 금융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를 과세함
 - 은행 및 금융기관법(the Banking and Financial Institutions Law)에 따른 금융기관의 은행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10.5%의 경감세율을 부과함⁴²⁷⁾
 - 총이자수익(gross interest on loans)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이 경우 이자비용과 상계할 수 없음⁴²⁸⁾
 - 투자 및 재무 자문, 회계, 투자 관리, 부채 추심 및 신용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등 금융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과세함

426) PricewaterhouseCoopers(2006b), p. 82

427) The Lloyds Bank International Trade Portal, "Tax rates in Argentina," <https://www.lloydsbanktrade.com/en/market-potential/argentina/taxes>, 검색일자: 2024. 1. 16.;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은 21%임

428) 1992년 아르헨티나는 자금에 대한 소비자 수요를 축소시켜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고자 총이자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금융기관의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인정된 특정 연금 기금에 대한 이자, 주택 구매 및 개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대출에 대한 이자 등은 면세함(Alan Schenk and Howell H. Zee, 2004)

V. 국제비교 및 결론

1. 국제비교

가. 부가가치세

1) 개요

- 우리나라와 조사국 모두 전단계세액공제 방식의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 또는 GST 제도를 운용함
 - 유럽연합 회원국인 프랑스, 독일은 각각 1954년, 1968년에 부가가치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1977년 공개하고 2006년 개정된 EU 부가가치세 준칙 규정을 실정법에 상당히 반영함
 -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를 시행하였는데 도입 당시 EU 부가가치세 준칙을 모태로 하였지만 현재 국내 상황에 맞춰 실체화함
 - 호주, 싱가포르의 부가가치세제도를 2000년, 1994년에 각각 도입하여 다른 조사국에 비해 최근 제도화함

- 우리나라, 호주, 싱가포르의 세율은 단일비례세율이며 프랑스와 독일은 표준세율 외 경감세율이 있는 복수세율 체계임
 - 우리나라와 호주의 세율은 10%, 싱가포르의 경우 9%의 단일세율을 적용함
 - 프랑스 표준세율은 20%이며,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10%, 5.5% 또는 2.1%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독일 표준세율은 19%이며, 특정 항목에 대하여는 7%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조사국 모두 영세율(0%) 규정을 두고 있는데 공통으로 수출재화에 적용함

〈표 V-1〉 조사대상국의 부가가치세 제도 비교

구분	도입연도	세액계산 방법	세율체계	세율
우리나라	1977년	전단계세액공제	단일세율	10%
프랑스	1954년	전단계세액공제	복수세율	표준: 20% 경감: 10%, 5.5%, 2.1%
독일	1968년	전단계세액공제	복수세율	표준: 19% 경감: 7%
호주	2000년	전단계세액공제	단일세율	10%
싱가포르	1994년	전단계세액공제	단일세율	9%

주: 조사국 모두 수출재화에 대해 영세율(0%)을 적용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2)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 금융 용역은 우리나라와 조사국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면세로 처리하지만 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사례가 있음
 - 금융 용역은 일반적으로 면세 처리하지만 뉴질랜드는 과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금융 중개 서비스는 영세율 처리하고 아르헨티나는 총이자수익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있음
 - 보험 용역의 경우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GST를 과세함
- 그리고 금융과 보험 용역을 면세 처리하더라도 국가별로 면세 범위에 차이가 있는데, 다음 본문에서 금융 용역과 보험 용역을 구분하여 상세 내용을 비교함

가) 금융 용역

-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국은 면세대상 금융 용역의 유형 또는 범위를 구체적인 역
무로 열거하여 규정함
 -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40조에서 금융관련법률에 따른 업(종)을 열거
하여 대부분 금융업을 면세 처리하고 그 업종에 속한 금융기관의 사업이나 역무에
대해 달리 면세 규정은 두지 않음
 - 다만 은행업은 은행 업무와 부수업무로서 면세대상인 역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함
 - 공적금융기관, 자산유동화회사, 벤처투자·투자조합 등에 대하여 자산 관리 또는
운용·처분 업무만을 면세대상으로 열거함
 - 호주는 이자와 관련한 금융 공급에 대하여 면세하며, 시행령에서 면세대상 역무를
예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함
 - 싱가포르의 금융의 본질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금융 용역의 역무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열거하지 않은 역무는 과세되는 것으로 봄
 - 프랑스와 독일은 면세대상 금융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EU 부가가치세 준칙에 규정된 면세 범위와 거의 유사함
- 공통으로 면세 처리하는 금융 용역 대부분은 은행 및 금융기관의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은행계좌 관련 업무, 대출, 신용, 보증, 유가증권·파생상품 등의 거래,
화폐교환(환 업무), 지급결제 업무 등이 있음
 - 우리나라는 대출거래가 아닌 ‘금전대부업’, 신용·보증거래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업’,
유가증권·파생상품거래가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등으로 규정하여
다른 조사국의 면세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함
 - 싱가포르는 예외적으로 이슬람 관련 금융서비스는 면세 처리하고, 비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중에서 은행예금과 외환차손익도 면세로 규정함
- 면세로 열거하지 않은 수수료 기반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는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 조사국은 제한적으로 면세 처리함

- 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중개·주선서비스의 경우 호주와 싱가포르, 프랑스는 일반적으로 과세함
 - 우리나라는 기업합병(매각)의 중개·주선·대리에 한하여 과세함
 - 호주는 수수료 기반 금융 공급은 일반적으로 과세하지만 호주 예금수취기관(ADI)의 수수료 수익이 1천호주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함
 - 독일은 금융 용역 관련 중개거래를 면세 처리하지만 과세전환이 가능함
- 채권추심 용역은 우리나라와 조사국 모두 과세대상으로 봄
- 기타 전문서비스 등의 업무에 대한 과세 여부는 국가별로 상이함
 - 우리나라는 신용정보 서비스, 은행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판매·대여는 과세함
 - 호주는 정보·자문 용역 등의 전문서비스와 지급시스템 서비스, 신탁, 연금, 펀드 관련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함
 - 싱가포르는 금융 서비스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는 전문 서비스는 과세함
 - 독일과 프랑스는 유가증권 보관·관리 업무에 대하여 과세하며, 프랑스는 전문 연금제도의 금융자산관리 및 연·기금 관리서비스에 대하여도 과세함
- 독일과 프랑스는 EU 부가가치세 준칙에 근거하여 면세 금융 용역에 대하여 개별 거래별로 과세전환(opt to tax)을 허용함
 - 다만 특정 거래는 과세전환을 허용하지 않음
 - 프랑스는 특정금융기관 간 거래, 이자(이자에 준하는 수수료 포함) 기반의 금융 용역, 특정 채권이나 주식 거래, 법적통화·외환거래 등에 대하여는 과세전환을 허용하지 않음
 - 독일은 특정 증권집합투자 및 대체펀드, 퇴직연금펀드 관리 업무, 우표공급은 과세전환이 불가능함

〈표 V-2〉 조사국별 금융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구분	면세	과세	과세 전환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의 은행 업무 및 부수업무 • 「자본시장법」상 열거된 금융투자업 (투자자문업은 제외) • 외국환 업무 • 상호저축은행업 • 신용보증기금업 • 여신전문금융업(신용카드, 시설대여,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업) • 금전대부업 • 특정 기관 등¹⁾이 제공하는 자산 관리 또는 운용·처분 용역 •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 금융·보험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권, 입장권, 상품권, 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 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 기업합병(매수)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대여 용역 및 이와 유사한 용역 • 부동산 임대 용역 • 감가상각자산 대여 용역(시설대여업자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 • 특정 금융업자가 금전 등을 받아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사업 • 은행의 보호예수 업무, 채권추심 용역, 전당포업,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업(담보신탁 개발신탁 제외)²⁾ 	불가능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 관련 금융공급 및 관련 부수 용역: 은행계좌, 신용장(권), 담보, 중신연금, 보증, 유가증권, 파생상품, 외국지점계좌 및 외국연금기금 등 관련 이자 • (은행업의 면세대상 의무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좌보유자를 위한 수표, 직불카드, 예금 및 저축계좌 운영, 유지 업무 - ATM, 전자·전화계좌 운영 - 전자자금이체, 계좌이체·지급 - 당좌대출 등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자문을 포함한 전문서비스 • 지급시스템 서비스 • 신탁, 연금, 펀드 관련 포트폴리오 관리 서비스 • 채권추심 • 팩토링 및 이와 유사한 계약 • 중개서비스 • 할부구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 및 신용제공(2012. 7. 1. 이후) • 재화에 대한 보증 등 	불가능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계좌 • 지급결제 및 화폐교환 • 채무·지분증권의 발행, 할당 또는 소유권 이전 등 • 대출, 신용공급, 할부구매, 할부신용 금융 편의의 공급 등 • 파생상품 관련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로 열거된 금융 용역 외의 업무 	불가능

〈표 V-2〉의 계속

구분	면세	과세	과세 전환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신탁 또는 사업신탁에 단위 소유권의 발행 또는 이전 • 이슬람 관련 금융서비스 • 비금융기관이 공급하는 금융서비스 중에서 은행예금과 외환차손익 	-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출 및 신용공여 협상, 신용 보증 또는 기타 증권거래, 신용공여자의 신용보증관리(중개수수료 제외) • 예금 및 당좌예금, 지급, 이체, 채권, 수표 및 기타유통증권 관련 거래 • 법정화폐 거래 • 유가증권의 거래 • 양도성 유가증권, 대체투자펀드 및 유사집합투자회사의 관리 업무 •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 거래(산업용 외) • 지급결제 또는 신용카드발급수수료 • 수입인지 및 우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공여자가 아닌 자에 의한 대출 또는 신용·보증관리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 • 채권 추심 • 수집용 화폐, 금과·골드바 거래(금융기관에 대한 인도는 제외) 등 • 전문연금제도의 금융자산관리, 연·기금관리서비스 • 면세로 열거된 용역 이외의 업무 	가능 ³⁾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공여 및 중개·주선 • 법정통화 공급 및 중개 • 수표, 채권, 기타상업어음 등 판매 및 중개 • 예금 및 당좌계좌, 지급, 은행이체, 기타기업어음 추심 관련 거래 및 중개 •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중개 • 지분증권 거래 및 중개 •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의 인수 및 중개 • 특정 투자펀드의 관리 • 우표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목적 화폐 거래 • 채권 추심 •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금고 대여 • 면세로 열거된 용역 이외의 업무 	가능 ⁴⁾

주: 1.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역무는 예시적이며, 면세대상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대상으로 처리함

1) 공격금융기관, 자산유통화회사 및 자산관리자, 특정 벤처투자·투자조합 등을 말함

2) 과거 면세 금융 용역에 열거되어 있었으나 세법개정을 통하여 과세 전환(면세대상에서 삭제)된 것으로 현행법령상 과세대상으로 열거된 것은 아님

3) 특정금융기관 간 거래, 이자(이자에 준하는 수수료 포함) 기반의 금융 용역, 특정 채권이나 주식 거래, 법적통화·외환거래 등의 특정 면세 금융 용역은 과세전환대상에서 제외함

4) 특정 증권집합투자 및 대체펀드, 퇴직연금펀드 관리 업무, 우표공급은 과세 전환대상에서 제외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한편 대부분 국가가 면세 처리하는 금융 용역에 대해 다르게 부가가치세 처리를 하는 사례가 있는데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의 제도가 그러함
 - 뉴질랜드는 2005년부터 과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금융 중개 서비스는 영세율로 처리하고 수수료 기반 금융 서비스(채권추심, 신용관리 등)는 과세함
 - 아르헨티나는 금융 용역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과세하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이자수익에 대한 이자비용은 차감하지 않고 대신 21%의 세율 대신 10.5%의 경감세율을 적용함
 - 이스라엘은 금융과 보험 서비스를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제 범주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의 부가가치(급여 및 이윤)에 대해 17%의 별도 세목을 적용함

나) 보험 용역

- 우리나라와 프랑스, 독일은 일반적으로 모든 유형의 보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 호주와 싱가포르의 생명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손해보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우리나라는 생명보험(연금·퇴직보험 포함), 손해보험, 재보험 등 거래를 면세함
 - 프랑스와 독일은 EU 부가가치세 준칙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보험 및 재보험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⁴²⁹⁾
 - 호주는 생명보험과 관련된 재보험을 금융서비스의 범주에 포함하여 GST를 면세하며, 생명보험이 아닌 일반보험과 관련 재보험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민영건강보험이나 여행보험, 국제운송재화 관련 보험은 영세율을 적용함
 - 싱가포르는 생명보험, 재보험, 사회보장제도(CPF)에 따른 보험과 연금은 GST를 면세하지만 그 외 일반보험은 과세함

429) 프랑스와 독일은 생명보험(연금보험 포함) 및 재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의 보험계약에 대해 별도 세목인 보험세를 부과함

-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는 면세 보험 용역과 관련한 보험중개 및 대리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면세 처리하지만, 호주 및 싱가포르는 과세함
 - 우리나라는 보험의 중개·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일정한 자가 제공하는 보험 업무 대리 용역 및 보험모집 용역을 면세함
 - 호주는 생명보험이 아닌 일반보험의 중개·대리 업무는 과세하고 싱가포르는 보험계약(재보험계약 제외)의 주선·중개 서비스에 대하여 과세함
 - 프랑스와 독일은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는 보험 및 재보험 거래, 보험의 중개·대리 업무에 대하여 면세함

- (손해사정, 보험계리 등 전문서비스)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국은 보험 관련 전문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함
 - 우리나라는 보험(연금)계리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만 손해사정 용역, 보험조사, 보고 용역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면세를 적용함
 - 프랑스와 독일은 보험거래와 관련한 손해처리 대리 업무, 지원부서 또는 행정 및 관리 업무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보험계리 용역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을 확인하지는 못했으나, EU 부가가치세 준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으로 추정함
 - 호주는 보험계리 용역 등 정보 및 자문을 포함한 전문서비스를 과세함
 - 싱가포르는 법에서 열거하는 면세 범위에 손해사정이나 보험계리 용역을 포함하지 않고, 전문 서비스를 과세하므로 보험 용역 관련한 전문 서비스는 과세할 것으로 보임

〈표 V-3〉 조사국별 보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규정

구분	면세	과세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 손해보험(자동차보험, 재보험 포함) • 제3보험(상해·질병·간병보험) • 보험의 중개·대리 업무 • 손해사정 용역, 보험조사, 보고 용역 • 보험계약의 체결·보험료의 영수·납입 등 보험 업무 대리 용역²⁾ • 보험모집 용역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연금)계리 용역
호주 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 및 관련 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보험(생명보험 외) 및 관련 재보험 • 전문서비스(정보·자문, 보험계리 용역 등)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보험계약의 공급, 소유권 이전 • 싱가포르 국민연금펀드(CPF)의 보험보장 또는 연금의 공급 • 재보험계약의 공급 및 소유권 이전, 재보험계약의 중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의 주선·중개⁴⁾·인수·자문 서비스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 및 재보험거래 • 보험거래와 관련하여 자격 있는 보험중개 기관 등이 제공하는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또는 관리 용역 등의 백오피스 업무 (손해처리 대리 업무, 정보기술시스템, 회계·재무감사 용역 등)⁵⁾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세법」에 따른 보험약정에 근거한 보험거래 • 보험보장 용역 •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의 수행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세법」상 계약에 따르지 않는 것 (예: 증권사가 제공하는 보증보험) • 지원부서 활동, 행정 및 관리 업무(보험료 징수, 보험관련 검사·계산, 손해배상 등)⁵⁾

주: 1) 민영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 여행보험, 국제운송재화 관련 보험은 영세율 적용함

2) 주무관청에 등록을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함

3)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의 고용관계 없는 사용인으로서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자가 제공하는 것에 한함

4) 재보험계약의 중개서비스는 제외함

5) 독일과 프랑스의 보험 용역에 대한 면세 및 과세 규정은 EU 부가가치세 준칙을 따르므로, 보험과 관련한 단순 지원, 행정, 관리 업무에 보험계리 업무 등이 포함된다고 추정함(EU 부가가치세 준칙에서는 보험계리(actuarial) 업무를 과세대상 보험 및 재보험서비스로 취급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 일반보험을 과세하는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공통으로 보험계약을 토대로 보험 프리미엄에 대해 GST 세율을 적용하고, 보험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입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함
 - 호주는 보험금 지급액의 11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싱가포르는 현금 보험금 지급액에 대해 109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입세액에서 공제함

3) 면세로 인한 누적효과 완화 방안

가) 과세전환

- 매입세액 불공제액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서비스에 대해 과세전환 하거나 영세율을 적용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허용함
 - 독일과 프랑스는 EU 부가가치세 준칙에 따라 면세대상인 금융 서비스의 과세전환을 허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허용함
 - 과세전환을 허용하는 금융 서비스의 범위는 제한되지만 거래건 별로 과세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뉴질랜드의 경우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면세 금융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을 허용하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허용함
 - 우리나라는 면세 사업자의 과세전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금융 및 보험 용역은 적용 배제함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 우리나라와 조사국이 채택한 전단계세액공제방식의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중간 투입물의 소비나 투자를 위해 지불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지만, 면세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지급한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않음

- 과세 사업(영세율 포함)과 직접 연관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며, 법률에서 정하는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인 경우에는 항상 불공제함
 - 과세 및 면세의 겸업사업에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일반적으로 총 매출액에서 과세사업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하여 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함
- 금융기관이 지급한 매입세액이 면세 사업과 직접 연관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할 수 없는데, 호주와 싱가포르는 금융기관이 지급한 매입세액에 대해 일정 부문 공제를 허용함
- 호주는 금융기관이 아웃소싱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지급하는 매입세액은 55% 또는 75%의 경감공제율로 공제할 수 있음(경감매입세액공제)
 - 연결부가가치세 적용에 따른 내부 조달과 경우와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함
 - 싱가포르는 공통매입세액 계산의 간소화 목적으로 매입세액에 대해 금융기관 유형별로 72%에서 94%의 개선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제30조 특례)
- 우리나라, 호주와 싱가포르는 겸업사업자의 면세 사업 비중이 미미한 경우 면세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함
- 우리나라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함
 - 해당 과세기간 중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의 5% 미만인 경우(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
 -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였다가 공급(매각)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호주는 금융 공급의 수행을 위한 취득으로 인한 매입세액이 15만호주달러 또는 매입세액 총 공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 공급과 관련한 사업목적의 금융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함

- 싱가포르는 면세 공급액이 (i) 월평균 4만싱가포르달러 이하이고, (ii) 해당 기간 면세 공급액이 총 공급액(과세와 면세의 합계)의 5% 이하인 경우에는 면세 공급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음
- 뉴질랜드는 금융기관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영세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통해 조사국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방안을 운용함
 - 과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특정 금융 서비스를 영세율로 처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 금융 서비스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이전 단계의 과세사업자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은 공제함
 - 동시에 면세 금융기관 간 거래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데 금융 서비스를 공급받는 금융기관의 과세 공급가액 비율을 고려하여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매입세액 중 일부를 공제함(의제매입세액공제)

〈표 V-4〉 조사국별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처리

구분	일반 규정	금융·보험 용역 관련 매입세액
우리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사업: 공제 • 면세사업: 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불공제 • 예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전체 매입세액 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제외) (ii)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iii)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하였다가 공급(매각)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 과세·면세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공제
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사업: 공제 • 면세사업: 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불공제 • 예외: 금융 공급의 수행과 관련한 취득금액 관련 매입세액이 15만호주달러 또는 매입세액 총 공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금융 공급과 관련한 사업목적의 금융 취득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허용 • 금융·보험 용역 관련 특례: 다음의 매입세액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특정 금융 공급¹⁾과 관련한 취득에 대하여 75% 경감매입세액공제 허용 (ii)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등에 따라 지급한 현금 보험금에 대한 간주매입세액

〈표 V-4〉의 계속

구분	일반 규정	금융·보험 용역 관련 매입세액
싱가포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사업: 공제 면세사업: 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불공제 예외: 면세 공급액이 (i) 월평균 4만싱가포르 달러 이하이고, (ii) 해당 기간 면세 공급액이 총 공급액(과세와 면세의 합계)의 5% 이하인 경우(최소허용기준) 면세 공급분 매입세액 공제 가능 금융·보험 용역 관련 특례: 다음의 매입세액 공제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비금융기관인 사업자가 수행하는 특정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직접 귀속하는 매입세액 (ii) 은행의 개산 매입세액공제(72~94%)²⁾ (iii) 손해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등에 따라 지급한 현금 보험금에 대한 간주매입세액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사업: 공제 면세사업: 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불공제 과세·면세경영사업자의 공동매입세액: 안분공제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사업: 공제 면세사업: 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칙: 불공제 과세·면세경영사업자의 공동매입세액: 안분공제

주: 1) 호주의 경감매입세액공제는 대부분 금융기관의 아웃소싱 서비스 관련 취득에 해당함(호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Section 70-5.02)
 2) 싱가포르의 개산 매입세액공제는 과세·면세 귀속 및 공동매입세액 안분계산의 간소화 목적임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다) 연결부가가치세

- 우리나라를 제외한 조사국 모두 연결부가가치세를 운용하며, 그룹회사 간 내부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거래로 취급하지 않음
 - 독일은 1934년부터 연결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고, 싱가포르와 호주는 각각 1993년, 2000년에 도입하였으며, 프랑스는 2023년부터 시행함
 - 호주, 싱가포르, 프랑스는 연결부가가치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독일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결부가가치세를 의무 적용하여야 함
 - 프랑스는 연결부가가치세를 한번 선택하면 3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국가들은 의무적용기간을 두고 있지 않음

- 조사국의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GST) 등록 사업자를 중심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연결그룹 내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는 모회사가 자회사(그룹사)의 지분이나 의결권을 50%를 초과하고, 호주는 90% 이상 보유하여야 함
- 조사국 모두 연결부가가치세 적용 시 업종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표 V-5〉 조사국별 연결부가가치세제 도입 현황

국가	도입여부	도입연도	강행규정	업종제한	연결지분비율	의무적용기간
우리나라	×	×	×	×	×	×
호주	○	2000년	×	×	90% 이상	×
싱가포르	○	1993년	×	×	50% 초과	×
프랑스	○	2023년 ¹⁾	×	×	50% 초과	3년
독일	○	1934년	○	×	50% 초과	×

주: 1) 프랑스는 그룹의 부가가치세를 통합하여 납부할 수 있는 통합납부제도는 2012년부터 도입하였으나 납부뿐만 아니라 신고도 가능한 연결부가가치세는 2020년 12월 29일 세법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 정리함

나. 기타 간접세

- 조사국 중 호주, 싱가포르를 제외한 우리나라, 프랑스, 독일은 면세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외의 기타 간접세를 부과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교육세, 프랑스는 보험세와 급여세, 독일은 보험세를 운용함
- 우리나라는 일정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0.5%의 세율로 교육세를 부과함
 -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는 대부분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됨

-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는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파생상품 등의 거래 및 외환매매의 순손익,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이익, 「보험업법」상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평가이익, 기타영업수익 등을 포함함
 -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국외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재보험 관련 보험료 및 수수료, 일정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문·일임 수수료, 특수은행의 특정 수입이자 및 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 (보험세) 프랑스와 독일은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401조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보험프리미엄)에 대하여 보험세를 부과함
 - 수입보험료(보험프리미엄)란 보험계약을 기초로 하여 위험을 보장하는 대가로 보험사가 수령하는 금액을 말함
 - 프랑스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보험료 및 그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받는 수수료 등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
 - 독일은 보험계약을 기초로 수령하는 모든 유형의 금액(보험료, 납입금, 선급 보험료, 추가납입금 등)에 대하여 과세함
 - 다만 프랑스와 독일 모두 재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등을 포함한 특정 보험유형에 대하여는 보험세를 과세하지 않음

- (급여세) 프랑스의 경우 면세사업자 또는 겸영사업자이나 직전연도 매출액의 90% 이상이 면세인 자에 대하여 급여세를 부과함
 - 급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급여)에 대하여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4.25~13.6%를 과세함
 - 다만 (전)전연도 또는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기업가, 특정 농업고용주, 정부기관 및 특정(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급여세를 면제함

〈표 V-6〉 조사국별 금융·보험 용역 관련 기타간접세

구분	세목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면세대상
우리나라	교육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특수은행 포함)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 금전대부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환전영업자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수익금액 ¹⁾	0.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국외발생 수익금액 등 특정 수익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²⁾
호주	n/a	n/a	n/a	n/a	n/a
싱가포르	n/a	n/a	n/a	n/a	n/a
프랑스	보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 보험계약자 	수입 보험료 ³⁾	9% ⁴⁾	재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특정 화물차량 관련 보험 등
	급여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사업자 직전연도 매출액의 90% 이상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겸영사업자 	직원에 대한 보수(급여)	4.25 ~13.6%	소규모기업자, 농업고용주, 정부기관, 특정(공공)기관
독일	보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회사 보험중개인 또는 대리인 보험계약자 	수입 보험료 ⁵⁾	19% ⁶⁾	재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및 실업보험 등

주: 1) 우리나라 교육세 과세표준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수입할인료, 위탁자보수 및 이익분배금, 파생상품 등의 거래 및 외환매매의 순손익, 수입입대료, 고정자산처분이익, 「보험업법」상 변액보험계약 특별계정 평가이익, 기타 영업수익 등을 포함함

2) 예를 들어 재보험 관련 보험료, 수수료, 특정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문·일임수수료, 특수은행의 특정 이자 및 수수료 등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3) 프랑스의 보험세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사가 수령하는 보험료(보험프리미엄), 보험계약에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수수료 등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이익을 대상으로 함

4) 프랑스는 특정유형의 보험에 대하여는 별도 세율을 적용함; 화재보험(30%, 24%, 7%), 자동차 관련보험(33%, 18%, 15%), 해양스포츠 등 관련보험(19%)

5) 독일의 보험세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기초로 보험사가 수령하는 보험료(보험프리미엄), 납입금, 선급보험료, 추가납입금 등 모든 유형의 금액을 대상으로 함

6) 독일은 특정 유형의 보험에 대하여는 별도 세율을 적용함; 화재보험(22%), 해양선체보험(3%), 환급형상해보험(3.8%)

자료: 본문 내용을 저자가 요약·정리함

2. 결론

- 문헌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조사국의 제도를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는 금융·보험 영역의 면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지속해서 그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과 함께 다음 사항을 관찰함
 - 첫째, 현재 수수료 기반 금융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논의는 계속 진행 중이며 대부분 조사국은 과세 범위를 확대함
 - 그러나 금융기관의 본질적 업무에 속하는 금융 및 보험 영역은 생산요소적 성격을 고려하여 대부분 조사국은 부가가치세 면세함
 - 둘째, 생산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금융기관의 면세 공급으로 인한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줄이기 위해 조사국은 과세전환, 연결 부가가치세제, 특례적 성격의 매입세액공제 등 방안을 부가가치세제에 채용함
 - 셋째, 대부분 조사국은 보험 영역을 금융 영역과 달리 취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매기거나, 총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율과 유사한 세율로 별도 세목으로 과세함

가. 면세 금융·보험 영역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면세하는 금융·보험 영역이 무엇인지를 정의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행하는 사업이나 역무를 열거하여 실제 수수료기반 영역에 대해 폭넓게 면세하는 특징을 보임⁴³⁰⁾
 - 첫째, 금융관련 근거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금융보조기관⁴³¹⁾이 수행하는 사업

430) 다만 비금융시장과의 조세중립성 유지 차원에서 부동산 투자를 포함한 특정 영역은 면세 금융기관이 수행하더라도 과세함. 특정 영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에서 열거하는 복권 등 대행 영역, 기업합병 등 중개·주선·대리, 신용정보서비스, 은행업 관련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 및 대여, 부동산 임대 용역, 감가상각자산 대여 용역 등과 제1항 각호의 단서규정에서 정하는 부동산·실물자산 등 투자를 말함

431) 우리나라 금융기관을 각 금융기관의 근거법률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예금취급기관(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수산립조합, 우체국),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기타금융중개기관(여신전문금융회사, 부실정리회사, 기타(대부업자, 공정대안금융기관, 유동화전문회사, 공적기금), 금융보조기관(정부출자기관, 금융투자관계회사,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기관 등)으로 구분함(강병호·김대식·박경서, 2023, p. 285)

이나 용역 그 자체를 면세로 취급하여 이미 과세로 전환한 금융 용역을 다시 면세 하는 결과를 낳음

- 예를 들자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⁴³²⁾에는 과거 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 적용을 배제한 보호예수 업무를 포함하여 상호저축은행의 보호예수 업무만을 달리 면세함⁴³³⁾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자산관리자가 하는 자산관리 사업은 면세이지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자산관리자로 규정하여 2013년부터 과세 전환한 채권추심업을 다시 면세함
- 이와 같은 면세 취급은 명시적 수수료기반 용역에 대해서도 면세를 무분별하게 적용하고 경쟁중립성을 앞세운 유사업종의 면세 전환 요청에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 둘째,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중개를 하는 금융중개기관이나 시장중개기관⁴³⁴⁾ 외에도 금융보조기관이나 비금융 근거법률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용역을 면세로 취급함

- 집합투자업에 공급하는 일반사무관리 용역이나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 등은 금융기관이 공급받는 용역에 속하는 것으로 실제 금융 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기타금융중개기관과 유사성을 띠고 있지만 실제 금융 용역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운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창업기획자 등의 자산관리 및 운용 용역,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자산 관리 및 운용 용역,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하여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음
- 전자의 예시는 금융기관의 매입세액 불공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면세 범위의 확대보다는 본질적인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4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5호

433)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7호

434) 금융중개기관(financial intermediaries)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당사자로서 자기계산으로 신용대위(credit substitution)를 하는 중개기관이고, 시장중개기관(market intermediaries)은 단순히 증권의 매매중개역할을 하는 기관을 말하며 협의의 금융기관은 금융중개기관을 의미함(강병호, 2004, p. 3)

- 후자의 경우 특정 분야의 지원 차원에서 면세를 적용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입법을 모색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용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조사국과 달리 명시적 수수료기반 용역까지 면세 취급하여 누적효과가 발생하고 조세 중립성을 해할 수 있음
 - 예를 들자면 보험 용역의 경우 비유럽권 국가 대부분이 부가가치세를 매김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과세 전환을 통한 누적효과의 축소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⁴³⁵⁾
- 우리나라의 광범위한 면세 취급 관행은 세무 행정의 간소화 효과에도 불구하고 면세로 인한 누적효과가 상당히 발생하여 조세 중립성을 해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조세정책의 개편이 필요함
 - 외견상으로는 면세 취급으로 금융기관의 세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매입세액 불공제액과 면세 금융기관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고려하면 세부담은 실제로 낮은 수준이 아닐 수 있음

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액

- 부가가치세제는 생산 중간 단계에 놓여 있는 은행(면세)이 투입물의 소비 또는 투자 과정에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하지 않음으로써 은행을 최종소비자처럼 취급함 ([그림 V-1] 참조)
 - 대표적인 면세 금융기관인 은행은 중간 투입물을 소비할 때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손익계산 시 비용으로 처리함
 - 은행이 최종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과세사업자¹에게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최종소비자에게 넘겨씌우기 때문에 누적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435) 손해보험사의 수입 보험료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말 78조 8천억, 2019년 말 81조 7천억, 2020년 말 86조 1천억, 2021년 말 90조 4천억, 2022년 말 95조 3천억이고 손해액과 환급액 규모는 연도 별로 52조 9천억, 58조 7천억, 63조 4천억, 65조 4천억, 70조 9천억임(<별첨 4의 <표 3> 참조)

- 그러나 은행이 과세사업자3과 거래할 때는 최종소비자 경우와 다르게 누적효과가 발생함
 - 은행의 매출을 면세로 처리함에 따라, 과세사업자3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 과세사업자3의 부가가치 외에도 이전 단계부터 누계한 부가가치와 매입세액 불공제액에 다시 한 번 부가가치세를 매기게 됨

[그림 V-1] 생산 중간 단계에 은행이 놓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자료: 저자 작성함

- 생산 단계에서 면세 금융기관이 중간에 놓여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효과를 간략하게 비교하면, 은행과 과세사업자3의 부가가치세 부담 수준과 가격 결정 수준이 그렇지 않는 경우의 그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음⁴³⁶⁾(〈표 V-7〉 참고)
- 은행이 과세사업자3에게 면세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서 과세사업자1에게 지불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포함한 공급가액으로 과세사업자3에게 매출하고, 과세사업자3은 은행이 전가한 매입세액 불공제액을 포함하여 과세사업자3의 공급가액을 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매출함⁴³⁷⁾
 - 이 경우 은행이 생산한 부가가치 대비 부가가치세 부담비율(20%)은 과세일 때의 경우(10%)보다 높음
 - 과세사업자3은 중간 투입물을 각각 160원(면세)과 150원(과세)으로 소비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한 공급대가는 각각 231원(면세)과 220원(과세)으로 소비의 비탄력성을 전제로 할 때 은행(면세)이 관여한 경우 가격요인이 인상함

436) 면세 금융기관이 이전 단계의 과세사업자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은 그 다음 단계로 전액 가격 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함

437) 면세 금융기관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인 경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위탁 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자1이 과세사업자3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설대여업자에게는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발생하지 않고, 과세사업자3은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효과가 발생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 세수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은행이 중간단계에 관여한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 각각 31원(면세)과 20원(과세)으로 나타남
 - 차액 11원은 과세사업자1에게 은행이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원과 그에 대해 10%의 세율을 적용한 1원의 합계임⁴³⁸⁾

〈표 V-7〉 금융과 보험 영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 효과

구분	중간 투입물		부가가치 (c)	공급가액 (d= a+b+c-g)	부가가치세 계산 및 납부			부담세액 (i=f-g+g')	공급대가 (d+f)	부가가치 대비 납부세액 (h/c)	부가가치 대비 부담세액 (i/c)	
	매입가액 (a)	매입세액 (b)			매출세액 (f) ¹⁾	매입세액						납부세액 (h=f-g)
						공제 (g)	불공제 (g')					
1. 면세 금융기관(현행)												
과세 ¹⁾	0	0	100	100	10	0	-	10	10	110	10	10
은행 ²⁾	100	10	50	160	0	0	10	0	10	160	0	20
과세3	160	0	50	210	21	0	-	21	21	231	42	42
소비자	210	21	-	-	-	-	21	-	21	-	-	-
국세청			200		31			31				
2. 과세 금융기관(가상)												
과세1	0	0	100	100	10	0	-	10	10	110	10	10
과세2	100	10	50	150	15	10	-	5	5	165	10	10
과세3	150	15	50	200	20	15	-	5	5	220	10	10
소비자	200	20	-	-	-	-	20		20			
국세청			200		45	25		20				

주: 1. (i) 사업자는 겸업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ii) 세금계산서에 표시한 매입세액만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iii) 면세 금융기관이 이전 단계의 과세사업자에게 지불한 매입세액은 그 다음 단계로 전액 가격이전할 수 있다고 가정함

- 1) 매출세액(f)은 공급가액에 과세 10%의 세율, 면세 0%를 적용하여 산출함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거래 중간에 놓여 있는 경우,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 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특례 규정에 따라 과세사업자1이 과세사업자3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음

자료: 저자 작성함

438) 면세단계에서 포기한 부가가치세가 그 다음 단계에서 국고로 환수되어 면세효과가 취소되는 환수 효과와 면세단계의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다음 단계의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액으로 징수하게 되어 면세 기관이 관여한 거래단계 전체에서의 부가가치세 징수액이 그렇지 않은 경우의 부가가치세보다 많아지는 누적효과가 발생함

- 면세 금융기관이 투입물을 내부에서 자체 조달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 불공제를 피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주요 재화 또는 용역을 면세로 전환하여 내부조달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함
 - 우리나라 금융·보험 용역의 면세 범위가 넓은 배경은 유사 금융업 간 경쟁중립성 유지라는 취지도 있지만,⁴³⁹⁾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줄이는 측면도 주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음⁴⁴⁰⁾
 - 금융기관을 둘러싼 공급사슬 전후 단계에 놓여 있는 과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면세로 전환하여 연결부가가치세를 도입한 것과 유사한 효과를 도모하고 세무 행정을 간소화함

- 대부분 조사국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를 중심으로 과세전환제도 또는 특례적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운용함
 - 다만 금융의 과세전환제도는 EU 회원국 일부⁴⁴¹⁾에서 제한적으로 운용함
 - 연결부가가치세 제도는 많은 국가가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축소를 위해 도입하지만, PWC(2011)에 의하면 실제 효과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⁴⁴²⁾
 - 연결부가가치세제는 금융기관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부가가치세제 범위 밖으로 처리하지만 외부거래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 여전히 불공제가 발생함
 - PWC(2011)는 유럽 주요 은행의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를 집계하여 공개하였는데, 벨기에, 프랑스, 독일,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영국 등이 부가가

439)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 「자본시장법」으로 자본시장 참여자의 칸이 헐거워짐에 따라, 유사 금융업 간의 경쟁중립성 유지를 취지로 하여 본질적 금융 활동으로 볼 수 없는 사업, 역무, 용역을 면세 범위로 편입함

440) 동일한 취지로는 오윤(2010), p. 73.

441) 금융의 과세전환제도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리투아니아, 폴란드가 도입함

442) EU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누적효과 완화수단은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외 과세전환제도, 비용분담약정(cost sharing arrangement)을 들 수 있음. 그러나 비용분담약정은 2017년 유럽재판소가 비용분담약정은 금융기관에게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여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고, 과세전환제도는 2023년 현재까지 적은 수의 회원국만 채택하고 있어 연결부가가치세 제도가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임. 그러나 PWC 보고서(2006a, 2006b)에 따르면 유럽연합 주요 은행의 매입세액 불공제액 규모가 상당하고 유럽연합 내에서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축소를 위한 여러 방안을 현재도 논의 중인 것으로 보아 연결부가가치세 제도 자체가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보이지 않음

치세 세수입 대비 높은 매입세액 불공제액 비율을 보임(〈표 III-1〉 참조)

-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는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와 함께 금융기관의 매입세액의 공제 수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운용하는데 살펴볼 필요가 있음⁴⁴³⁾
- 세 국가 모두 과세사업자1과 은행 간 거래(〈그림 V-1〉 참조)에서 면세인 은행이 과세사업자1에 지불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대상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하거나 환급하여 은행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모를 축소함
 - 싱가포르의 제도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 계산 없이 금융기관 유형별로 72%에서 94%의 개선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무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서 우월하지만 2025년 제도의 폐지를 고려 중임
 - 뉴질랜드의 제도는 과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금융기관의 금융 서비스를 영세율로 처리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지만, 금융시장의 규모가 상당한 경우에는 세무 행정상 비효율성이 커진다는 측면이 있음
 - 호주는 금융기관이 공급받는 특정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55% 또는 75%의 경감공제율을 적용하여 불공제액 규모를 축소하는데 세무 행정상 효율적이고 금융시장에 우호적임
- 조사국의 사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취하는 방안은 면세와 과세상 경계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적효과의 부작용이 금융시장은 물론 나아가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임시방편적으로 보임
- 중장기적으로 면세 범위는 합리적으로 축소하면서, 연결부가가치세 제도의 도입과 함께 매입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임

443)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에 따라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 등을 원재로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업이나 제조업 등의 과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함.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라는 점과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다음 단계의 과세사업자3(〈그림 V-1〉 참조)에 대해 실제로 지불하지 않은 매입세액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호주,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제도와 차이 있음

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 부문에 대하여 세수 기여를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많은 국가는 별도 세목을 부과하는데, 우리나라는 교육세가 이에 대응하는 세목으로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통상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세목으로 평가받음⁴⁴⁴⁾
 - EU 부가가치세 준칙에 따라 보험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세하는 EU 회원국 대부분은 보험계약에 대해 별도 세목인 보험세를 매김
 - 프랑스와 덴마크, 이스라엘은 금융·보험업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지급하는 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 급여세(또는 이윤세)를 별도 세목으로 과세함

- 교육세가 부가가치세를 대체하는 세목이라는 관점에 따르면 교육세 과세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일치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며, 실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과 교육세 과세대상 범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표 V-7〉 참고)
 -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법」 별표에서 열거하는 일부 금융·보험업자이며,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보험업자이더라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경우가 있음
 - 또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은 금융·보험 사업과 역무가 혼재되어 있지만 「교육세법」은 일부 금융·보험업자만을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열거된 특정 금융·보험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대부분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교육세 과세표준에도 별도로 포함되지 않음

444) 교육세 도입 당시 과세 대상자에 금융·보험업자를 포함한 배경으로 1982년 교육세 신설 당시 재산세에 부과하는 지방교육세가 국민 세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부가가치세 도입 전까지는 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에 대하여 1%를 영업세로 과세하였고(이예지, 2023, p. 2) 금융·보험업은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여 교육세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였기 때문임(이만우·전형준·박기범, 2006, p. 45)

- 보험업과 관련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세는 보험업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보험조사, 보고 용역, 보험모집 용역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적용되지만, 교육세는 보험회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⁴⁴⁵⁾만을 납세의무자로 규정함
-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보험업 중에서도 보험회사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제외한 자에게는 교육세를 매기지 않음
 - 추가로 「교육세법」은 특정 수익금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금융·보험업과 비교해 볼 때 현재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 납세의무자는 금융·보험업의 범위가 빠르게 확장되고 변화하는 현상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2000년 이후로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는 금융·보험 관련 역할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온 것과 달리 교육세 과세대상 금융·보험업자는 2009년 및 2024년에 일부 추가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음⁴⁴⁶⁾
 - 교육세 납세의무자 선정에 일관성이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은 다수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음⁴⁴⁷⁾

445) 2023년 12월 31일 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됨. 법 개정 전 대법원 판례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에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금융·보험업자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는 지위로써 받는 수수료 수익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나(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두54098,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67519), 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는 금융기관이 보험대리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 또한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446) 2009년에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이 추가되었으며, 2024년부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도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됨

447) 정재현(2013), p.183, p.190: 교육세 도입 당시 증권회사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증권거래세와의 중복과세 때문이었으나 2009년 7월 세법 개정에서 유사 금융업자 간 형평성을 위하여 증권회사를 포함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 한국수출입은행을 교육세 과세대상자에 포함하였으며(정재현, 2013, p.185), 2013년에 채권추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세혜택을 유지하는 대신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조세일보』, 「채권추심업체」에 부가세 대신 교육세 과세 추진, 2012. 9. 11., <https://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53236>, 검색일자: 2024. 2. 23.) 무산되는 등 과세대상자 선정에 일관된 논리 없이 업계와 정치권의 논리에 따른다는 등 논란과 비판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

〈표 V-8〉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의 범위 비교

대분류	소분류	부가가치세		교육세		
		면세 여부 ¹⁾	시행령 40조	납세 의무 ²⁾	별표	과세표준 제외
은행	일반은행	○	① 1.	○	1호	-
	특수은행	○	③	○	2·3·7·8· 14호	일정 수수료 제외 ³⁾
공적 금융 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	③	×	-	-
	한국주택금융공사	○	③	×	-	-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	③	×	-	-
	신용보증기금업	○	① 6.	×	-	-
	주택도시보증공사	○ ⁴⁾	① 7.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관리자	○ ⁵⁾	① 12.	×	-	-
	한국투자공사	○ ⁶⁾	① 15.	×	-	-
한국해양진흥공사	○ ⁷⁾	① 20.	×	-	-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및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	③	×	-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업	○	① 5.	○	5호	-
	종합금융회사 ⁸⁾	×	-	○	4호	일정 수수료 제외 ¹⁶⁾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 ⁹⁾	① 19.	×	-	-
「자본 시장법」 에 따른 금융 투자 업자	집합투자업	○	① 2. 다	○	9호	일정 수수료 제외 ¹⁶⁾
	투자매매업·투자증개업	○	① 2. 마	○	12호	일정 수수료 제외 ¹⁶⁾
	투자일임업	○	① 2. 아	×	-	-
	투자자문업	×	-	×	-	-
	신탁 업	부동산·실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전신탁 및 부동산·부동산 관련 권리 신탁(담보신탁 및 개발신탁은 제외)	×	① 2. 라	×	10호
그 외 신탁업		○	○			

〈표 V-8〉의 계속

대분류	소분류	부가가치세		교육세		
		면세 여부 ¹⁾	시행령 40조	납세의무 ²⁾	별표	과세표준 제외
「자본시장법」에 따른 사업	일반사무관리회사	○ ¹⁰⁾	① 2. 바	×	-	-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 ¹¹⁾	① 2. 자	×	-	-
	단기금융업	○	① 2. 하	×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⁸⁾	○ ¹²⁾	① 2. 거	×	-	-
보험업	「보험법」에 따른 보험회사	○	① 8.	○	6호	-
	보험중개·대리 업무	○	① 8.	○	-	-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보험조사, 보고 용역	○	① 8.	×	-	-
	보험계약체결·영수·납입 업무, 보험모집 용역	○	집행 26-40	×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외국환 업무취급업자		○ (외국환 업무)	① 4.	○ (환전 영업자)	11호	-
기타 금융 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 ¹⁷⁾	○	① 9.	○	13호	-
	금전대부업	○	① 18.	○ ¹⁸⁾	15호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	○ ¹⁸⁾	16호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	○ ¹³⁾	① 10·11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벤처기업 등	○ ¹⁴⁾	① 13.	×	-	-
	금융결제원	○ ¹⁵⁾	① 17.	×	-	-

주: 1. 대분류는 금융기관론(강병호·김대식·박경서, 2023) pp. 285~289 참고하여 작성함
 - 은행: 일반은행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특수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개별법에 의해 은행업을 핵심 업무로 하면서 특정목적을 위해 설립된 기관. 특수은행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을 말함
 - 공적금융기관: 수익목적으로 민간사업에 참여하기보다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은행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은행에 비해 제한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금 조달 및 운용에서 은행에 비해 엄격한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
 - 금융투자업자: 직접금융시장에서 유가증권 거래 및 관련 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그룹.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업은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을 말함
 - 기타금융기관: 위 분류에 속하지 않으나 금융 업무를 주된 업무로 취급하는 기관
-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1호에 따른 면세 금융·보험업자 해당 여부
 - 2)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 금융·보험업자(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3)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무역어음재할인 발생이자, 비거주자로부터 수입한 이자·수수료 및 한국산업은행의 특정 대출 또는 투자·보증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수료 등은 과세표준에 미포함
 - 4) 보증 업무 및 주택도시보증기금의 운용·관리 업무에 한함
 - 5) 주택저당채권·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사업에 한함
 - 6)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한함
 - 7)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수행하는 보증 업무에 한함
 - 8) 「자본시장법」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종합금융회사”란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중 하나로서 종전의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함
 - 9) 공제사업 계약 체결을 대리하는 용역
 - 10) 집합투자기구 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함
 - 1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보관·관리 용역, 지분 판매 또는 환매 등의 용역에 한함
 - 12)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에 한함
 - 13) 자산유통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에 한함
 - 14) 개인투자조합 등에게 제공하는 특정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한함
 - 15)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에 한함
 - 16) 「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영위하는 투자자문업 및 투자일임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투자매매·중개업자의 공동중개 분배수수료는 과세표준에 미포함
 - 17)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함
 - 18) 미등록 사업자를 포함함
 - 19) 신탁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신탁 업무에 대한 대가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
- 자료: 본문 내용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및 「교육세법」 제3조 별표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함

- 또한 대다수 국가의 보험세 표준세율은 부가가치세의 세율과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교육세 세율(0.5%)은 부가가치세율(10%)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낮은 편임
- 우리나라의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0.5%)이 부가가치세 세율(10%)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었음⁴⁴⁸⁾

- 그러나 부가가치세 면세 금융·용역에 대한 기타 간접세를 운영하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과 유사하거나 다소 낮은 수준의 세율을 적용함
 -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는 부가가치세 표준세율을 동일하게 정하고 있으며,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포르투갈 등의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율보다 낮은 세율로 과세하지만 우리나라 보다는 높은 수준임
 - 또한 보험세를 부과하는 대다수 국가에서는 보험세 과세표준을 보험프리미엄(총 보험료 수입)으로 보며, 보험금 지급액 등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별도로 매입분에 대한 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다만 독일, 스웨덴의 경우 특정 보험에 한하여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을 경감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에 대한 교육세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음
- 교육세 납세의무자 선정 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사업 및 용역(업무)과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일관성 있는 기준이 필요함
 -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고려하여 교육세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대상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대체 세목이라는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중복과세 및 비과세 영역을 검토 및 정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와 교육세가 동시에 면세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을 함께 고려하여 제외되는 수익금액의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율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⁴⁴⁹⁾

448) 서울행정법원 2023. 4. 7. 선고 2021구합71649판결

449) 주요 국가들의 보험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세의 세율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의 부가가치세를 바탕으로 세율을 신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세율 상한의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현재 우리나라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세율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교육세 도입 이후 변경된 바 없음
- 해외국가의 금융·보험에 대한 기타 간접세인 보험세 또는 급여세 세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에 대하여 매입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음

참고문헌

- 강병호, 『금융기관론』, 박영사, 2004.
- 강병호·김대식·박경서, 『금융기관론』, 박영사, 2023.
- 국세청, 『2015년 개정세법 해설』, 2015.
- 김무열·박수진·허윤영,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관련 소비세에 대한 연구』,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김완순, 『재정학개론』, 다산출판사, 1987.
- 박명호·홍범교·김승래, 『금융·보험 및 의료보전 영역에 대한 면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미출판)
- 안종석, 『주요국의 조세제도-호주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 안창남·손승연, 『주요국의 소비세제도(I)-부가가치세 유럽연합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오윤, 「금융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결부가가치세제(VAT Group)도입에 관한 연구」, 『금융안정연구』, 제11권 제2호, 예금보험공사, 2010, pp. 33~78.
- 이만우·전형준·박기범,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2호, 한국세무학회, 2006, pp. 35~55.
- 이상엽·박수진·이은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보험 과세제도에 대한 연구』,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 이예지, 「금융·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의 쟁점과 개선과제」, 『이슈와 논점』, 제2148호, 국회입법조사처, 2023.
- 정다운·홍성희·이성현, 『연결부가가치세 과세제도 연구』, 세법연구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정재현, 「교육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조세연구』, 제13권 제1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3, pp. 179~204.

최정희, 『주요국의 소비세제 · 도(I)-부가가치세 호주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홍범교·김민경·정훈, 『외국의 금융·보험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현황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미출판)

홍범교·안종석·권오성·김유찬·안경봉, 『금융산업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부가가치세 및 교육세 개편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4.

Alan A. Tait, *Value Added Tax International Practice and Problems*, IMF, 1988.
 _____, "Value-Added Tax: Administrative and Policy Issues," Occasional Paper 88, IMF, 1991.

Altenburger, O.A., Diewald, R. and Götsche, M., "The inclusion of insurance services in the European VAT system—a problem that cannot be solved?," *Zeitschrift für die gesamte Versicherungswissenschaft*, Volume 111, pp. 339~352.

Australian Government The Treasury, "GST and general insurance",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4gst.pdf>.

Baydur, I., and F. Yilmaz, "VAT Treatment of the Financial Services: Implications for the Real Economy,"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Volume 53, Issue 8 December 2021, pp. 2167~2200.

Ernst and Young, *A study of Methods of Taxing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European Commission, 1996.

Genser, B., and Winker, P., "Measuring the fiscal revenue loss of VAT exemption in commercial banking," *Finanzarchiv*, 54, 1997, pp. 563~585.

Glenn P. Jenkins and Rup Khadka, "Value-Added Tax Policy and Implementation in Singapore," *International VAT Monitor*, Vol. 9 (March/April 1998), pp. 35~47.

Howell H. Zee, Financial Services and the Value-Added Tax, in *Taxing the Financial Sector—Concepts, Issues, and Practic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04.

- Huizinga, H., “A European VAT on financial services?,” *Economic Policy*, 17(35), 2022, pp. 497~534.
- Inland Revenue Department National Office, “Inland Revenue Department Tax Information Bulletin”, Vol 16, No 10 (November 2004), 2004.
- Insurance Europe, *Indirect taxation on insurance contract in Europe*, 2023.
- International Bureau of Fiscal Documentation, *VAT Survey Financial Services*, European Communities, December 2006.
- Laurent Quignon, “Spécificités et évolution récente de la fiscalité bancaire,” *Revue d'économie financière*, 131(3), Association Europe Finances Régulations, 2018, pp. 89~106.
- Lockwood, B., “Estimates from national accounts data of the revenue effect of imposing VAT on currently exempt sales of financial services companies in the EU,” appendix 2, in *How the EU VAT exemptions impact the banking sector*, PricewaterhouseCoopers(PWC), 2011, pp. 84~110. http://www.pwc.com/en_GX/gx/financial-services/pdf/2011-10-18_VAT_Study_final_report.pdf.
- Mark Chesham, *Insurance premium tax: a user's guide*, Spirmus Press Ltd, 2019.
- PricewaterhouseCoopers, “Economic Effects of the VAT Exemption for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Taxation Studies 0016, Directorate General Taxation and Customs Union, European Commission, 2006a.
- PricewaterhouseCoopers, “Study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Economic Effects of the VAT Exemption for Financial and Insurance Services,” Final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 2006b.
- PricewaterhouseCoopers, *How the EU VAT exemptions impact the banking sector*, 2011, http://www.pwc.com/en_GX/gx/financial-services/pdf/2011-10-18_VAT_Study_final_report.pdf.
- Tom Hivlerkus, *International Insurance Premium Tax: Trends and Recent Developments*, Derivatives & Financial Instruments, 2015 (Volume 17), No. 5, 2015.(DOI:

https://www.ibfd.org/sites/ibfd.org/files/content/pdf/dfi_2015_05_int_1.pdf,
2020. 8. 18.)

Assistant-juridique, <https://www.assistant-juridique.fr/>
 Australian Taxation office, <https://www.ato.gov.au/>
 Bakermckenzie, <https://insightplus.bakermckenzie.com/>
 Bienvenue sur Entreprendre, <https://entreprendre.service-public.fr/>
 Bloomberg tax, <https://www.bloomberglaw.com/>
 BOPIF(프랑스 재정경제부), <https://bofip.impots.gouv.fr/>
 Deloitte, <https://www2.deloitte.com/>
 IBFD, <https://research.ibfd.org/#/>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https://www.iras.gov.sg/>
 New Zealand Inland Revenue, <https://www.taxtechnical.ird.govt.nz/>
 Singapore Ministry of Finance, <https://www.mof.gov.sg/>
 Skatteforvaltningen, <https://skat.dk/>
 Smartsteuer, <https://www.smartsteuer.de/>
 South African Institute of Taxation, <https://www.thesait.org.za/>
 The Lloyds Bank International Trade Portal(영국 은행 사이트), <https://www.lloydsbanktrade.com/>
 שפירא ושות'אלכסנדר (이스라엘 법무법인), <https://www.capitax.co.il/>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독일 세무플랫폼(HAUFE), <https://www.haufe.de/>
 독일 연방재정최고법원(BFH), <https://www.bundesfinanzhof.de/de/>
 유럽연합법원(CURIA), <https://curia.europa.eu/>
 조세일보, <https://m.joseilbo.com/>

별첨 1

〈별표 1-1〉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면세대상 금융·보험 용역 개정연혁(1977~2012년)

구분	연도	'77	'89	'98	'99	'00	'01	'03	'04	'05	'06	'07	'10	'12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E	E	E	E	E	E	E	E	E	E	E	E	E
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E	E	E	E	E	E	E	E	E	E	E	E	E
-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	E ²⁾	E	E	E	E	E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통합 ⁷⁾					「자본시장법」과 통합 ⁹⁾
- 한구신물증권거래소(구,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		-	-	-	-	-	E ³⁾	E	E	E	E	E	「자본시장법」과 통합 ⁹⁾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E	E	E	E	E	E	E	E	E	E	E	「자본시장법」과 통합 ⁹⁾	
4.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업		E	E	E	E	E	E	E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과 통합 ⁷⁾					「자본시장법」과 통합 ⁹⁾
가. 투자신탁업		-	-	-	-	-	-	-	E	E	E	E	E	E
나. 투자회사업		-	-	-	-	-	-	-	E	E	E	E	E	E
다. 집합투자업(구, 자산운용회사업) ¹⁾		-	-	-	-	-	-	-	E/T	E/T	E/T	E/T	E/T	E/T
라. 신탁업(구, 수탁회사업)		-	-	-	-	-	-	-	E	E	E	E	E	E
마. 투자매매업 및 투자중개업(구, 자산보관회사업)		-	-	-	-	-	-	-	E	E	E	E	E	E
바. 판매회사업		-	-	-	-	-	-	-	E	E	E	E	E ¹⁰⁾	
사. 일반사무관리회사업		-	-	-	-	-	-	-	E	E	E	E	삭제	
아. 투자일임업		-	-	-	-	-	-	-	E ¹¹⁾				E ¹²⁾	
야. 투자자문업		-	-	-	-	-	-	-	-	E	E	E	E	E
자. 사모투자전문회사업		-	-	-	-	-	-	-	E ⁶⁾	T ⁶⁾	T ⁶⁾	E ⁶⁾	E ⁶⁾	E ⁶⁾
차. 사모투자전문회사에게 공급하는 집합투자재산 운용, 보관·관리, 집합투자증권 판매, 일반사무관리 용역		-	-	-	-	-	-	-	-	E	E	E	E	E

구분	연도	'77	'89	'98	'99	'00	'01	'03	'04	'05	'06	'07	'10	'12
16. 「주택저당채권유통화회사법」에 의한 채권유통화와 관련된 사업 및 동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		-	-	-	-	E	E	E	E	E	E	E	E	E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주택저당채권·하자금대출채권의 관리·운용 및 처분사업		-	-	-	-	-	-	-	E ³⁾	E	E	E	E	E
17의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¹⁾		-	-	-	-	-	-	-	-	-	E	E	E	E
17의3.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기업구조조정 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¹⁾		-	-	-	-	-	-	-	-	-	E	E	E	E
17의4. 「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가 제공하는 위탁자산 관리·운용 용역		-	-	-	-	-	-	-	-	-	-	E	E	E
17의5.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같은 법에 따른 농식품투자모데조합, 농식품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¹⁾		-	-	-	-	-	-	-	-	-	-	-	-	E
17의6.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업무		-	-	-	-	-	-	-	-	-	-	-	-	E
18. 기타 금전대부업		E	E	E	E	E	E	E	E	E	E	E	E	E

주: 1. E: 면세, T: 과세, E/T(T/E): 원칙은 면세(과세)이나 일부 과세(면세); 연도는 개정세법 시행일 기준으로 작성됨
 2.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업종에 대한 개별 근거법령은 2001년 1월 1일부터 표기하기 시작함(2000. 12. 19. 개정)
 1) 자금을 부동산, 실물자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전세권·임차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어업권, 광업권 등에 운용하는 경우는 제외함
 2) 1989년부터 증권업에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 포함함
 3) 2000년 1월 1일부터 증권거래소 및 증권예탁원의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1999. 12. 31. 개정)
 4) 2001년 1월 1일부터 보험중개·대리를 포함하고, 2002년 1월 1일부터는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 용역·보험계리 용역·보험조사 및 보고 용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

- 5) 2001년 1월 1일부터 일반사무수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게 제공하는 신탁재산 회계처리 용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명시함(2000. 12. 29. 개정)
- 6) 2003년 12월 30일 개정(2004. 1. 1. 시행)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 전환되었으나, 대체-경쟁관계에 있는 투자일임업은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되는 반면 투자자문업은 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과세형평성 제고 및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 2월 28일부터 다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함(홍법교·김민경·정훈, 2014, p. 13)
- 7)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이 폐지(2004. 1. 5.)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공포(2003. 10. 4.) 및 제정(2004. 1. 5.)됨에 따라 개정됨
- 8) 2003년 12월 30일 개정(2004. 1. 1. 시행)으로 2005년 1월 1일부터 과세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연체자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네 차례 유예기간 연장하여 2013년 공급하는 채권추심 용역부터 과세 전환됨
- 9) 2003년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이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면세대상 사업이 재정비되었으며, 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2007. 8. 3. 제정)됨에 따라 면세대상 사업이 재정비됨(관련 업무를 추가, 업종 명칭을 개정 등)
- 10)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 업무를 포함함
- 11) 투자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자산운용회사에 제공하는 용역에 한함
- 12)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명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신탁업의 집합투자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에 한정함
- 13)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 촉진을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제정(2003. 12. 31, 법률 제7030호)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행하는 유사 금융 용역이 면세대상에 추가됨. 2004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통화 관련 사업 등이 면세대상이었으나, 해당 사업은 2005년 1월 1일부터 면세대상에서 제외됨(2004.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통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학자금 대출채권의 관리·유통 및 처분사업(2004. 3. 17. 제정)
- 14) 2012년 2월 2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자 간에 상대방 사업자의 여신전문금융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도 포함함

자료: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개정연혁을 참고하여 저자 요약·정리

별첨 2

〈별표 2-1〉 EU 회원국별 금융 서비스의 부가가치세 규정 요약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및 협상 • 법정통화의 공급 및 협상 • 금전청구권 및 사채 • 예금 및 당좌 계좌 • 유가증권 • 지분증권의 이전 • 부채와 보증 인수 •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펀드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및 팩토링 • 금융 서비스 관련 개인 정보 • 보안 관련 권리의무를 직접 설정·변경·종료하지 않는 투자 자문 •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 재화 또는 용역에 우선 접근가능한 카드 • 공급대가의 일부로서 부채 인수 • 부채 및 보증 관련 관리 • 법정통화가 금속 함량, 화폐연구적 가치나 관심인 경우 • 유가증권 관련 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관련 관리(인증서 발행, 교체, 복제, 보험 및 우편 서비스, 계정 관리, 입금 수수료, 명의주식의 재발급, 관련 증명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 과정에서 신용 부여 •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 지급 보증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및 협상, 신용부여자의 신용 관리 • 예금, 당좌 계좌, 지급, 이체, 부채, 수표 및 기타 유통 수단과 관련한 거래 및 협상 • 신용보증 또는 금전 담보에 대한 협상 및 거래, 신용보증 관리 • 법정통화의 거래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및 팩토링 • 수집목적의 지폐, 주화, 금속동전 •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 및 수령 관련 거래와 협상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과세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벨기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분증권, 채무증권, 기타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협상 특정 집합투자기관 등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부여, 관리, 협상(임대차(lease) 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 신용 부여, 협상, 관리 포함) 신용보증 또는 금전 담보에 대한 협상 및 거래, 신용보증 관리 지급계좌, 지급 서비스, 전자현금, 부채, 채권, 수표 기타 유통 수단과 관련한 거래 및 협상 법정통화의 거래 및 협상 유가증권의 거래 및 협상 특정 집합투자기구 등 관리 선물계약, 옵션 관련 거래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부여 등 관련 계약이 미체결될 경우 중개인(intermediary)의 수수료 채권 추심 및 팩토링 금고 대여 수집 목적의 통화 및 화폐연구 목적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은행이 신용 부여 관련 고객에게 수행하는 부수 서비스(계좌 증명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계약(lease contracts)에 따라 재화 공급시 신용 부여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1)(b)~(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와 관련한 송금의 처리, 결제 및 승인 서비스 관련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상품의 관리 채권 추심 및 팩토링 	-
사이프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부가가치세 준칙 제135조(1)(b)~(f)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 양도; 예금; 신용 및 금전 대출의 공급; 지급 거래 및 정산; 결제수단(결제 카드 또는 여행자 수표); 신용 보증의 공급; 신용장 개설 및 확인; 징수; 통화 교환; 금전 거래; 채코 국립은행 예금; 규제 시장에서의 투자상품; 투자상품 증개; 투자상품의 자기매매; 투자상품 위탁관리; 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카드와 관련한 송금의 처리, 결제 및 승인 서비스 관련 거래 	-
체코공화국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체코공화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품의 청약 또는 발행; 투자상품 기록 보관; 투자상품 관련 거래의 정산; 외환거래; 투자펀드 또는 뮤추얼펀드 관리 라디오 또는 TV 수신료 징수; 연금 기여금 징수 및 납부금 징수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공여 및 협상 법정통화 거래 및 협상 당좌계정, 수표, 금전채권 거래 및 협상 예금 및 당좌계좌, 지급, 은행이체, 유통 증서의 추심 관련 거래 및 협상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협상 지분증권 거래 및 협상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의 인수 및 협상 특정 투자펀드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추심 금고 대여 수집목적 화폐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공여 및 협상 법정통화 거래 및 협상 당좌계정, 수표, 금전채권 거래 및 협상 예금 및 당좌계좌, 지급, 은행이체, 유통 증서의 추심 관련 거래 및 협상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협상 지분증권 거래 및 협상 부채, 보증 및 금전담보의 인수 및 협상
덴마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출, 대출 중개, 자체대출 관리 신용 부여, 보증제공, 신용보증 관리 및 협상 당좌계정, 지급, 이체, 수표 기타 상업문서 거래 및 협상 법정통화 거래 및 협상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협상 투자자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추심 수집대상 범정화폐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에스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 거래 및 협상 • 소비자 신용, 모기지 신용 및 사업 거래 자금 조달을 위한 기타 거래를 포함한 자 입 및 대출 업무 및 협상 • 임대차(leasing) 거래 및 협상 • 결제, 금전 이체 및 기타 송금 거래 및 협상 • 전자결제수단, 전자화폐, 여행자수표 등 비현금 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협상 • 보증 및 환약 거래 및 협상 • 증권시장법 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의 거래, 외국환 또는 기타 화폐시장에서 수표, 환전수단, 예금증서 거래 및 협상 • 유가증권 발행, 판매, 매수 관련 거래, 행위, 협상 • 금전 중개 및 협상 • 특정 투자펀드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금의 위탁자 기능 관련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택
그리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통화 관련 거래 및 협상 • 유가증권 관련 거래 및 협상 • 신용 부여 및 협상, 신용 관리 • 채무, 사적 또는 금융보증, 기타 유가증권 인수 및 협상, 신용부여자의 신용보증 관리 • 예금 및 당좌 계좌, 지불, 예금 및 송금의 이체, 청구권, 수표 또는 기타 양도 가능 증권의 거래 및 협상 • 수입인지 • 법정 공동 기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 목적의 화폐 제외 •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 상품권 • 채권 추심(제삼자 수행) • 백토링 	-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스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수표, 저축계좌, 관련 기타 업무 예금증서 또는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증권을 포함한 금전예금의 이체 신용 부여 및 대출 제공, 대출 및 신용 관리, 대출 및 신용 이전 예금, 보증, 유가증권 및 기타 실물 및 개인 보증 관련 거래 및 협상 이체, 우편환, 수표, 지불명령, 약속어음, 환어음, 부채, 신용카드 거래 법정통화 지분증권, 사채, 기타 유가증권 관련 서비스 특정 투자자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추심 팩토링 수집목적의 주화 및 지폐 유가증권 관리 상품권, 부동산 사용권을 보장하는 부여하는 대물권, 부동산 양도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가증권 금융거래 당사자의 법적 지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백오피스 활동과 같은 부수 서비스 	-
핀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 신용 부여 및 기타 자금 조달 수단 신용부여자의 신용 관리 결제 환전소 유가증권 거래 보증 제공 특정 투자자금의 관리 	-	-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부여 및 협상과 같은 여신 업무 신용 보증 또는 기타 증권의 협상 또는 거래, 신용부여자의 신용보증관리 예금 및 당좌 계좌, 지불, 이체, 부채, 수표 및 기타 유통 수단 관련 거래 및 협상 법정화폐 거래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추심 유가증권 관리 및 보관 상품권(representative interests in goods)과 부동산 사용권을 부여하는 대물권 관련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자 외 수취에 대한 여신 업무 할인 또는 유사 수수료 외 수취에 관한 기업어음 관련 업무 고객 계정에 대한 증권 관련 업무 투자자금의 운용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과세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금융 서비스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가증권의 거래 • 특정 투자자금의 관리 • 금융기관 등에 의한 금 거래(산업용 외) • 대출/신용의 부여 및 관리 • 신용보증에 관한 협상 및 거래 • 담좌 및 저축계좌, 유통 수단 관련 거래 및 관리 • 법정통화 관련 거래 • 지분증권의 거래 및 협상 • 투자펀드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삼자에 의한 대출/신용의 관리 • 신용조사 • 담보자산의 매각 • 채권 추심, 팩토링 • 단말기 또는 POS 임대 및 유지관리, ATM 설치 및 유지관리, 금고 대여, 금전자금의 보관 및 보호 • 화폐 수집 및 명목가액을 초과한 매매 • 투자 자문, 포트폴리오 관리, 유가증권의 보호 및 보관 • 행정, 법률, 장부 및 감사, 규정 준수 관련 서비스, 마케팅 조사 및 상품개발, 디자인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 투자펀드에 대한 외부 감독, 시스템 홍보 및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식이용권 발행(restaurant voucher) • 팩토링 업무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관련 신용 및 대출(별도 명시) 	
크로아티아				
헝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및 대출, 기타 유사 금융 서비스 • 신용 및 대출의 담보를 위한 금융 서비스 • 은행 계좌, 고객 계좌, 거래, 수표, 기타 부채 청구권, 채권 추심 관련 서비스 • 법정통화 및 외국환 관련 서비스 • 유가증권, 금전채권의 거래 • 특정 투자자금의 관리 			

국가	금융 서비스		과제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아일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 채권, 기타 유가증권 발행의 발행, 이전, 기타 방식으로 거래 및 협상 당좌, 예금, 저축 계좌, 지불, 이체, 부채, 수표, 기타 유통 수단 운영 및 협상 법정통화 관련 거래 신용 공여 및 협상, 신용관리 신용보증 또는 기타 금전유가증권의 제공 및 거래, 신용보증의 관리 제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신용카드, 충전카드, 기타 유사 카드 등에 의한 대금 상환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권 채권 추심 팩토링 수집 목적의 통화 	-
이태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부여 및 협상 금전채무, 증권, 기타 보증의 인수 신용보증 관리 지급연장, 당좌계좌, 지급, 대조계좌, 미수금, 수표 또는 양도어음의 거래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유가증권 관련 거래 외국환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고임대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채권 추심 투자기금에 제공하는 투자 리서치 	-
리투아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부여, 신용 부여 관련 대리 서비스, 신용 관리 신용보증, 기타 금전유가증권, 보증계약 관리 예금 및 기타 상환자금의 수령 및 관리, 은행과 신용기관 간 청산 서비스, 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권 추심 팩토링 부동산 권리를 설정하는 증권 거래 부동산 외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는 증권 거래(금투자 관련 증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용 부여, 신용 부여 관련 대리 서비스, 신용 관리 신용보증, 기타 금전유가증권, 보증계약 관리 예금 및 기타 상환자금의 수령 및 관리, 은행과 신용기관 간 청산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체, 비현금결제기관(은행카드, 기타 결제수단의 발행 포함), 신용장 발행, 부채 및 채무관련 거래 • 법정통화 및 외국환 거래 • 증권, 파생상품 거래 •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외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설정하는 증권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권리 또는 의무를 설정하는 증권 거래 •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보관 • 유가증권 및 파생상품 포트폴리오 관리, 자문, 시장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자금 이체, 비현금결제기관(은행카드, 기타 결제수단의 발행 포함), 신용장 발행, 부채 및 채무관련 거래 • 법정통화 및 외국환 거래
룩셈부르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및 협상, 신용관리, 할인 및 재할인 거래 • 채권 업무 및 협상 • 수표, 기타 상업어음 관련 업무 및 협상 • 예금 및 당좌예금 운영 및 협상 • 지불, 은행송금, 그러한 운영의 협상 • 법정통화 • 유가증권, 회사채 등 거래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 수집목적의 동전 및 지폐 • 유가증권 보관 및 관리 • 상품에 대한 소유권 설정하는 증권 	-
라트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또는 은행 계좌 • 투자기금의 관리 • 발행 업무 관련 서비스 •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	-
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및 협상 •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	-
네덜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거래 및 협상 • 법정 통화 거래 및 협상 • 주식, 채권, 주식음션, 기타 증권의 거래 및 협상 •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목적의 지폐 또는 동전 •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

국가	금융 서비스		과제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폴란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또는 금전대출 관련 모든 유형의 중개 서비스, 신용 및 금전대출의 관리 • 중개서비스를 포함한 금융 거래를 위한 보증 및 담보 부여, 신용 관리 • 예금, 금융계좌의 운영, 모든 종류의 자금 거래, 이체, 부채, 수표 및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 • 법정통화 • 특정 기금의 관리 • 유가증권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 팩토링 • ATM 관리(현금 보증, 현금 보관) • 자문 서비스 • 임대 서비스 • 금융상품의 보관 • 결제 대리인(settlement agents)의 기술, 관리 또는 보수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통화 • 특정 기금의 관리 • 신용 또는 금전대출 관련 중개 서비스, 신용 및 금전대출 관리 • 금융 및 보험 거래에 대한 보증 및 담보 부여, 중개, 관리 • 예금, 금전계좌유지, 지불거래, 우편환 및 이체, 부채, 수표 및 환어음, 및 관련 중개 서비스 • 지분증권 관련 중개 서비스 등 •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와 중개 서비스
포르투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및 협상, 신용관리 • 신용 보증이나 기타 금전담보의 거래 및 협상, 신용 보증의 관리 • 예금, 당좌계정, 지불, 이체, 부채, 수표, 환어음 및 기타 유통 수단에 대한 거래 및 협상 • 법정통화, 외국환 거래 및 협상 • 지분증권, 사채, 기타 증권에 대한 거래 및 협상 • 공공 또는 민간 소유권의 처분, 배포, 취득을 위한 업무 • 특정 투자자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 수집목적의 동진 및 지폐 • 유가증권의 관리 및 보관 • 상품권과 부동산 사용권을 부여한 대물권 	-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루마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부여 및 협상, 신용관리 • 신용 보증 또는 기타 금전 담보의 협상 및 거래, 신용보증관리 • 예금, 당좌계좌, 지불, 이체, 부채, 수표 및 기타 유통 가능 수단의 거래 및 협상 • 법정통화 • 자본증권 및 사채, 기타 유가증권의 거래 및 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 수집목적의 동전 및 지폐 •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 상품권 	-
스웨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통화 • 은행 및 금융 서비스(예금 및 대출 관련 서비스, 증권매매 관련 서비스, 유가증권 거래 및 중개) • 특정 투자자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목적의 지폐 및 주화 • 공증 업무 • 채권 추심 • 팩토링 • 금고대여 및 보관 	-
슬로베니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및 대출 부여, 협상, 신용 및 대출의 관리 • 신용 보증 또는 기타 금전담보의 발행, 신용보증의 관리 • 예금, 당좌 또는 거래 계좌, 지불, 이체, 채무, 수표 및 기타 양도 가능 수단의 거래 및 협상 • 법정통화 • 자본증권, 사채, 기타 유가증권 거래 및 협상 • 법정 투자자금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 팩토링 • 수집목적의 지폐 및 주화 • 유가증권 인수와 관련된 관리, 보관, 투자 조건 • 상품권 	-

국가	금융 서비스		과세 전환 대상 금융 서비스
	면세	과세	
슬로바키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 또는 대출의 부여, 협상, 신용 및 대출의 고나리, 저축의 중개 • 신용보증, 기타 금전적 증권의 부여, 협상, 신용공여자의 신용보증 관리 • 예금 및 당좌예금, 관련 중개 서비스 • 지불, 이체, 부채, 수표 및 기타 양도 증서 • 전자지불수단 및 여행지수표의 발행 또는 관리 • 유가증권 거래 • 신용장 설정 • 현금화 주선 • 법정통화, 외국환, 관련 중개 • 특정 투자기금의 관리 • 선물 또는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 추심 • 유가증권의 보관 및 관리 	-

자료: Annacondia, F., "7.2. VAT Options Exercised by the Member States," https://research.ibfd.org/#/doc?url=/collections/vatopt/html/vatopt_s_007.html%23vatopt_t_19_tfn_27; IBFD, "IBFD Country Tax Guides(Value Added Tax)," [https://research.ibfd.org/#/search?N=0+500001+4292941977+4293738526&Ne=7487&Nr=AND\(3,10\)&Nu=global_rollup_key&Np=2&Ntk=Text&Ntt=country%20tax%20guide&Nty=1&Ntx=mode+matchallpartial](https://research.ibfd.org/#/search?N=0+500001+4292941977+4293738526&Ne=7487&Nr=AND(3,10)&Nu=global_rollup_key&Np=2&Ntk=Text&Ntt=country%20tax%20guide&Nty=1&Ntx=mode+matchallpartial), 검색일자: 2024. 1. 23.

〈별표 3-1〉 EU 회원국 보험세 현황(2023년 기준)

국가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¹⁾	표준세율		면세/경감세율/가중세율	과세표준
		과세 보험 ²⁾	세율		
			일반보험		
오스트리아	보험사 보험 중개인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법정 노령연금보험료, 수출신용, 재보험 경감세율: 농업보험(0.2%), 건강보험(1%), 직장 단체보험(2.5%), 상해보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보험: 보장금액 그 외: 보험료(중개인 수수료 포함)
		일반보험	11%		
벨기에	보험사 보험 중개인, 보험 세무 대리인 (세무 대리인, 보험계약자)	생명보험	2%(개인), 4.4%(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법정 노령연금보험료, 연금지출보험, 특정 화물차(12톤 이상)보험, 산재보험, 수출신용, 해양보험, 재보험 경감: 주택담보생명보험(1.1%), 특정여객운송 보험과 특정화물차(12톤 이하)보험(1.4%), 집 단산업재해(4.4%), 운송재해(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중개인 수수료 포함)
		일반보험	9.25%		
불가리아	보험사 보험 중개인, 세무 대리인	일반보험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투자펀드 포함), 재보험, 임대 보험, 혼인 및 자녀보험, 보험수리적 계산에 따른 자본환매운용, 국제운송보험, 항공·선박 책임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크로아티아	보험사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10%,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자동차 보험을 제외한 일반보험, 생명보험, 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사이프러스 ³⁾	보험사	생명보험	1.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체코공화국 ⁴⁾	-	-	-	-	-
덴마크	보험사 피보험인 (세무대리인)	일반보험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비감독 상호손해보험사업의 보험, 산업재해보험, 신용보장 및 보증보험, 해양·항공·운송보험, 자동차법정책임보험, 요트·선체 보험, 대출담보보험, 적격실업보험, 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중개인 수수료 제외)

일반 사항					
국가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¹⁾	표준세율		면세/경감세율/가중세율	과세표준
		과세 보험 ²⁾	세율		
에스토니아 ⁴⁾	-	-	-	-	-
핀란드	보험사 (보험계약자)	일반보험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사고보험, 신용보험, 재보험, 국제운송보험, 농작물 피해 및 동물질병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화재보험 및 자동차책임보험 준조세 포함)
프랑스	보험사 보험 중개인, 보험계약자 (세무 대리인)	일반보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연금보험, 운송책임보험, 농업 손실보험, 화물 및 농업 자동차사고보험, 운송 재화보험, 해양보험, 항공보험, 수출신용, 법정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재보험 경감: 화재보험(운송·사업목적 제외, 사업중단 7%) 가중: 자동차보험(33%, 18%, 15%), 변호사대응 보험(13.4%), 화재보험(일반 30%, 기타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중개인 수수료 포함)
독일	보험사,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	일반보험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건강보험, 국제운송재화, 재보험 경감: 농업보험(보장금액, 0.3%), 해양신체(3%), 환급형 개인상해보험(3.8%) 가중: 화재보험(보험료의 60%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수수료, 화재 예방세 등 포함)⁵⁾
그리스	보험사, 세무 대리인	생명보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장기(10년 이상) 생명보험, 해양보험, 재보험 경감: 10년 미만 생명보험(4%) 가중: 자동차화재보험(20%), 화재보험(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일반보험	15%		
헝가리	보험사	일반보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건강보험, 농업보험, 재보험 가중: 상해·충돌(CASCO) 외 손해보험(15%), 자동차제3자책임(MTPL)손해보험(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일반 사항					
국가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¹⁾	표준세율		면세/경감세율/가중세율	과세표준
		과세 보험 ²⁾	세율		
아일랜드 ⁶⁾	보험사	생명보험 일반보험	1%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재보험, 해양·항공·운송보험 가중: 자동차보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중개인 수수료 포함)
이탈리아	보험사, 세무 대리인 (피보험자)	일반보험	21.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수출신용(국외), 재보험 경감: 민간원자력에너지(2.5%), 자동차보험(12.5%), 사고/건강(2.5%), 운송보험(신박·항공 7.5%, 철도·도로 12.5%), 농업(가축 등 2.5%, 책임/화재 12.5%), 신용 및 보증(12.5%), 부양보험(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라트비아 ⁴⁾	-	-	-	-	-
리투아니아 ⁴⁾	-	-	-	-	-
룩셈부르크	보험사 (보험사, 보험계약자)	일반보험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연금보험, 장애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수수료 포함)
몰타 ⁷⁾	보험사	생명보험 일반보험	10%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건강보험, 수출신용 및 보증보험, 재보험 경감: 장기생명보험(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네덜란드	보험사, 보험 중개인 (법률 대리인, 보험 중개인, 세무 대리인)	일반보험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상해·장애·직업장애보험, 건강·실손보험, 고용보험, 해양보험, 운송재화, 건강/개인상해보험, 여행보험, 농민을 위한 종합기후보험, 직원건강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수수료 포함)
폴란드 ⁴⁾	-	-	-	-	-
포르투갈	보험사	일반보험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생명보험, 연금펀드, 재보험 경감: 업무상 재해보험(5%), 개인상해 및 대중교통보험(5%), 농업보험(5%), 운송재화(5%), 신용보증(5%), 보증보험(3%), 중개보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일반 사항					
국가	납세의무자 (납부의무자) ¹⁾	표준세율		면세/경감세율/가중세율	과세표준
		과세 보험 ²⁾	세율		
루마니아	보험사	생명보험	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중: 자동차제3자책임(MITPL)보험(1%)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일반보험	0.4%		
슬로바키아	보험사	일반보험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법정 건강보험, 보충건강보험, 재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배당 포함)
		생명보험	8.5%		
슬로베니아	보험사	일반보험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세: 단채보험과 자동차보험을 제외한 모든 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⁸⁾
		생명보험	8%		
스페인	보험사 (보험사)	일반보험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
스웨덴	보험사 (피보험자, 보험계약자)	단채보험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험료⁸⁾
		자동차보험	32%		

- 주: 1) 괄호()의 납부의무자는 국내 소재하지 않는 외국 보험사와의 보험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보험세를 납부해야 하는 자를 의미함. 보험료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 경우에는 괄호()로 표시하지 않음
- 2) 슬벤시 II에 따라 보험계약을 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이 아닌 보험(일반보험)으로 구분함
- 3) 사이프러스는 생명보험과 일반보험에 대해 건강 2유료(최대 18유로)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함
- 4) 체코공화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는 보험세가 없음
- 5) 독일의 경우 주거형건물(residential building) 손해보험과 화재보험은 보험료의 86% 또는 85%를 과세표준으로 19%의 세율을 적용함
- 6) 아일랜드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 일정 요율을 부과하여 계산하며 정부부과금(government levy)으로 칭하고 일반보험에 대해 계약건당 1유로의 인지세를 추가로 부과함
- 7) 폴라는 납부세액 한도액을 생명보험(1.65유로)과 일반보험(13유로)별로 정하고 있으며 인지세라고 칭함
- 8) 스웨덴의 단채보험 과세표준은 보험료의 95%임
- 9) 보험세 외 준조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공화국,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이 있음

자료: ABI, "European Insurance Premium Tax (IPT) comparison table," <https://www.abi.org.uk/globalassets/sitecore/files/documents/publications/public/2016/keyfacts/euipt.pdf>, 검색일자: 2024. 1. 26. f: Insurance Europe(2023), pp. 9~105

별첨 4 금융·보험업종 현황

1. 금융·보험기관 수 증감 추이

〈별표 4-1〉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종류와 수

(단위: 개)

대분류	소분류	2016. 12.	2018. 12.	2022. 12.	2023. 9
은행	국내은행	17	19	20	20 ¹⁾
	외은지점	43	38	35	34
금융투자	증권사	53	56	59	60 ²⁾
	선물사	5	5	3	3
	자산운용사	165	255	437	468
	투자자문사	159	186	379	389
	부동산신탁	11	11	14	14
	종합금융회사	1	1	1	1
여신금융	신용카드사	8	8	8	8
	리스사	25	25	26	26
	할부금융사	22	22	25	25
	신기술금융사	31	51	97	110
보험 ³⁾	생명보험사	25	24	23	22
	손해보험사	32	30	32	31
저축은행		79	79	79	79
금융지주회사		9	9	10	10 ⁴⁾
상호금융기관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투자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주: 1) 일반시중은행 6개, 인터넷전문은행 3개, 지방은행 6개, 특수은행 5개(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2) 국내법인증권사(48), 외국계지점(12)

3) 우체국보험, 공제조합은 제외. 2023년 9월 기준 외국생명보험사(8), 외국손해보험사(17)

4) (주)BNK금융지주, J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디지비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2019년 설립), 케이비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권역별 회사 수」, <https://fisis.fss.or.kr/fss/fsview/indexw.html>, 2024.

2. 8.: 금융기관론(2023), p. 287 <표 7-1>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함

2. 은행업의 부분별 손익 현황

〈별표 4-2〉 국내은행 부문별 손익(이자부문과 수수료부문)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2월	2019년 12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이자 부문	이자수익	68,064,901	72,361,309	64,922,868	64,243,237	96,101,297
	이자비용	28,578,211	32,527,808	24,609,531	19,139,680	41,118,748
수수료 부문	수수료수익	6,995,035	7,228,084	7,257,690	7,488,968	7,443,607
	수수료비용	2,511,195	2,360,135	2,401,144	2,502,581	2,773,864
신탁부문		1,287,860	1,401,553	1,054,128	1,232,528	1,147,930
유가증권/외화부문		2,257,697	3,758,721	4,317,355	2,062,969	1,656,675

주: 국내은행에는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과 특수은행(농협은행주식회사, 수협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포함함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국내은행 금융권역, 재무현황」, <https://fisis.fss.or.kr/fss/fsi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3. 2. 21.

3. 보험사의 보험료 수익 및 보험금지급 추이

〈별표 4-3〉 손해보험회사 손익발생원천변 실적(최근 5개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18년 12월 말	2019년 12월 말	2020년 12월 말	2021년 12월 말	2022년 12월 말
I. 경과보험료 ¹⁾	78,841,760	81,728,705	86,107,808	90,370,527	95,301,406
II. 발생손해액	34,926,959	39,838,943	42,646,523	45,431,884	47,830,178
III. 보험환급금	17,982,752	18,887,227	20,765,860	19,953,484	23,097,826
I - II - III.	25,932,049	23,002,535	22,695,425	24,985,159	24,373,402
IV. 순사업비	16,803,253	18,333,929	18,590,938	18,690,553	19,703,587
장기저축성보험료 적립금 증가액	0	0	0	0	0
V. 보험료적립금증가액	12,147,475	10,547,838	8,343,033	8,749,566	6,017,996
VI. 계약자 배당 준비금 증가액	124,183	137,818	129,330	113,703	66,980
비상위험준비금증가액	0	0	0	0	0
VII. 보험영업이익	-3,142,864	-6,017,054	-4,367,881	-2,568,657	-1,415,158
VIII. 투자영업수익	10,843,202	12,662,720	12,857,946	12,633,003	14,158,925
IX. 투자영업비용	3,108,278	3,536,132	4,633,103	4,007,781	5,068,646
X. 투자영업이익	7,734,923	9,126,588	8,224,839	8,625,228	9,090,281
XI. 영업이익	4,592,058	3,109,532	3,856,961	6,056,570	7,675,121
XII. 영업외수익	379,566	459,669	443,892	535,655	640,853
XIII. 영업외비용	572,624	553,832	663,333	627,004	958,383
XIV. 특별계정이익	0	0	0	0	0
XV.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순손실)	4,398,998	3,015,371	3,637,524	5,965,213	7,357,589
XVI. 법인세비용	1,155,335	790,524	1,020,756	1,638,672	1,881,959
XVII. 당기순이익 (당기순손실)	3,243,663	2,224,848	2,616,765	4,326,545	5,475,634

주: 1) 경과보험료는 수입보험료에서 지급보험료를 차감하고 전기이월미경과보험료에서 차기이월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험료수입을 기간경과 등을 따라 수익을 인식함에 따라 발생한 개념임

자료: 금융통계정보시스템, 「단수통계표조회 - 손해보험 - 손익발생원천별실적」, <https://fisis.fss.or.kr/fss/fsview/indexw.html>, 검색일자: 2024. 2. 8.

세법연구 23-08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조사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발 행 2023년 12월 29일
저 자 홍병진 · 박수진 · 서동연
발행인 김재진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미래기획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 ISBN 979-11-6655-284-7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주요국의 금융·보험 용역 관련 간접세 조사
-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 www.kipf.re.kr

